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10 Winter 20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연구논문

- 오일환 · 이연식 |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
- 학술논문에 관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4
- 응웬 티 한 | 베트남-중국 간 영토·영해 경계 확정의 역사 32
- 김수희 | 동해상에서의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64
- 김자영 |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일 해양영토 문제 86
- 최운도 · 배진수 |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104
- 이상균 · 김영훈 | 프랑스 민간부문 대상 동해 표기 현황 및 동향 분석
- 민간 지도제작사, 방송사, 신문사를 대상으로 132
- 장세운 |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한국인의 대응 168

연구노트

- 김규현 |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를 통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 204

서평

- 김병렬 |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유미림 저) 216

영토·해양 일지

- 영토·해양 일지 222

-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226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

학술논문에 관한 통계분석¹을 중심으로

오일환 ARGO인문사회연구소

이연식 소피아대학

1. 머리말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가 깊은 해였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는 광복 70년 동안 식민지 지배에 관한 과거사와 역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국교정상화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쌓아왔음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맹국 또는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사할린·원폭 피해자 문제,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인식 차이가 현존(現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장단강약(長短強弱)의 차이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양국 관계의 엄밀한 현실임을 짚방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양국의 인식과 입장은 그 어떤 문제

에 비해 첨예하고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70년 이래 한일 양국 정부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갈등, 또는 해결에 관한 태도는 정부 간 협상과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 연구단체 등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타 문제에 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²

해방과 패전 이후 독도에 관해, 한일 양국 모두에서 독도의 자연적·지리적·역사적 기원 등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왔으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와 설명, 정부 정책과 입장,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최근까지의 경향과 새로운 연구 과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 분야의 다소(多少)는 물론이고 시대적 경향과 편향, 한일 간의

차이와 전략,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 경향을 각각 조사·분석하고 이를 대조·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내의 독도 연구 경향을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의 선행 단계로서, 국내에서의 독도 연구 경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내 연구 동향

독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연구사 정리 논문, 시대적 구분과 해당 시기의 주요 쟁점별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문, 일본의 연구 동향, 새로운 경향에 관한 소개와 분석, 문제제기 등에 관한 논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³

2 예를 들면,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에게 한정된 이슈인 데 반해, 독도 문제는 생물학·생태학·지리학·지질학·해양학 분야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김수희, 2013,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동북아역사재단, Vol. 5;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한국이사부학회; 박경근·황상일, 2008,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지리학논구』, No. 2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정병준, 2013,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46; 최재목, 2013, 7,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제언: 배중률·실증주의의 반성과 「제3의 선택지」 모색, 『일본문화연구』, Vol. 47, 2013.7, 동아시아일본학회; 하도경, 2012,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정부입장(I·II)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Vol. 25 등 참조.

1 본고는 2015년 8월 19일(수), 2015년 현대일본학회 하계 학술회의(주제, 한반도 통일시대의 한일협력 모색)에서 「포스트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의 과거청산: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토론자와 참가자들로부터 제기된 사항들을 이후 수정,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각 시대별 연구 경향을 정리한 논문들로는, 최진옥⁴·허영란⁵·한철호⁶의 논문 등이 있는데, 한철호는 독도 연구의 시기를 연구 태동기(1945~1964), 연구 관심기(1965~1982), 연구 고조기(1982~1995), 연구 확산기(1996~2007)로 구분하여 독도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구분한 바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시대별 연구 경향 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한국 측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오히려 연구가 뒤쳐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쟁점을 둘러싼 새로운 사료 발굴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19세기 구미열강의 항해일지를 전략적으로 발굴할 필요와, 고지도와 문헌 발굴도 중요하다는 지적은 이후 연구계가 실제로 이 분야에서 최근 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선희⁷는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2007)에서, 한국 학계의 맹점은 강화조약 체결기에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교섭과정과 내용, 연합국 상호 간의 교섭과 협의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회담 당시 영국 외무성이 작성한 영국 초안과 부속지도 연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⁸ 정병준의 연구⁹를 참조하여,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었고 영국은 이 섬이 한국령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당한 흔적이 있고, 미국이 합의한 지도로서 강화조약에서 생산된 유일한 공식 지도임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원칙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향후 한국에서의 독도 연구는, 분쟁당사국이 제출한 증거의 법적 의미나 증빙능력 평가는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제3자인 중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바로 이러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구도 아래 연구 성과를 재구성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이후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이명찬¹⁰의 연구는, 최

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이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갈등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특히 일본과의 독도 문제를 일본이 중국 등 주변국들과 다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의 한 사례로서 비교 분석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일·중 간 분쟁 이후 일본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해왔는지 검토하였는바, 중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을 격화시키는 동인이 되었고, 2010년 9월 센카쿠제도에서의 일·중 간 영토분쟁이 일본 여론을 초조하게 만들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게 만드는 압박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북방영토 문제와 센카쿠제도에서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실수 등으로 고양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독도 문제로 투사되어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듯한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준, 이전과는 다른 강경 대응의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일본에게 센카쿠제도 문제와 독도 문제는 ‘실효 지배’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난처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역시 일본의 센카쿠제도에서의 ‘실효 지배’와 같은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¹ 이러한 연구 경향은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정치학적 관점과 실질적 대응전략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에서의 연구 동향에 관한 조사

국내 연구 동향과 더불어 패전 후 일본에서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연구와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의 연구 테마와 관련해서만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많다. 한국에서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전반에 관한 연구와 학계의

4 최진옥, 1996, 「독도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허영란, 2002,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6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학회.

7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8 김재형, 2014, 「독도에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입장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Vol. 15, No. 1 참조.

9 정병준, 2005,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10 이명찬,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Vol. 3,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2011, 「마이클 그린과의 대화: 독도 관련 부분」, 『영토해양연구』, Vol. 1, 동북아역사재단.

11 이명찬, 2012, 앞의 글, 52~83쪽.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리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연구자들의 조사와 개관으로서 현대송·이성환·김명기 등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송¹²은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2014)에서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이 패전 직후 태동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이라는 두 기점(起點)을 기준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독도가 문제에서 분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잠복기, 소강기(구조화 단계), 분쟁전환기, 분쟁기(공고화 단계)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취한 정책의 배경과 특징을 일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체제와 연계하여 분석했다. 전후 일본의 정책은 대체로 관(官)에서 정(政)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서 중앙으로의 수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적으로는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 재판소(ICJ) 제소’를 양대 축으로 법제도의 정비(영해법 개정, UN해양법 협약의 비준), 영토 교육과 홍보 강화, 영토문제 전담기구 설치순으로 유향패로 그래프(directed cycle graph)를 그리며 적극적 공세와 소극적 공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대송의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를 시대별, 국내정치, 국제정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일본에서의 독도 연구에 관한 국내의 조사가 빈약한 가운데 거시적인 안목의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성환¹³의 최근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사회과학 분야의 53개 논문을 추출, 28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독도에 관한 일본에서의 실제 연구 성과¹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조사 결과는, 한일 양국 모두 1960년대의 성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고유영토론, 독도 문제 해결방법, 국제법적 검토, 독도에 관한 일본 국민의 의식조사, 여론 동향¹⁵ 등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새

12 현대송, 2014,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 48, No. 4, 한국정치학회.

13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 Vol. 49, 동아시아일본학회.

14 물론 독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논문 53개만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추출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와 기준, 대상의 객관성,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본고의 조사범위를 일본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한일 간에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5 이에 관해서는 김수희, 2011, 「『죽도의

롭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법 분야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김명기¹⁶의 연구는, 영토 주권의 권원(title)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연구와 경향,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08년에 다케시마의 주권적 권원에 관해 1648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삭제하고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추이를 심층적으로 반영해 정책결정자와 사학계가 역사적 권원 대체이론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국내 연구 성과를 시대별, 역사적, 주요 쟁점별 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영유권에 한정된 일본 정부의 정책과 소수의 임의로 한정된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경향을 보다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일본에서의 연구 경향 역시 계량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술적 연구 결과의 숫자와 규모, 연도별 증감, 연구자 숫자, 학술지 발행기관의 규모와 분포, 집중과 영향력 정도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국내 독도 연구의 양적 규모와 집중과 분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술논문

의 제목 속에 나타난 주요 어휘의 빈도를 추적함으로써 주요 연구의 주제와 테마, 연구 분야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경향과 편중, 과소, 과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후 한국에서의 독도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계량적 조사와 통계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No. 10; 김 영, 201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분석」, 『독도연구』, No.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병우, 201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보도 경향 분석-《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등의 연구가 있다.

16 김명기, 2014,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Vol. 59, No. 3, 대한국제법학회.

3. 분석 방법과 개요

본고는 전후 한일 양국의 '독도'에 관한 연구 성과와 주요 논문의 경향과 최근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한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우선적으로 국내 연구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분석 대상을 추출하고 서지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¹⁷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학위논문과 단행본 수록 논문을 제외하고,¹⁸ 1945년 1월 1일~2015년 6월 1일 현재까지 기간 중 국내 학술정보검색 DB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DB인 RISS¹⁹에서 '전체 키워드'로서 '독도'를 입력, 검색한 학술논문집, 저널, 학술지 등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1,742건²⁰ 중 독도와 무관하게 검색된 논문 및 동일 논문의 중복 집계 등을 제외한 964건²¹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학술논문 제목의 형태소 단위별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어휘의 등장 빈도, 발행 연도, 저자, 학술기관명을 코딩하여 SPSS 18. 프로그램²²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교차분석 및 연도별·발행기관별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술논문 제목 중 독도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주요 어휘 중 12건의 어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빈도분석과 해당 기관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17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필자의 기획과 주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추지현 연구원(사회학 통계분석전문)과 허수미(ARGO인문사회연구소 조교,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의 도움을 받아 기초작업과 공동작업, 보완작업 등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18 학술논문만 하더라도 1,742건에 달하며, 단행본과 학위논문 등을 포함할 경우 분량이 방대해지며 각 자료 간의 중복성 배제 작업, 코딩 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 연구자 단독으로 추진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에 한정된 것이며,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충분한 재원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 교육부 출연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공하는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20 RISS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일부 논문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재한 외, 「민주정지와 일본의 독도정책」(한국정치학회보, 2013)과 같은 논문들이 제외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RISS 또는 데이터 표집 프로그램상의 오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당초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일괄' 수집하였기에, 수천 건의 표본 데이터 속에서 특정 논문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음을 밝혀둔다.

21 본 연구의 '독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타 분야의 '독도' 등 동음어 논문은 제외함. 예를 들면, 「음낭 습진 양상을 보인 2기 매독, 응집이 '독도'인자 제거에 미치는 영향」 등. 또한 일반저서, 학위논문 등은 검색 및 준거화의 비용이성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본고의 분석대상 및 결과는 '단일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독도에 관한 모든 저술과 연구를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II. 독도 관련 학술논문, 기관, 연구자 경향

1. 학술지 분포

독도 관련 학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논문집의 경향과 성격, 중심성을 확인하고자 발행기관 및 학술지 빈도를 조사하였다. 총 310곳의 학술기관에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기관은 13곳으로 <표 1>과 같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발행의 『독도연구』가 183건을 발표해, 전체 연구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대학교는 독도연구소 이외에도 민족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등을 포함 206건이 발행되어 전체 연구의 22.3%를 점유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도 관련 연구발표의 기간과 분량만 놓고 볼 때, 국내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가 57건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독도연구소를 중심으로 출간해오고 있는 『영토해양연구』는 독도 관련 학술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월간 해양한국』, 한국이사부학회의 『이사부와 동해』, 대한국제법학회의 『국제법학회논총』 등이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주요 공론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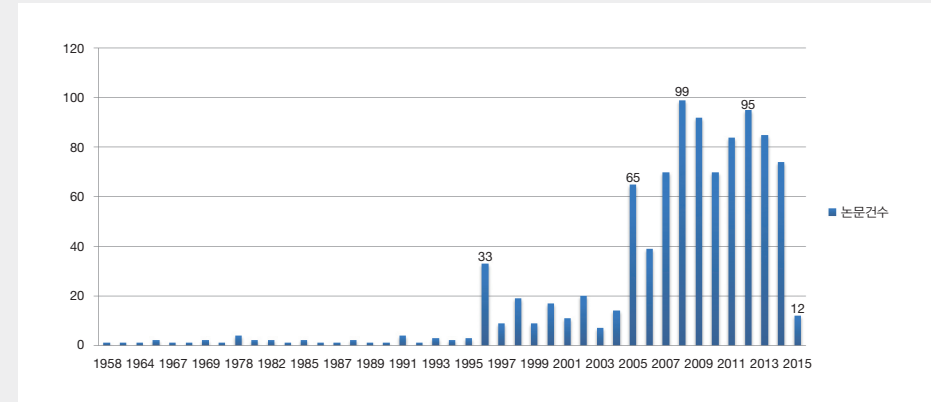
13개 기관의 연구 분야는 독도의 역사, 인문, 사회, 군사, 문화뿐만 아니라 국제법학회논총 등 인문사회 및 법학 분야 외에, 지질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해양연구원 등 연해의 자연생태나 자원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 분야 학회²³의 활동도 활발한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2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은 표집 데이터와 본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본고는 사전 발표과정에서 주요 연구기관 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지연 관계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

23 비록 13개 기관 중 자연과학 분야의 세 기관의 발표논문 수의 비율이 5% 미만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관 숫자로는 13개 기관 중 20%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10건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3개 기관 외에 다른 기관에 비해 비중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구 발행기관 및 학술지 빈도

발행처	학술지명	빈도	퍼센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183	19.0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	57	5.9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해양한국	29	3.0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와 동해	27	2.8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0	2.1
한국논단	한국논단	17	1.8
대한지질학회	지질학회지	16	1.7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15	1.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13	1.3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13	1.3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11	1.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10	1.1
한국해양연구원	Ocean and polar research	10	1.1



〈그림 1〉 시기별 독도 관련 논문 발표 추이

2. 시기별 연구 추이

전후부터 2015년까지 독도 관련 학술논문의 발표 빈도는 〈그림 1〉과 같다. 초기 단계인 1958~1995년까지는 연평균 2건 내외의 독도 관련 학술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다지 많은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생물연구회의 노분조가 발표한 「울릉도 및 독도 채집기」를 시작으로, 1964년 건국대학교 홍성화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관련 고찰」이 독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초기 학술논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이한기가 『국제법학회논총』(대한국제법학회 발간) 및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을 통해 독도 영유권 및 국제분쟁 관련 논문 4건을 투고한 바 있다.²⁴ 한철호가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2007)에서 제시했듯이 역사학계의 독도 관련 연구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 연구 태동기(1945~1964), 연구 관심기(1965~1982), 연구 고조기(1982~1995)까지 연구의 양적 수준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철호

²⁴ 이한기의 학술논문들은 1969년에 그의 저서,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로 집약되었다.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당시 학계 연구는 학술논문집의 형태가 아니라, 이한기의 개인적 차원의 국제법적 연구 성과와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²⁵와 같은 단행본 형태로 묶여 출간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조사된 결과는 학회지,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학술논문만을 추출한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역사, 국제법, 해양, 지리 등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은 특정 학회지, 학술논문집의 형태보다는 대체로 각 연구 성과들을 단행본으로 엮은 형태로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숫자만으로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다만, 독도 관련 전문 학회와 학회지, 학술논문집 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 성과들이 데이터상에서 추출됨에 따라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 33건이 발표되면서 독도 관련 연구가 급증하는데, 이는 1996년 경제전관수역 200해리를 허용하는 유엔의 신해양법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측 연구도 본격화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6년 독도학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연구총서』를 통

²⁵ 이 책은 18년 뒤인 1996년에 다른 학술 논문들과 더불어 『독도연구』라는 연구서로 다시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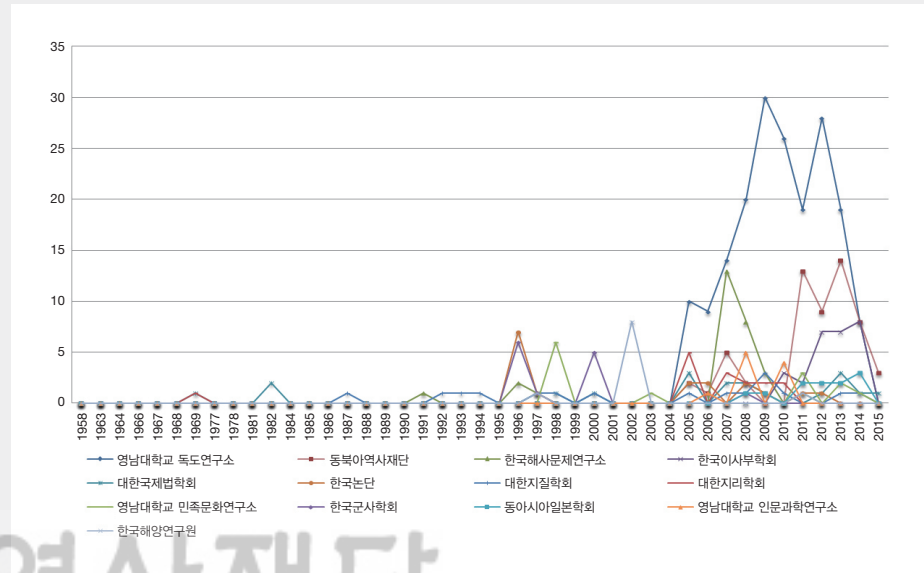
해 독도 관련 학술연구들의 게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이후 영남대학교의 독도연구소와 『독도연구』, 2006년의 동북아역사재단 발족과 『동북아역사논총』, 2011년 이후 동 재단의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 등을 중심으로 각 학계의 학술지, 학회지에 독도 관련 연구가 집중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것은 2008년으로 97건, 다음으로는 2009년이 92건, 전체 독도 연구의 20.4%가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한편, 최근 10년간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의 분야는 일본 측 자료, 고지도, 영국 외무성 대일평화조약 초안과 부속지도 분석 등 독도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독도 관련 연구가 과거에 비해 숫자 면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²⁶

3. 연구기관별 논문 발표 시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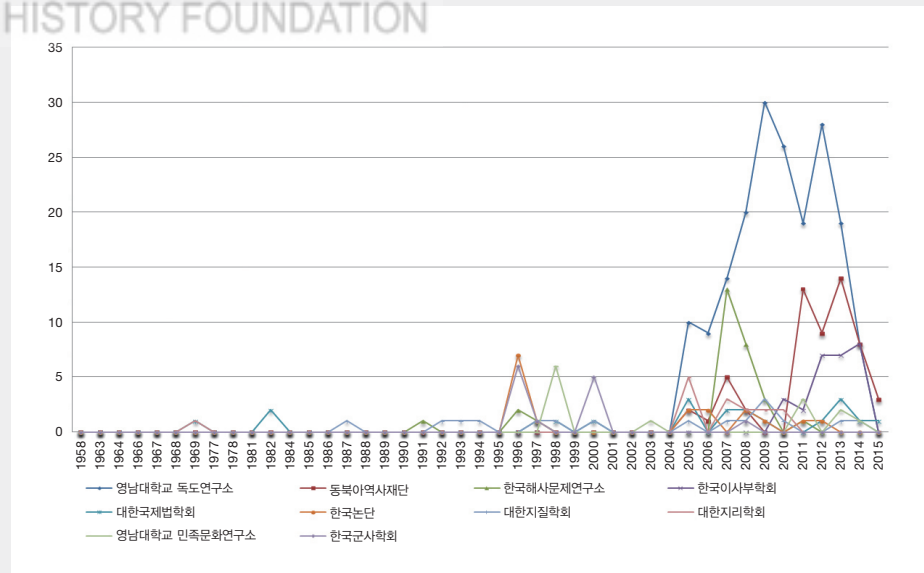
논문 발표 건수가 10건(누계) 이상인 기관과 상위 10곳인 학술기관의 연도별 연구 추이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발표 건수 10건 이상인 학술기관을 보면, 모두 13개 기관이 확인되고 있다. 타 기관에 비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숫자가 월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소와 인문과학연구소 모두 이에 포함됨으로써 양적 분야에서만큼은 영남대학교의 독도 연구와 성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최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연구의 공론장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전체 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만 별도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이들 10곳의 기관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도학회 발족과 더불어 당시 한국논단, 한국군사학회, 한국해양연구 등의 학회지에도

26 이것이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와 상관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데이터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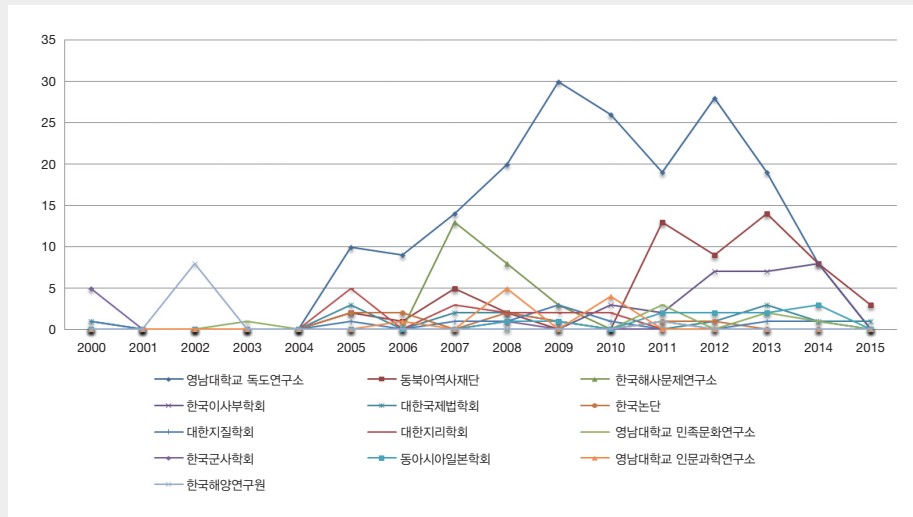
<그림 2> 기관별 논문 발표 추이(10건 이상 발표 기관)



<그림 3> 기관별 논문 발표 추이(상위 10 기관, 전체 기간)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으며, 2005년 『독도연구』를 창간한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는 당해 연도 10건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까지 관련 연구 발표가 급증했음이 확인되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1998년에 6건을 발표하며 독도 관련 연구를 선도하였으나 이후 감소했으며, 이사부 학회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배출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 이후 거의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기간이 아닌 2000년 이후의 기관별 학술논문 게재 추이만 다시 정리해보았다. <그림 4>는 2000년 이후 10건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술기관만 다시 정리한 것이다. 총 13개 기관 중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다소 발표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2002년에 한국해양연구소, 2007~2008년에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 활발하게 연구 성과를 게재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그림 4> 최근(2000년 이후) 기관별 논문 발표 추이(10건 이상 발표한 기관)

이후에는 한국군사학회에서도 꾸준히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저자 분포

27 발표 건수를 확인한 결과, 4건 이상 개인발표자(기관논문 제외)가 42위까지, 3건 이상 발표자가 43~64위, 2건 이상 발표자는 65~111위까지 분포하고 있다. 상위 50위를 기준으로 3건 이상 발표자가 60위까지 근접하였기에 3건 이상 발표자(64위)까지 언급한 것이다. 참고로, 1건의 논문만 발표한 연구자는 무려 450명에 달한다.

28 향후 일본의 독도 연구자의 숫자와 분야별 분석 결과를 비교할 경우 한국 연구자 수의多少와 분야의 특성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9 8건 이하와 9건의 편차는 크고 9건과 10건의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어서, 필자가 임의로 9건 이상만으로 제한하여 분류하였다.

30 비록 이들 9명의 논문은 모두 161건으로 전체 논문의 16.7%에 지나지 않지만, 이 연구자들이 독도 연구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가장 왕성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속 연구기관과의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보고서 주목한 것이다. 논문 발표 숫자와 횟수는 연구의 내용·질과 상관없음을 밝혀둔다.

31 당연한 추론이겠지만, 연구자의 논문 수와 빈도는, 연구의 질, 분야의 확장, 기여도 등과 반드시 비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다만 연구발표 건수의 다소는 곧 연구활동의 밀도, 해당 분야의 중요성과 시대적 연관성,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지원 추세 등과의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독도 관련 학술논문의 저자, 즉 주요 연구자의 수와 분포, 분야를 확인하고자 주요 연구자별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술기관의 편집부가 발표한 논문을 제외하고 3건²⁷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개인 연구자는 모두 64명으로 확인되었다.²⁸ 이 가운데 9건 이상²⁹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모두 9명으로 확인되었다.³⁰

2005년 한국일본어문학회 발행의 『일본어문학』에서 최장근은 「일본 영토분쟁과 독도의 지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³¹ 김호동 역시 1998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민족문화연구』에 「군현제의 시각에서 바라다 본 울릉도, 독도」라는 논문을 투고하며 최장근보다 앞선 시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

<표 2> 연구자별 논문 발표 건수

연구자	발표 건수	점유 비율(%)
최장근	39	4.0
김호동	27	2.8
최홍배	21	2.2
김명기	19	2.0
김화경	16	1.7
곽진오	11	1.1
유미림	10	1.0
이범관	9	0.9
호사카 유지	9	0.9

〈표 3〉 주요 연구자 및 논문 게재 기관 현황

	최장근	김호동	최홍배	김명기	김화경	곽진오	유미림	이범관	호사카 유지	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						1
대구사학회		4			1					5
대한국제법학회				2						2
대한일어일문학회	7									7
대한부동산학회								1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						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7									7
동북아역사재단	1	1					7 ³²			9
동아시아일본학회	1							5		6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1
백산학회	1									1
법조협회				1						1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	13		8	10	1		1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			2					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			3					5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원	1	1								2
일본어문학회	1									1
제주평화원	1									1
한국군사학회				1						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			1
한국세계지역학회			1							1
한국이사부학회		2		4						6
한국일본근대학회	6									6
한국일본문화학회	4					4				8
한국일본어문학회	4									4
한국일본학회					2					2
한국일어일문학회	2				1			1		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	2			3
한국지적학회								8		8
한국학중앙연구원		1								1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							20
한일군사문화학회						2		1		3
한일민족문제학회	2									2
계	39	27	21	19	16	11	10	9	8	160

제까지 활발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상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들어 학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기표절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의해서 해석해야 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별 논문의 지향과 성격은 논문이 발표된 앞의 〈표 3〉의 학술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장근은 한국일본근대학회 및 대한일어일문학회, 김호동과 김명기·김화경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최홍배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곽진오는 일본문화학회, 유미림은 동북아역사재단, 이범관은 한국지적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특정 연구 기관 외에는 대한일어일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한국일본근대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와 같은 어문학회 관련 네트워크 학회³³에 투고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전문적인 연구결과의 과급효과와 축적, 계승 발전, 담론장 형성 등에 바람직한지 여부는 다소 의문스럽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 중심성의 기초분석을 한 결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와 이사부학회, 그리고 동북아

32 김병렬과의 공동 발표논문 1편을 포함.

33 특정 분야의 전문 연구자 집단으로 구성되는 일반 학회, 또는 연구회와 달리, 여러 학회들이 연합적,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성된 학회 연합회를 가리킨다.

34 네트워크 분석의 중심성 등 지표와 지수에 관한 분석 결과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 대신, 다른 기회에 별도 논문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코딩 작업은, 비슷한 어휘를 하나의 대표어휘로 통합 또는 분류하였고, 빈도수가 6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주요 어휘로 규정하였다. 코딩 작업의 한 사례로서, 어휘 '일본'에 대한 빈도표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일본 키워드1			
		빈도	퍼센트	유료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료	0 해당 키워드 無	786	81.5	81.5	81.5
	1 해당 키워드 有	178	18.5	18.5	100.0
	합계	964	100.0	100.0	

역사재단은 이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자들이 활동하거나 투고하는 다른 기관들과도 가장 연계가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연구자들이 이질적인 학술기관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와 이사부학회 및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다른 학술기관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국해사문제연구소는 20건의 연구가 생산되어 빈도의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최홍배 1인에 특정되어 있어 전체 연구기관들 사이에서의 중심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⁴ 그리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다른 학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결정도나, 기관들 사이를 매개하는 연결 중심성은 높은데 반해,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학술기

관이 또 다른 학술기관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중하여 측정한 아이젠벡터 중심성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대한일어일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한국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근대학회, 제주평화원 등은 이와 같은 아이젠벡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곧 해당 기관들이 그 밖의 기관들과의 연결성은 약하지만 막후에서 일정 부분 독도 관련 연구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III. 주요 연구 경향

1. 독도 관련 주요 어휘 빈도

964건의 연구 중 독도 영유권, 역사, 교육, 국제법, 생태계, 어업 등의 주요 이슈와 관련이 있고, 다수 등장하고 있는 주요 어휘의 등장 빈도만 선정, 추출하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해당 어휘 중 중복 또는 밀접한 어휘들은 코딩 작업³⁵을

³⁵ 예를 들면, '한일관계'·'에도'·'메이지' 등은 '일본'에, '갈등'은 '분쟁'에, '교과서'는 '교육'이라는 대표 어휘로 분류하고 통합시켰다.

〈표 4〉 주요 어휘 등장 빈도

주요 어휘	빈도	퍼센트
일본	161	17.4
영유권	92	9.9
분쟁	66	7.1
영토	80	8.6
역사	58	6.3
교육	32	3.5
국제법	39	4.2
법	83	9.0
생태계	13	1.4
어업	26	2.8
주권	15	1.6
안보	7	0.8

통해 통합, 분류하였다. 〈표 4〉는 주요 어휘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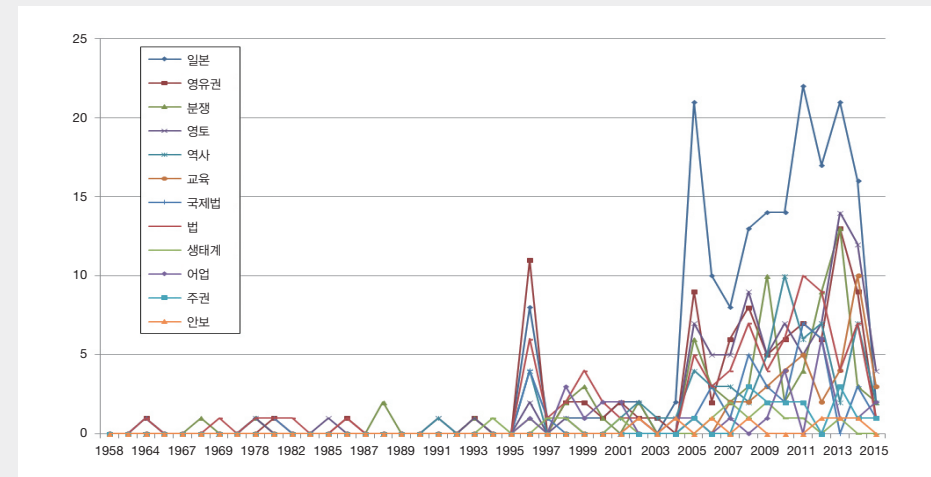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주요 어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일본'이다. 이는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상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관련 연구에는 에도막부 시대 이후의 일본의 입장과 태도 등이 포괄되어 있지만, 독도 문제가 이 밖에도 센카쿠 문제, 홋카이도 북방 4개 영토 문제 등의 중일관계, 러일관계, 국제법 등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영유권', '분쟁', '영토'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법' 관련 연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2. 시기별 주요 어휘 변화와 기관별 연구 경향

³⁶ 주요 어휘로서, '국제법'과 '법'을 구분한 것은, 국내 차원의 어업 관련 분야 연구를 비롯해 생태·지질·환경 차원의 행정법 등의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5〉는 주요 어휘의 빈도와 분포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증가 패턴과 유사하게 주요 어



〈그림 5〉 1958년 이후 독도 관련 학술논문의 주요 어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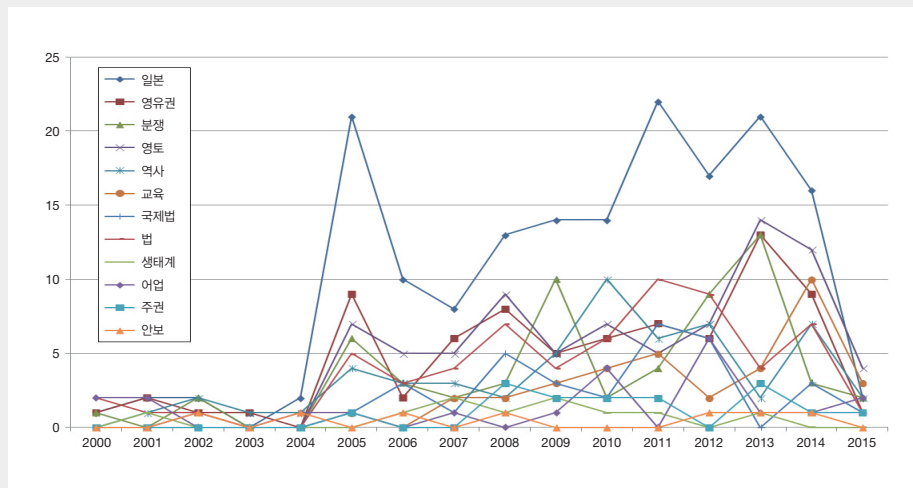
휘들의 등장 빈도가 변화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도 관련 연구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위 어휘들의 빈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1차적으로 증가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2004년도 이후 해당 어휘 관련 분야의 연구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6>은 위의 분포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기간만 한정해서 다시 나타낸 것이다.

독도 문제가 일본과 관련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으로 영유권, 영토, 분쟁 등의 어휘가 2013년에 가장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교육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소 감소했고, 2014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법은 2011년, 2012년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주권, 안보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등장한 연도가 없는 편이다. 어업은 2012년에 6건으로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어휘 10개와 해당 어휘가 1회 이상 언급된 논문이 1편 이상인 기관 8곳에 한정해 주요 어휘와 연구기관의 상관빈도를 교차해 분석



<그림 6>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학술논문의 주요 어휘 분포

<표 5> 주요 어휘와 연구기관의 빈도 현황

	영유권	분쟁	영토	역사	교육	국제법	법	어업	주권	안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8	18	15	11	8	10	14	7	9	1
동북아역사재단	4	5	12	6	4	1	1	1	0	0
한국이사부학회	4	0	1	2	0	3	5	0	0	0
한국군사학회	4	0	0	1	0	1	2	1	0	0
중앙법학회	2	1	1	0	0	3	3	0	0	0
한국국제정치학회	2	1	1	0	0	0	0	0	1	0
한국논단	2	0	1	0	1	0	0	0	0	0
한국해사법학회	4	2	2	0	0	1	4	0	0	0

해보았다.³⁷ <표 5>에서 '영유권' 어휘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 역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18건이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이사부학회, 한국군사학회 및 한국해사법학회가 각 4건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빈도를 보였는데, 특히 '영유권', '분쟁', '영토'가 가장 높았다. 또한 '국제법', '법' 분야를 합치면 이 역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는 '영토'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국이사부학회는 '국제법'과 '법'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바로 해당 기관이 해당 어휘에 특화되어 있거나 전문화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연구 경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37 각각의 주요 어휘별로 모든 연구기관의 빈도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하여 논문에 게재할 수 없기에, 일부 기관만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어휘 12개 중 '일본'과 '생태계'는 제외하였다. 10개 어휘의 논문이 1회 이상 게재된 기관은 총 8개 기관이었다. <표 5>에 빈도수 표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은, 모집단이 전체 연구기관으로 확대할 수 없는 점(10개 어휘 중 1개 어휘가 1회 이상 사용된 8개 기관만 한정하였으므로), 8개 기관 중 각 기관의 각 어휘 빈도 비율은 각 기관별 연구경향 또는 특성상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한 기관 내 10개 어휘 빈도의 사용 비율 역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이상, 독도와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의 발표 빈도와 연구기관, 연구자, 주요 어휘 등의 빈도와 경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인문,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지리, 해양 등 자연과학 분야를 망라해 약 960여 건의 학술논문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독도

관련 학술논문 발표는 1996년 이후 독도학회 발족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발족과 각 전문학회지에 독도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에는 다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되었다. 연구기관으로는 지리, 지질, 해양 분야를 포함해 약 13개 연구기관에 논문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가장 독보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남대학교는 독도연구소 외에 민족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독도 관련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과 동 재단의 독도연구소 간행 『영토해양연구』가 최근 연구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국이사부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 국제법과 해양법 관련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인 연구자들은 약 9명 내외로 확인되었고 각각의 연구자들은 영남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지적학회 등 특정 연구기관 및 학회지에 집중적인 투고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특정 연구기관 외에는 어문학회 관련 네트워크 학회에 투고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경향이 전문적인 연구 결과의 과급효과와 축적, 계승 발전, 담론장 형성 등에 바람직한지 여부는 다소 의문스럽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요 어휘로 살펴본 연구 경향은 한일관계 속에서의 독도 문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유권 문제와 분쟁을 둘러싼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최근 들어 국제법, 또는 기타 법규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주권, 어업, 안보, 역사, 교육 분야 연구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록 드물게나마 국내 연구에 대한 계량적 통계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정적인 키워드와 일정한 코딩 작업 등을 거친 수치상의 결과이므로, 단행본과 학위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담지하지 못했다는 한계, 연구제목상의 불일치로 인해 누락된 학술논문들이 다수 존재하며, 또한 각 논문의 내용과 질적(質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연구기관과 연구자, 주요 어휘에 대한 정성(定性)적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독도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향후 일본에서의 독도(다케시마) 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도출하고, 이를 상호 비교 대조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식과 태도, 향후 연구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데이터의 분석 또는 해석과 관련해 필자가 언급하지 않았거나 간과한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각 연구자 제위의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문 초록

본고는 전후 한일 양국의 '독도'에 관한 연구 성과와 주요 논문의 경향과 최근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한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우선적으로 국내 연구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분석 대상을 추출하고 서지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학위논문과 단행본 수록 논문 등을 제외하고, 1945년 1월 1일~2015년 6월 1일 현재까지 기간 중 국내 학술정보검색 DB 중 RISS에서 '전체 키워드'로서 '독도'를 입력·검색한 학술논문집, 저널, 학술지 등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1,742건 가운데 중복 집계 등을 제외한 964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학술논문 제목의 형태소 단위별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어휘의 등장 빈도, 발행 연도, 저자, 학술기관명을 코딩하여 연도별·발행기관별 빈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술논문 제목 중 독도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주요 어휘 중 12건의 어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빈도분석과 해당 기관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독도 관련 학술논문 발표는 1996년 이후 독도학회 발족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발족과 각 전문학회지에 독도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에는 다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약 13개 연구기관에 논문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가장 독보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연구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인 연구자들은 약 9명 내외로 확인되었고 각각의 연구자들은 영남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지적학회 등 특정 연구기관 및 학회지에 집중적인 투고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어휘로 살펴본 연구 경향은 한일관계 속에서의 독도 문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유권 문제와 분쟁을 둘러싼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최근 들어 국제법, 또는 기타 법규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주권, 어업, 안보, 역사, 교육 분야 연구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독도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향후 일본에서의 독도(다케시마) 연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도출하고, 이를 상호 비교 대조함으로써 양국간의 인식과 태도, 향후 연구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독도, 학술논문, 통계분석, 독도 영유권, 국제법, 연구기관, 학회지, 학술잡지

ABSTRACT

Trends of Researches relating Dokdo in Korea, the statistical analysis of academic papers

Oh, Ilhwan

Research Director, ARGO The Lab of Humanity and Social Issues

Yi, Yeonsik

Foreign Research Fellow, SOPHIA University, Japan

This article is statistically analyzing the trends of the academic papers on Dokdo in Korea. This research covers all the academic papers including the word 'Dokdo' from 1945 to Jun, 2015, at the DataBase, RISS(Research Information Shring Serive, the one of the most extensive research data base in Korea, run by KERIS, funded by Korean Government), excepting paperback books and thesis.

964 papers on Dokdo was selected and analysed among 1,742 papers not relating Dokdo actually or overlapped. About the selected 964 papers, we analyzed the frequencies and ranks of the authors, Journals, years issued, and main kew words of titles.

Analysis result shows that Dokdo research papers was increased to since 1995 and upsurged after the middle of 2000's. Also we found that the numbers of papers are decreasing these 3 years, after 2012. 13 of major leading research institute, society, or laboratory, and 9 researchers are founded. Also, we realized that most of the leading institutes and researchers are combinded with specific academic society, university, or foundations. It is biased that most of leading researchers' papers are published in the specific journals, only.

In the past, comparatively the matters of historical approach were overwhelmingly. But in recently, for the last 10 years, Dokdo research are focused on the fields of territory, sovereignty and conflict. Specially, stud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on the fields of Dokdo, ocean, fishery and etc. are increasing.

It is needed that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paperback books and thesis on Dokdo would be committed. And it is nee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analysis on Takeshima researches in Japan side by side.

Keywords

Dokdo, statistical analysis, academic papers, authors, researcher, journals,

institute, society, frequency, Korea-Japan relations, territory, sovereignty, conflict, international law, Takeshima



참고문헌

- 구선희, 2007,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사학보』, Vol. 28, 고려사학회.
- 김명기, 2014,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Vol. 59 No. 3, 대한국제법학회.
- 김병우, 201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보도 경향 분석-《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수희, 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수희, 2013,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No. 5,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 201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분석」, 『독도연구』, No.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채형, 2014, 「독도에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입장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Vol. 15, No. 1.
-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한국이사부학회.
- 박경근·황상일, 2008,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지리학논구』, No. 2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오미영, 2005, 「독도영유권에 관한 소고: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22권, 현대일본학회.
- 이명찬, 2011, 「마이클 그린과의 대화: 독도 관련 부분」, 『영토해양연구』, No. 1, 동북아역사재단.
- 이명찬,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No. 3,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환, 2011,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연구』, No. 1,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 Vol. 49, 동아시아일본학회.
- 정병준, 2005, 「영국 외무성의 對日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 독도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정병준, 2013,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4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최재목, 2013. 7,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제언: 배중률·실증주의의 반성과 ‘제3의 선택지’ 모색」, 『일본문화연구』, Vol. 47, 동아시아일본학회.
- 최진옥, 1996, 「독도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하도겸, 2012,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I·II)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Vol. 25.
-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 근현대사연구』, Vol. 40, 한국근현대사학회.
- 허영란, 2002,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현대송, 2013. 6,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전망: 2011년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통권 13호.
- 현대송, 2014,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 48, No. 4, 한국정치학회.
- 호사카 유지, 2013, 「독도 문제의 한국 측 극복논리와 한·일 양국의 항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저널』, 제23호(가을).

베트남-중국 간 영토·영해 경계 확정의 역사

응웬 티 한 하노이국립사범대학교 교수

다. 즉 '현재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대의 국경'과 '역사적 국경'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복잡성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간의 영토·영해의 주권과 국경의 확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쟁과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과 중국은 양국 간의 국경·영토에 관한 세 가지 문제 중 육상 국경과 톤킹 만에서의 국경 확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가장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한 가지 문제는 Biền Đông(South China Sea)의 호앙사와 썬잉사 군도의 영유권 문제로서, 베트남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실제적·역사적·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양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관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주로 프랑스와 베트남의 보존 자료를 토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 영토 국경의 확정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분쟁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경과 영토'는 한 나라의 존재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국경'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국경을 국가의 영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길로서 지리적인 관점에 따라 단순한 문제로 바라보는 측면이고, 둘째로는 국경이 영토의 경계선이 아닌 국제무대와 역내에서 국가 간의 양자·다자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로 간주되는 경우다.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문제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양국은 육지와 바다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과 중국의 서남지역의 약 1,400km의 육로 국경과 북부만(통킹 만 또는 베이부 만)에서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Biền Đông(East Sea or South China Sea)의 호앙사(파라셀)와 썬잉사(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

과거부터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 형성과 확정은 긴 시간을 끌어온 복잡한 문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국경 확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

II. 베트남-중국 간 육로 국경 확정 문제: 18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서남지역의 3개 성(운남, 광시, 광둥)과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의 6개 성, 즉 라이 쩌우(Lai Chau), 라오 까이(Lao Cai), 하장(Ha Giang), 까오방(Cao Bang), 랑선(Lang Son), 몽까이(Mong Cai)에 걸쳐진 약 1,400km에 이르는 양국 간의 육로 국경은 험준한 지형과 가혹한 기후,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라인(Rhin) 강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산맥처럼 자연적인 경계에 따라 확정된 국경선이 아니다. 역사·지리·문화적인 요소로 인해 국경 지역의 양국 거주민은 서로 간의 영토를 오가며 생활하고 수자원 개발, 경작 행위를 해왔다. 본래부터 국경 지역의 거주민과 민족들은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복잡한 문제였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육로 국경의 획정 역사는 1885~1895년까지 프랑스와 중국 간의 역사, 1954~199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로 구분된다.

1. 프랑스-중국 간 국경 획정: 1885~1895

실제적으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경은 10세기부터 정식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베트남의 모든 봉건 왕조들은 영토 주권의 획정을 위해 국경을 확고히 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었다. 그러나 그 시기의 동남아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국경선' 또는 '영향 지역'에 대한 개념은 자연적인 지형에 따른 구분보다는 인간과 사회 공간에 따른 구분이라는 의미에 치우쳐 이해되었다.

서구열강의 '식민지화' 과정은 아시아 지역에 '국경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는데 특히 실제 현장뿐만 아니라 서류상의 상세한 표시와 명확히 결정된 국경의 법적인 근거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었다.

아시아 각국, 그중 베트남과 중국 모두 과거부터 형성된 국경에 대한 관념을 빠르게 버림과 동시에 서구세계의 관념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배경하에서 국경을 획정하는데 구(舊)개념과 신(新)개념 모두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¹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1887년과 1895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획정된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부터 이어져온 국경이 서구세계의 현대적인 규정과 결합하여 재획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식민지화' 시기에 국경의 획정 문제에서 발생한 많은 유사한 경우 중 하나일 뿐이다.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었거나 영향권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많은 국경이 재획정되었으며 그러한 국경에 대해서는 보통 '식민지 국경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또한 그러한 국경선의 획정을 위해 체결된 조약, 협약은 '불평등조약'으로 불린다.

1 Georges Condominas, 1980, *L'espace social: à propos de l'Asie du Sud-Est*, Paris, Flammarion, pp. 11~94.

1) 국경 획정에서의 프랑스와 중국 간의 이견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베트남-중국 국경의 획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전쟁'과도 같았으며 양측 모두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기회를 모색했다. 국경을 획정하는 관점에 대한 가장 큰 견해차는 국경 획정 전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1885년 체결된 텐진조약의 3항에 기록된 단어를 통해서도 양측의 격렬한 논쟁을 엿볼 수 있다.

6개월의 시한 내에 양측의 대표단은 중국과 통킹(北圻)의 국경을 획정하고 국경 획정을 위한 표시석의 매설을 실시할 것이다. 양측이 표시석의 위치 또는 통킹의 현재 국경선에 대한 조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양측 모두 각 측 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것이다.²

양측의 논쟁은 '통킹의 현재 국경선에 대한 조정'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그들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베트남에서의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위해 너무나 많은 권리를 희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 역시 중국을 위해 베트남-중국의 국경 획정에서 '다른 이익'을 줄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국경선에 대한 '큰 조정'을 받아들였으며 '단지 통킹 지역 영토에 관한 조정만'을 받아들이고 중국 측의 영토는 조정하지 않았다.³

2 Article 3 du "Traité de paix, d'amitié et de commerce, signé à Tien-Tsin entre la France et la Chine," le 9 juin 1885, *Journal Officiel*, 27 janvier 1886.

3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0, *Procès-verbal de la Délégation française*, No. 1, séance du 12 janvier 1886, "L'argument de la Délégation chinoise sur le problème de délimitation frontalière."

중국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에는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과 외부 요소로 인한 압력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중국 역시 영국과의 중국-미얀마 국경 획정 중에 있었다. 그로 인해 만일 중국이 프랑스와의 국경 획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게 된다면 영국과의 국경 획정 시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중국의 요구를 단호히 반대하며 법적인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트남은 항상 하나의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통킹은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 하에 속하지 않으며 중국이 프랑스에게 통킹을 '건네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베트남-중국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반드시 양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텐진조약의 3항에 언급된 '국경선 조정'은 단지 국경선에 대한 '작은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실현될 수도 있다.⁴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와 중국은 국경 획정이 필요한 세 군데의 국경 지역에 대한 중국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첫째, 중국의 광시와 베트남의 까오방(Cao Bang) 및 랑선(Lang Son) 지역: 이는 군사, 무역의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프랑스의 사부아(Savoie), 앵(Ain), 두(Doubs) 세 지역을 합산한 것과 맞먹는 약 14,000km²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영토를'⁵ 베트남 쪽으로 국경을 조정하기를 요구했다. 그중에는 랑선(Lang Son)과 텃케(That Khe)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의관[友誼峯, 남판의 관문-중국의 관문]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당(Dong Dang) 마을과 랑선(Lang Son)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영토에 관한 과도한 요구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은 통킹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둘째, 중국의 운남과 베트남의 라이쩌우(Lai Chau), 라오카이(Lao Cai), 하자(Ha Giang) 사이의 국경 지역은 험준한 지형으로 왕래가 어려우며 랑선(Lang Son)과 같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산이 많은 지역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베트남의 주권의 표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역이었다. 일부 지역은 19세기 이전 중국과 베트남 봉건 왕조 간의 분쟁 대상이 된 영토 지역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경선을 반드시 '조정'해서 양측이 새로운 국경선 획정에 뛰어들기 전인 18세기의 중국의 역사에 따른 국경선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프랑스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의 요구는

4 FR_CAOM, volume 12 545, *Télégramme de Cogordant à Freycinet*, le 19/1/1886.

5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0, *Lettre de M. Chaffray à M. de Fraycinet*, Président du Conseil,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le 7 février 1886.

다음과 같이 "약 1,000km²에 달하는 영토(퐁투롱, Tong Tu Long을 포함하는 지역)의 회수와 함께 1728년 이전 역사에 따른 운남의 국경선으로 되돌려야 한다"⁶였다.

셋째, 중국의 광둥과 베트남의 몽카이(Mong Cai)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영해와도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 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중국은 처음부터 중국에서 통킹만으로 나가는 관문이자 바다에 접한 지역인 박롱 곶(Cap Pack-Lung)을 포함한 약 1,705km²의 이 지역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냈다. 본인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프랑스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박롱 곶 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⁷ 중국 측의 관점에 따르면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안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프랑스는 해상 강국이기 때문에 국경 획정 협상에서 중국이 프랑스에 일부 육지 지역을 양도하는 것은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⁸

6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2, *Annexe de la lettre de M. Dillon du 14 novembre 1886 a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Note remise à M. Dillon par le Colonel Tisseyre."

7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3, *Télégramme d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à M. Dillon*, 27/02/1887.

8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4(1886-1888), Document le 8 mars 1887, *Les protestations des Chinois*.

9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3, *Télégramme d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à M. Dillon*, 27/02/1887.

이와 같이, 중국이 세 지역 모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여 세 국경 지역에서 영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협상 과정이 지연되고 결렬되었다. 최종적으로 프랑스와 중국 양측이 받아들인 해결법은 큰 분쟁의 소지가 없는 지역의 국경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북경에서 양국의 정부급 협상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⁹

2) 이견의 극복과 프랑스-중국 간 국경 획정의 결과
기본적으로 베트남-중국의 국경선은 주로 역사적인 국경선과 프랑스 측이 제시한 지도에 따라 확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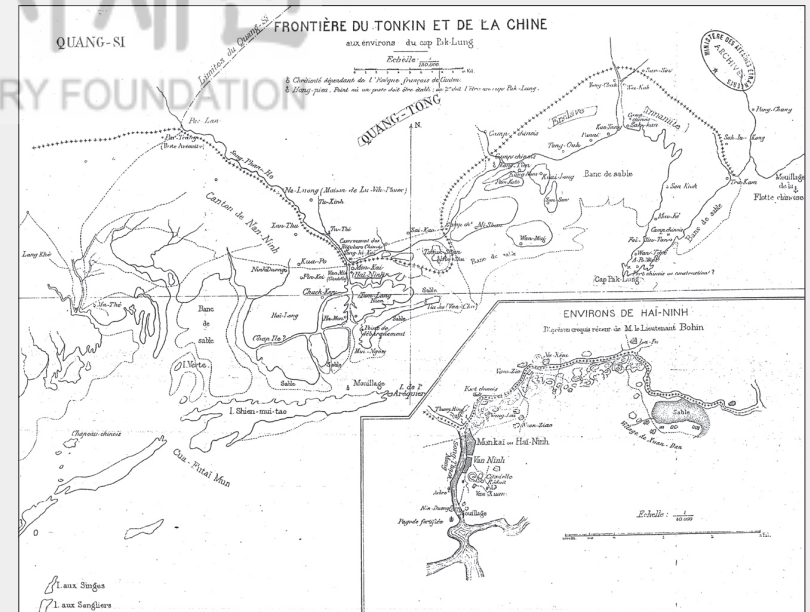
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일부 분쟁 지역은 북경에서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실제적으로 국경 획정 협상 과정은 북경에서 진행된 프랑스와 중국의 무역협상과 시기를 같이했다. 그로 인해 ‘중국에서의 무역권’은 양측 모두가 국경 문제에 대한 ‘홍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중국에서의 무역권은 아시아 지역의 정책에서 항상 최우선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킹 영토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즉시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3항의 내용(1885년 텐진조약)과 관련한 국경을 획정하기 전 국경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한편으로는 해당 분쟁 지역을 무역 협상에서 홍정 카드로 사용했다.¹⁰ 이 부분은 분쟁이 발생한 국경 지역의 해결을 위해 북경에서 개최된 양국 간의 외교협상 결과에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광시 국경 지역의 경우 프랑스는 중국의 무역권과 이 지역의 국경선 조정을 맞추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다. 그로 인해 중국은 통킹 영토에 대한 야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큰 의미 없이 프랑스가 중국에 양보한 지역 중 하나는 우의관 지역에 새롭게 획정된 국경선이다. “국경선은 우의관 전방 100m 지점부터 우의관에서 동당으로 가는 도로 상에서 시작된다.”¹¹ 그러나 학계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한 상반된 논쟁이 발생했는데 심지어는 예부터 베트남의 영토였던 우의관을 중국에 양보한 책임을 프랑스에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둘째, 운남 국경 지역의 경우 프랑스는 약 1,000km²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회수와 더불어 1728년 이전 중국 역사에 따른 국경선으로 되돌려야 하며 그 국경선을 협상을 위한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약 600km²의 영토(투롱, Tu Long, 동광산을 포함하는 지역)를 중국의 요구에 따라 조정했다. 이 지역은 프랑스가 경제적 효과를 높

이 평가한 지역이 아니었다. 또한 분쟁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는 약 1,600km²에 달하는 풍토(Phong Tho) 지역과 라이쩌우(Lai Chau) 지역이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영토로 보존되었다.

셋째, 광동 지역의 경우 프랑스가 박롱(Bach Long) 곳에 속한 베트남의 중요한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넘겨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과도하게 긴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또한 무역권을 갖기 위해 프랑스는 베트남의 이익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시기의 프랑스와 중국은 통킹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시기에 광동 지역에서 프랑스가 모든 관심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다. 해상 강국으로서 프랑스는 해상에서의 섬과 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북부만(통킹만)의 경우 프랑스는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항상



〈그림 1〉 광동 지역에서의 프랑스-중국 간 영토 분쟁 지역

출처: AM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 volume 64(1886~1888).

10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 - Indochine, volume 63, *Télégramme du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à M. Dillon*, 18/02/1887; *Télégramme du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à M. le Résident Général à Hanoi*, 20/02/1887.

11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 - Indochine, volume 61, *Procès-verbal de la Délégation française*, séance 7 avril 1886.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 대상 지역에 속한 꼬또(Co To) 섬을 포함하여 빈 지역의 대부분의 면적(62%는 베트남에 속하고 38%는 중국에 속함)이 베트남의 영향권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1887년과 1895년에 프랑스와 중국 간 체결된 조약은 국경 획정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으며 양측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프랑스와 1887년, 1895년 조약을 체결하며 그 시기의 다른 서방국가들과 강제로 체결해야 했던 ‘불평등’ 조약과 마찬가지로 많은 권리를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프랑스의 국경 확정 협상에 참여했던 인사는 프랑스 정부는 중국에서의 무역권을 획득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베트남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회고했다.¹² 국경 문제 전문가들은 “그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잘 확정된 국경선 중 하나”¹³ 라고 평가한다.

2. 베트남-중국 간 국경 재획정: 1954~199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중국 국경은 프랑스와 중국이 19세기 말에 확정하였으며 긴 시간 동안 정식 국경선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일찍부터 양국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대상이었다. 중국은 본래 국경 문제를 국가의 강력한 실권을 나타내는 장소로 여겼으며 영토에 대한 ‘현상(statu quo)’을 받아들이지기를 싫어하는 강국으로 서방국가와 체결했던 모든 ‘불평등’ 조약을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문제를 포함하여 주변국들에게 국경을 재획정할 것을 요구했다.¹⁴ 베트남 역시 양국 간의 국경을 재획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의 관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의 내부 문제와 더불어 60·70·80년대 양자 관계는 이 문제를 잠시 뒤로 제쳐두도록 했다.

1991년도의 베트남과 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양국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그것

12 MFAE, Mémoires et Documents, Asie-Indochine, volume 64, *Lettre de M. Dillon à M. l'Éditeur de Journal Indo-chine*, 09/07/1887.

13 J.R.V. Prêtcôte, 1977, *Les frontières de l'Asie du Sud-Est*, Membourg, p. 60.

14 Chen Jie, 1994, 10, "China's Spratly policy...", *Asian Survey*, volume 34, n° 10, p. 893. Cité par Etienne Hirsch, op. cit, p. 120.

이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해결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만 견해 차이는 협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발생되었다.

양국 간의 가장 큰 견해차는 국경 획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다. 그것은 베트남-중국 국경선 재획정을 위해 1887년과 1895년에 프랑스와 청나라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인해 확정된 국경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관점은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식민지 국경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현재의 역학관계에 기반한 국경의 재획정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로 인해 초기 중국의 관점은 ‘구(舊)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1887년과 1895년 체결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관점을 1958년부터 드러냈으며 모든 협상 과정에서 재차 강조하였다.¹⁵

중국의 관점과는 반대로 베트남은 모든 협상 과정에서 ‘1887년과 1895년에 체결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조약’에 근거한 국경선의 재획정을 통한 ‘구 국경선의 인정을 원하는’ 관점을 유지해왔다.¹⁶

양국 간의 논쟁은 1993년까지 이어져오다가 협의되었다. 비록 실제적인 조정은 있었으나 중국은 베트남이 국경선 획정을 위해 1887년과 1895년 체결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조약을 근거로 하지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했

다. 실제 국경선 확정 과정은 많은 요소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분쟁 영토 지역’과 관련된 견해 차이였다. 이전에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국경선 확정 시 발생한 견해 차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견해 차이는 주로 경제·군사적 요충지, 양국의 오래된 영토 역사와 연관된 지역,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역에 집중되었다. 양측은 이 지역의 문제 해결 원칙을 국방 안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유사한 영토 면적을 교

15 *Mémoire des déclarations faites par le Vice-premier ministre Li Xian Nian au Premier ministre Pham Van Dong le 10 juin 1977*, Beijing Information, n° 13, le 2 avril 1979, cité par Antoine Dauphin, *La frontière sino-vietnamienne de 1895 à nos jours*, P.B. LAFONT, "Les frontières du Vietnam", Paris, Harmattan, 1989, p. 111.

16 *Sự thật về những lần xuất quân của Trung Quốc và quan hệ Việt-Trung*, Nhà Xuất Bản Đà Nẵng, 1996, tr. 95.

환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주고받는' 개념에 근거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12월 30일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상 영토 확정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의 정식 국경선이 확정되면서 한 세기 이상을 끌어오던 국경선 확정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경선 획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경선 확정 과정의 방식과 결과는 계속해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III. 북부만(통킹만)에서의 베트남-중국 간 영해 주권 문제

Biển Đông에서의 베트남과 중국의 영해 주권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는 바로 북부만(통킹만)의 국경선 확정 과정이다. 이 과정은 관련 국가, 즉 베트남, 중국, 프랑스 사이에서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베트남과 중국 관계에서 매우 복잡한 영해 주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북부만의 면적은 126,250km²로 초승달 형태를 닮아 있으며, Biển Đông의 서북지역, 즉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만이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북부만은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졌으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심 해상로이기도 하다. 지리, 위치, 전략적 중요성 외에도 북부만은 다양한 수산물 어종과 특히 원유·가스 같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의 보고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의 어민 모두 일찍부터 북부만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이 지역의 섬과 영해 주권에 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1. 북부만(통킹만)의 국경 확정 문제에 관한 프랑스-청나라 조약(1887)

북부만은 프랑스가 19세기 베트남 식민지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지역이다. 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국경 획정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다. 그때부터 이 문제는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국경 확정 협상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협상의 결과는 1887년 6월 26일 작성된 프랑스-청나라 조약의 3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파리 자오선 105° 43'선을 따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 즉 Tch'a Kou 또는 Ouan-Chan(짜꼬(Tra Co))의 동쪽을 지나는 남북축이고 국경선을 형성한 그 지역은 중국에도 속하는 지역이다. 자오선의 서쪽에 위치한 섬들과 Go-tho(꼬토(Co To)) 군도는 안남(베트남)에 속한다.

조약에는 3장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북부만 획정선은 몽카이(Mong Cai)의 내륙에 획정된 국경선의 마지막 지점에서 남하하여 파리 자오선 105° 43'에 이르는 북부만 북쪽 경계선의 짧은 한 구간과 광둥 간의 국경선 확정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 선은 끝나는 지점이 없으며 '국경선 형성(formant la frontière)'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다.¹⁷

이 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식민지 시대가 끝날 때까지 프랑스와 중국 간에 체결된 어떠한 문서에도 북부만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식민지배 기간 동안 프랑스는 이 지역의 관리와 개발에서 권력의 우위를 선점했다. 이는 프랑스가 해상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베

트남에 대해 연구한 많은 프랑스 학자들은 1887년 체결된 프랑스-청나라 조약이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북부만의 '국경'을 나누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청나라 조약은 북부만의 38%의 영해는 중국에, 62%는 베트남에 속하는 것으로 획정했다."¹⁸ 이러

17 Journal Officiel francais(JOF), le 22 octobre 1896, "Convention relative à la délimitation de la frontière entre la Chine et le Tonkin," signé à Pékin, le 26 juin 1887.

18 François Joyaux, 1993, *Géopolitique*

한 주장은 조약의 3항과 첨부된 지도에 기록된 ‘국경선 형성(formant la frontière)’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후 베트남과 중국 간의 북부만 국경선에 대한 협상 과정 중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2. 베트남-중국 간 북부만(통킹만) 국경 획정: 1973~2000

1973년 파리조약이 체결된 직후 베트남과 중국 모두 북부만의 국경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육상 국경의 획정과 관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측 모두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법적인 근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베트남은 ‘1887년 체결된 프랑스-청나라 조약’에 따라 북부만의 국경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조약의 3항에 기록된 ‘국경선 형성’이라는 용어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북부만의 국경과 베트남-중국 간의 육상 국경 문제 모두 1887년 체결된 프랑스-청나라 조약에 근거하여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관점에 반대하며 북부만의 국경은 단 한 번도 획정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1887년 조약은 만에 위치한 섬들의 소유권을 나누기 위함이지 국경선 획정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프랑스는 각국에 ‘해상의 자유’¹⁹를 적용할 것을 장려하며 해안국가의 영해 국경이 3해리를 넘지 않도록 적용하도록 하면서 북부만 영해의 2/3가 자국의 소유라고 간주하며 북부만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기를 원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소유권을 나누기 위해 그어진 선을 국경선 획정으로 간주한다면 베트남은 북부만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부만의 국경과 육상 국경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de l'Extrême-Orient, tome 2. Frontières et stratégies, Bruxelles, Ed. Complexe, 1993, p. 257.

19 베트남 외교부, 1993년 10월 19일 체결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영토와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서.

관점에서의 견해 차이는 양국 관계, 특히 양측 모두가 외국 석유가스 회사에 만 지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와 개발의 시행을 허가할 때 양측의 충돌과 관계 긴장으로 이어졌다. 1982년 베트남은 1887년 프랑스-청나라 조약에 따라 획정된 북부만 지역은 베트남의 ‘역사적 수역’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해 중국은 격렬히 반대하며 양국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갔다.

육상 국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부만 국경 획정 협상은 1991년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양측은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법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법상에 근거하여 실제 케이스를 연구하고 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²⁰ 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1982년도의 UN 해양법 협약(UNCLOS)이 획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육상 국경 문제의 해결과는 다르게 북부만의 국경 획정을 위해서는 1887년 프랑스-청나라 조약이 법적인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해상 국경 문제의 해결에서의 북경의 고집과 하노이의 양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887년 조약을 국경 획정에서 법적 근거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한 세기 가까이 끌어오던 양측의 가장 큰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북부만에 대한 공식 협상은 1996년 3월에 시작되었다. 북경은 북부만을 ‘절반’으로 나누어 양측이 각각 50%씩 소유하고 베트남 쪽으로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베트남은 조약에 언급된 획정선을 토대로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은 육상 국경의 획정 시 사용했던 방법을 적용했다. 즉 ‘협의’와 ‘주고받기’다. 베트남 측은 북부만을 나누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1887년 조약에 언급된 자오선 108°03 E를 사용해야 한다고 수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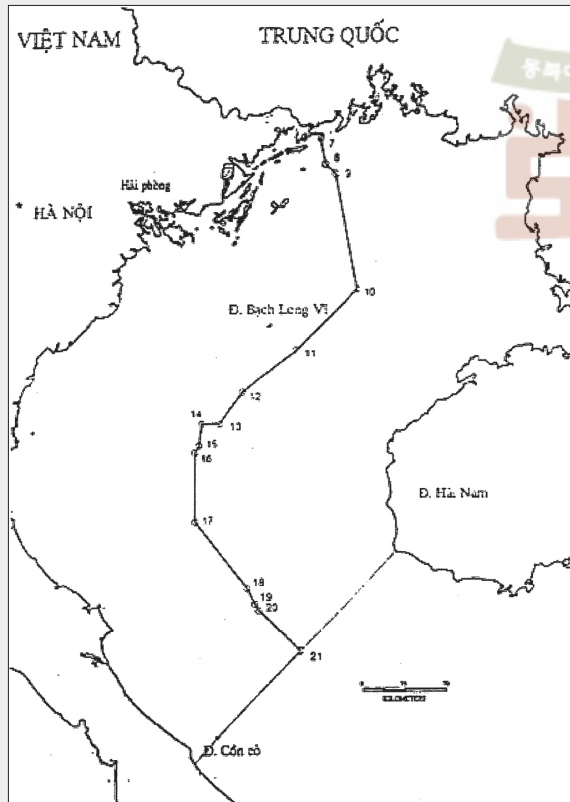
전부터 주장해오던 관점을 버리면서 현재 각 측의 소유에 속한 섬까지 ‘중간선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나누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긴 시간 동안 유지해오던 북부만을 ‘절반’으로 나누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

20 베트남 외교부, 1993년 10월 19일 체결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영토와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서.

이며 베트남 측이 제안한 방안에 따라 북부만(통킹만)을 나누기로 했다.

2000년 12월 25일 북경에서 ‘북부만(통킹만)에서의 베트남과 중국 간 어업 협력 협정과 북부만 국경 획정 협정’이 체결되었다. 북부만에서의 국경은 베트남이 53.23%, 중국이 46.77%의 면적을 갖는 것으로 정식 획정되었다. 과거부터 양측의 분쟁 문제가 되었던 백룡미도(白龍尾島)나 꼰꼬(Con Co) 섬은 정식으로 베트남에 귀속되었다.²¹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베트남은 협상에

21 베트남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귀속되는 북부만(통킹만)의 면적이 중국에 귀속되는 면적보다 넓은 약 8,205km²이다. 베트남에 속한 해안 역시 더 길고 베트남에 귀속되는 섬의 수도 더 많다. 특히 꼰꼬(Con Co)섬 또는 백룡미도와 같이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 원인인 섬들은 베트남에 속해 있는 섬이다. 국경선 획정 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베트남에 귀속된 영해의 면적,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면적은 국제관례 및 국제법에 적합하다. 출처: 2004년 7월 30일 베트남과 중국 간의 북부만(통킹만) 획정 협정이 비준된 의정서 교환식에 참석한 후 외교부 장관 응웬 지 니엔(Nguyen Di Nien)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발췌. <http://www.vietbao.vn/Chinhtri/> 2007년 7월 1일 업데이트됨.



〈그림 2〉
베트남-중국 간 북부만(통킹만)의 국경 획정선
출처: Nguyen Hong Thao, 2001, 사상과업 (Tập chí Công tác tư tưởng) 제1권, 『북부만(통킹만) 분쟁의 해결(Việc giải quyết tranh chấp trong Vịnh Bắc Bộ)』, 하노이.

서 기본적으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북부만의 국경 획정은 베트남과 중국이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역사가 남겨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성을 갖는다. 협상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27년) 동안 이어졌으며,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기복, 육로 국경의 획정과 호앙사·쯔잉사 군도와 관련된 문제와 같은 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부만 문제는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은 북부만 국경 획정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사이에 항상 존재하던 영해 주권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를 해결하였다.

IV. 베트남-중국 간 호앙사(파라셀)·쯔잉사(스프레틀리) 군도의 영유권 문제

Biển Đông(South China Sea)²²은 태평양에서 시작해서 인도양을 지나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 정치·경제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관련국 간의 영해주권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Biển Đông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문제는 복잡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것은 단순히 긴 시간 동안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불안정을 조장하는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2 Biển Đông(East Sea)은 다음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또는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s Sea) 또는 루손해(Luzon Sea). 이러한 서로 다른 명칭은 관련국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국 사이에 명칭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국제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거나 가장 가까운 육지의 명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Biển Đông(South China Sea)은 중국대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에 따른 명칭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 국가의 육지에서 따온 명칭에 따른다고 해서 그 국가의 소유권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 식민지 시대 호양사와 썬양사 군도의 영유권: 1884~1954

1884년 6월 6일 후에(Hue) 조정과 프랑스가 Patenôtre 조약(갑신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프랑스의 통치는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해상강국인 프랑스의 출현은 Biền Đông과 연관이 있는 역내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을 고민에 빠트리게 되었고 호양사와 썬양사 군도는 위 관련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보존 자료 모두 이전 세기부터 호양사와 썬양사 군도 지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베트남과 중국 어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초반부터 응웬 왕조의 왕들은 소함대를 결성하여 호양사와 썬양사 군도 지역에서 침몰한 상업선의 물품을 수집했다. 응웬 왕조의 왕들은 호양사 군도에서 베트남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주장했는데 특히 자롱 왕은 1816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호양사 군도에 영유권을 확정하는 깃발을 꽂고 비석을 세웠다. 그와 반대로 중국 조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행위도 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여 식민 지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양국 간에 영유권에 관한 충돌이 있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국제적인 해상 강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출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넓혀가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을 고민에 빠트렸다. 역내에서의 생존권과 더불어 특히 해상에서의 이익과 관련하여 일본은 프랑스의 출현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프랑스와 경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Biền Đông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그러한 정책은 식민 지배 전 기간(1884~1954) 동안 베트남(프랑스가 베트남을 대표함),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호양사와 썬양사 군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투의 시발점이 되었다.

1) 호양사(파라셀)군도

1907년부터 일본은 프랑스와 중국이 실질적으로 Biền Đông에서의 영유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때를 틈타 동사(Pratas)군도에 사람을 보내 거주케 한 후 이러한 거주민을 근거로 하여 1909년에 동사(Pratas)군도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다.²³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동사군도를 점령한 직후 일본은 중국이 만일 동사군도에 거주 중인 거주민에 대해 큰 규모의 보상을 실시한다면 이 군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²⁴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으로 하여금 Biền Đông과 주변 군도 특히 중국의 해남도 근처에 위치한 호양사군도에서의 자국의 권리에 대해 걱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로 인해 1909년 5월 광둥성 지방정부는 최초로 소규모의 함대를 오래전부터 베트남의 영유권에 속하는 호양사군도에 파견하여 불법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프랑스 정부는 호양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저지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

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장국면을 만들지 않고자 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반(反)프랑스 운동이 일어나 중국에서의 프랑스의 무역적 이익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²⁵ 프랑스 정부는 호양사군도에서의 베트남의 영유권 문제에 ‘방관’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중국과 일본이 본인의 야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21년 광둥성 지방정부는 호양사군도를 해남도의 행정단위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한다.²⁶ 이러한 행동은 Biền Đông의 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광둥성 지방정부는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의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

23 Biền Đông(South China Sea)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군도를 포함한다. 즉, 동사(Pratas)·중사(Maccllesfield)·중국 표기 명칭, 호양사(Paracel)와 썬양사(Spratly)·베트남 표기명칭에 따름. 중국에서 호양사는 시사, 썬양사는 남사라 칭함.

24 MFAE, ASIE-OCEANIE, *Chine*, Note du 14 janvier 1921.

25 MFAE, Asie-Océanie, *Chine*, Note de la Direction Politique et Commerciale, le 4 mai 1909.

26 MFD, SHM, *La Marine française en Indochine(1939-1955)*, Marine Nationale, Travail établi d'après les Archives de la Marine et rédigé par le Capitaine de Vaisseau(R) Michel Jaques du Service Historique de la Marine, Vincennes, tome II, p. 103

다.²⁷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해상에서의 세력을 이용하여 해남도에 중요한 어업지역을 만들고 호양사군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중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일정 시간 동안 해당 도서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²⁸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프랑스는 계속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와 더불어 프랑스 국내 여론 역시 *Biển Đông*에 위치한 군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관점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30년 광둥성 지방정부와 1931년 중국 중앙정부가 ‘The Chinese Fertiliser C’ 사에 대해 호양사군도에서의 인산염 개발을 위한 탐사를 승인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영유권 전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²⁹ 1930년 3월 프랑스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호양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호양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법적 자료를 제시한다.³⁰ 그 이후부터 프랑스 정부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행동을 반대한다는 선언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31년과 1937년³¹ 두 차례에 걸쳐 국제중재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영리한 외교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호양사군도에서의 영유권과 관련된 행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외교적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프랑스는 1937년 2월 28일 ‘순양함(La Motte-Picquet)’을 파견하여 호양사군도에서 조사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거주민이 없음을 기록했다. 그 즉시 같은 해 10월 프랑스는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호양사군도에 작은 등대를 설치한다.³²

27 Bulletin de Renseignements Politiques N° 4, le 5 mai 1921 de la Légation de France en Chine, annexé au “La Souveraineté sur les Archipels Paracels et Spratleys”, Chemillier-Gendreau Monique, Paris, Harmattan, 1996, 306 p.

28 MFAE, ASIE-OCEANIE, *Indochine, Gouvernement Général de l’Indochine, Direction des Affaires Politiques et Indigènes, Note le 6 mai 1921.*

29 MFD, SHM, *La Marine française en Indochine(1939 -1955)*, Marine Nationale, Travail établi d’après les Archives de la Marine et rédigé par le Capitaine de Vaisseau(R) Michel Jaques du Service Historique de la Marine, Vincennes, tome II.

30 MFAE, Asie-Océanie, *Indochine, Télégramme officiel du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au Ministre des Colonies, le 14 mars 1930.*

31 MFAE, Asie-Océanie, *Chine, Note du 15 mai 1950 de la Direction d’Asie-Océanie.*

1938년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도서지역에서의 영유권을 선언하고 침략행위를 시작하기 위해 호양사군도에 속한 푸렴도(島)(Ile Boisé: 용싱도 또는 영흥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에 맞서 프랑스는 1938년 3월 ‘Marne’ 호송함을 호양사군도에 파견하여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많은 표지석을 설치했다.³³ 1938년 7월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군대를 차례대로 파견하여 호양사군도에 속한 섬에 주둔하게 했으며 1939년 7월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호양사군도를 트어티엔(Thua Thien) 성으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Biển Đông*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중 호양사군도의 위치는 *Biển Đông*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겨졌다.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본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호양사군도를 반드시 점령하겠다는 의중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우리, 특히 해군은 호양사군도가 군사 주둔지로 점령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강대국의 해군이 *Biển Đông*에서 새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국가의 국방 안보와 직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³⁴

32 MFAE, ASIE-OCEANIE, *Indochine, Rapport du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à Monsieur le Ministre des Colonies, Service des Affaires extérieures, le 17 décembre 1928.*

33 MFD, SHM, *La Marine française en Indochine(1939-1955)*, Marine Nationale, Travail établi d’après les Archives de la Marine et rédigé par le Capitaine de Vaisseau(R) Michel Jaques du Service Historique de la Marine, Vincennes, tome II.

34 MFAE, ASIE-OCEANIE, *Chine, Paracels(1946-1947)*, Note n° 326, le 25 avril 1939.

그러한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은 호양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하여 일본의 영토로 부속시킨다고 선언하고 호양사군도를 태평양전쟁부터 1945년까지 사용했다.

패망한 일본은 1946년 호양사군도에서 군대를 철수시킨다.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을 강제로 속박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부터 *Biển Đông*을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중국의 전쟁이 더 강도 높게 벌어졌다. 1946년 3월 프랑스는 영유권을 재확립

하기 위해 방문단을 파견하고 호양사군도를 재점령하기 위해 주둔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군사적·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프랑스가 시간을 지체하던 틈을 타 1947년 1월 국민당 정부는 푸렴도를 점령하고 영유권을 선언한다.³⁵ 그 직후 프랑스는 '순양함(Tonkinois)'을 파견하고 프랑스-베트남 연합군을 호양사군도에 주둔시키며 푸렴도에서 철수할 것을 중국에 요구한다.³⁶ 중국은 격렬히 반대하며 프랑스에게 프랑스가 한 것과 같은 요구를 하며 프랑스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을 동원해서 위협한다.³⁷ 이러한 프랑스와 국민당 정부 간의 긴장 국면은 1950년까지 이어지다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장개석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밀리게 되면서 1950년 4월 국민당은 푸렴도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이후에는 중국 해방군이 주둔하게 된다.

프랑스는 날이 갈수록 인도차이나에서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9년 10월 바오다이(Bao Dai) 정부의 군대는 프랑스 원정군을 대신해서 호양사군도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1950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호양사군도에 대한 제어권을 정식으로 바오다이 정부에 이전했다.³⁸ 1954년에 이르러 프랑스는 베트남 정부에 정식으로 호양사군도 관할권을 넘겨준다.

2) 쑤잉사(스프래틀리)군도

호양사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쑤잉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더 늦게 시작되었다. 최초의 분쟁은 프랑스와 일본 간의 분쟁이었으며, 중국은 1945년 이후까지 이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20년대 들어 일본은 쑤잉사군도에 속한 작은 섬 몇 군데에 사람을 보내 거주하게 하고 상업 활동을 시작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은 경제적 이익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부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이 군도 지역에서의 어업선의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도 대응 활동을 했다.

35 MFAE, ASIE-OCEANIE, *Chine*, volume 214, *Paracels(1944-1955)*, Note de septembre 1946 à février 1947, p. 3.

36 MFAE, ASIE-OCEANIE, *Chine*, volume 214, *Paracels(1944-1955)*, Note de septembre 1946 à février 1947, p. 4.

37 MFAE, ASIE-OCEANIE, *Chine*, volume 214, *Paracels(1944-1955)*, Télégramme du 18 janvier 1947 de l'Ambassadeur de France en Chine.

38 Chemillier-Gendreau, Monique, 1996, *La Souveraineté sur les Archipels Paracels et Spratleys*, Paris, L'Harmattan, p. 111.

1930년 4월 프랑스는 쑤잉사군도에 속한 바오또(Bao To) 섬(Ile de Tempête)에 순찰정을 파견하여 영유권 주장을 위한 깃발을 꽂았다.³⁹ 실제로 1933년 4월까지 프랑스는 쑤잉사군도에 위치한 6개의 섬에 상륙하였고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⁴⁰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33년 4월 프랑스 관보는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한 6개 섬의 명단을 공표했다. 그것을 토대로 1933년 12월 21일 남부(南圻, 사이공) 정권은 상기 언급된 섬들을 바리아(Ba Ria) 성으로 편입시킨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⁴¹

이와 같이 그 당시 프랑스는 쑤잉사군도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주권 주장 행동을 한 최초의 국가다. 일본은 이미 1917년에 쑤잉사군도를 최초로 발견한 국가임을 이유로 들어 프랑스의 그러한 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과 다른 강국들은 프랑스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와 일본은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으나 협상을 개

39 FR, CAOM, *Fonds Indochine*, Agence F.O.M., volume 285, les îles Spratleys 1939.

40 MFAE, *Avis relatif à l'occupation de certaines îles par des unités navales françaises*,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n° 173 du 26 juillet 1933, p. 7837.

41 Arrêté n° 4762/CP du 21/12/1933 du Gouverneur de Cochinchine(M.J. Krautheimer) rattachant à la province de Ba-ria l'île dénommée Spratley et les îlots Caye d'Amboine, Itu-Aba, Groupe des Deux Iles, Loaito et Thi-tu qui en dépendent, Docume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Nationales de la République du Vietnam.

42 MFAE, ASIE-OCEANIE, *Direction des Affaires Politiques et Commerciales*, Note du 10 août 1940.

최하기로 한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을 점령했으며 프랑스와 일본 간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8년 일본은 쑤잉사군도에 속한 바빈(Ba Binh) 섬(Ile d'Itu-Aba)에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정식 발발함에 따라 쑤잉사군도는 일본이 남하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39년 8월 일본은 쑤잉사군도로 전함을 파견한다.

1940년 일왕은 쑤잉사군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 당시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대만 섬의 행정단위로 편입한다는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는 즉시 반대했으나 실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⁴² 이어서 일본은 쑤잉사군도에 위치한 몇 군데의 주요 섬에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기간 동안 동남아에서 일본의 잠수함 기지로 사용했으며 이

는 전쟁 전 기간 동안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일본은 즉시 쓰영사군도에서 철수하였고 프랑스와 중국은 서로 본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양측 모두 군과 전투선을 이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양측의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프랑스가 군도 근처로 순찰함을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자 국민당 군대도 이곳에서 철수했다. 영유권 주장을 위한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논쟁은 더욱더 복잡해지며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측은 중일조약에 따라 대만 섬은 중국에 반환되었고 이에 따라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도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1939년 일본이 프랑스의 호양사군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호양사군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으나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강국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⁴³

1949년 10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패전하여 대만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와 함께 국민당의 군대도 순차적으로 쓰영사와 호양사 군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중국 해방군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1950년 6월 중국 정부는 중국의 영유권에 관한 지도를 공식으로 공표했는데 이 지도의 중국 국경선 내에는 쓰영사와 호양사 군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어느 관련국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⁴⁴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유권 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맺어진 후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쓰영사와 호양사 군도에서 본인의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선언문에 포기한 영유권을 어느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 특히 영유권 문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영미협

43 MFAE, ASIE-OCEANIE, *Chine*(1944-1955), *Spratleys(juillet 1946)*, volume 213, Télégramme du 21 septembre 1946 d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au Secrétaire Général du Comité de l'Indochine.

44 MFD, SHAT, 10H663, 2ème Bureau, Fiche du 15 juin 1950, *Frontière entre la Chine et le Tonkin*.

정 초안의 내용을 토대로 체결되었다. 중국은 그 초안에 대해 “대만과 평후 군도(Pescadores)뿐만 아니라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의 영토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침해”⁴⁵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당연히 중국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군도의 소유 문제를 고의적으로 모른체하며 쓰영사와 호양사 군도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와 ‘비밀협약’을 했다고 주장했다.⁴⁶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951년 9월 7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여한 베트남의 쩌 반 호우(Tran Van Huu) 총리는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적인 영유권에 대해 정식 선포했다.⁴⁷

영유권에 대한 법률 분쟁은 긴 시간 지속되었으며 최종 해결법을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중국과 베트남의 군대가 쓰영사와 호양사 군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1954년까지 이어지다가 프랑스가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패전하고 제네바협정에 따라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Biền Đông에서의 영유권 문제는 해당 주체와 관점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2. 호양사 및 쓰영사 군도의 영유권: 1954년부터 현재까지

45 MFAE, ASIE-OCEANIE, *Chine*, volume 213, les îles Spratley, Pékin-23/8- “Agence Hsinhua”, Télégramme de l’Ambassade de France en Chine, Shanghai le 8 septembre 1951.

46 MFAE, ASIE-OCEANIE, *Chine*, volume 213, les îles Spratley, Pékin-23/8- “Agence Hsinhua”, Télégramme de l’Ambassade de France en Chine, Shanghai le 8 septembre 1951.

47 “La déclaration du Premier Ministre du Vietnam à la Conférence de San Francisco(7/9/1951),” *Revue France-Asie*, 6e année, décembre 1951, n°

제네바협정이 1954년 7월 20일 체결되면서 베트남의 통일, 주권, 독립도 인정받게 되었으나 잠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7도선 아래에 위치한 남부베트남(호양사와 쓰영사 군도 포함)은 남베트남 정권에서 임시 관리하였다. 1956년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철수하며 남베트남 영토를 베트남공화국에 넘겨주었고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호양사와 쓰영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고(군도를 내륙에 있는 현에 속하는 마을(읍)단위로 재편함) 주권을 표시하는 표지석을 세우고, 기상관측소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며 영유권을 선언했다.⁴⁸ 베트남과 중국 간의

쓰영사군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는 대만과 필리핀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등장으로 인해 호양사보다 쓰영사군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 점령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호양사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공화국의 군대는 호양사 섬을 중심으로 군도의 서쪽에 위치한 섬들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푸립도를 중심으로 군도의 동쪽에 주둔했다. 이어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호양사군도에 대한 권리권에 관한 문서를 정식 공표했다.

중국은 1972년 미국과 상해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Biển Đông*에서의 영유권에 관한 활동을 더 강화해나갔다. 그와 동시에 소련과 중국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는 호양사와 쓰영사에서 베트남의 영유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고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간섭도 중단되었다. 미국의 간섭이 사라지고 사이공 정부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1974년 1월 19일 중국은 호양사 섬에 주둔 중인 베트남공화국의 군대를 침공했다. 사이공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 분쟁의 밖에서 있기로 결정했다.⁴⁹ 그로 인해 중국은 재빠르게 베트남의 호양사군도 전체를 점령하게 된다. 베트남의 영유권에 속하는 호양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점령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56년 8월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베트남공화국 정부의 해군은 쓰영사군도의 주요 섬에 진출하여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표지석을 세우고 깃발을 꽂았다. 그 이후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195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쓰영사의 행정관리에 관한 칙령을 발표한다.⁵⁰ 바로 그 시점부터 쓰영사군도의 영유권에 대한 베트남과 중국 간의 분쟁은 극심한 긴장 국

면에 접어들게 된다. 분쟁은 문서를 통한 영유권의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무력충돌을 통해 나타났다. 그 당시 중국은 쓰영사군도에 속한 어떤 섬에도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었음에도 베트남의 영유권 선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한 상황은 1975년까지 이어지다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75년 봄의 승리(남베트남 패망)는 베트남의 역사를 새로이 쓰게 했으며 *Biển Đông*에서의 영유권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통일 베트남 정부는 계속해서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의 영유권을 보호해나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냉전시대 국제 세력의 충돌로 인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한층 더 긴장국면에 접어들도록 만들었다.

통일 직후 베트남 정부는 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호양사와 쓰영사에 대한 영유권 선언 활동을 이어갔다. 1975년 4월 말 베트남군은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쓰영사군도에 속한 6개의 섬에 진출했다.⁵¹ 1975년 10월 베트남과 중국의 고위급 만남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Biển Đông*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 문제는 긴 시간 동안 잠시 잊혀지게 된다. 베트남은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에서의 영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역사적 증거들을 발표하는 한편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즉 1981년 12월 베트남 외교부는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는 베트남의 영토’라고 공표했으며 1982년 2월 베트남 정부는 다낭(Da Nang) - 궤남(Quang Nam) 성에 호양사 현(縣)을 신설하여 편입시킨다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어 1982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쓰영사 현(縣)을 신설했다. 1982년 12월 28일 베트남 정부는 쓰영사 현을 푸칸(Phu Khanh) 성으로 편입시킨다. 그와 함께 베트남군 고위사령부의 쓰영사 군도 방문이 이어졌다.⁵²

중국 역시 영유권 분쟁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1979년 7월 중국은 북경에서 베트남이 호양사와 쓰영

중국 역시 영유권 분쟁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1979년 7월 중국은 북경에서 베트남이 호양사와 쓰영

66-67, pp. 502~505.

48 MFAE, *Asie-Océanie, Chine(1956-1960)*, volume 523, *Télégramme de l'Ambassadeur de France au Vietnam au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du 9 juin 1956*.

49 Péking Review, 18 January 1974, cité par Chi-kin Lo, *China's Policy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Islands*, Routledge, 1989, p. 35.

50 Décret n° 143/NV du 22/10/1956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u Vietnam(M. Ngo Dinh Diem)* portant sur le *rattachement de l'archipel de Spratleys à la province de Phuoc-Tuy*, *Recueil des lois et règlements*, tome I (du 26/10/1955 au 31/1/1959), pp. 465-466, cité par Dossier *Les Archipels des Paracels et Spratleys*, tome II, Le Courrier du Vietnam, Hanoi, 1984.

51 편 공 쪽(Tran Cong Truc) 저, 『군사역사 잡지』 6권 11장 수록,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는 베트남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52 Eric Denécé, 1999, *Géostratégie de la mer de Chine méridionale et des bassins maritimes adjacents*, Paris, Harmattan, pp. 195~196.

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표했고 1980년 1월 중국 외교부는 호양사와 쓰영사에 대한 문건을 공표했다. 1984년 4월 중국 지명위원회는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에 속한 섬을 포함한 *Biển Đông*의 섬, 해변, 암초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다. 1984년 6월 중국 국회는 호양사와 쓰영사 군도를 포함한 해남도의 행정구역 수립을 선포했다. 그 이후에는 중국 고위급의 호양사군도 방문이 이어졌다.⁵³

베트남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1988년 3월 14일 중국의 전투함이 쓰영사 군도에 주둔 중인 베트남 군을 침공하고 다쯔텡(Da Chu Thap), 다짜우비엔(Da Chau Vien), 다가벤(Da Ga Ven), 다뜨응히아(Da Tu Ngia), 다각마(Da Gac Ma), 다수비(Da Subi) 섬을 점령한 사건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다.⁵⁴ 1989년 1월 중국은 그들이 1988년 점령한 섬(툰타)에 주권 주장을 위한 비석을 세운다. 베트남은 이 사건에 대해 UN에 통보하고 수차례에 걸쳐 북경에 외교 서한을 보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991년 11월 10일 베트남과 중국의 고위층은 북경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서명한다. 이 사건은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1999년에는 육지 국경선과 2000년도에는 북부만 국경선 문제와 같은 분쟁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 간의 호양사와 쓰영사 영토주권 문제는 영해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항상 완고한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21세기 초반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군비증강, 경제권 개발의 강화에 힘썼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같은 역내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임에 따라 *Biển Đông*상의 영유권 문제는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되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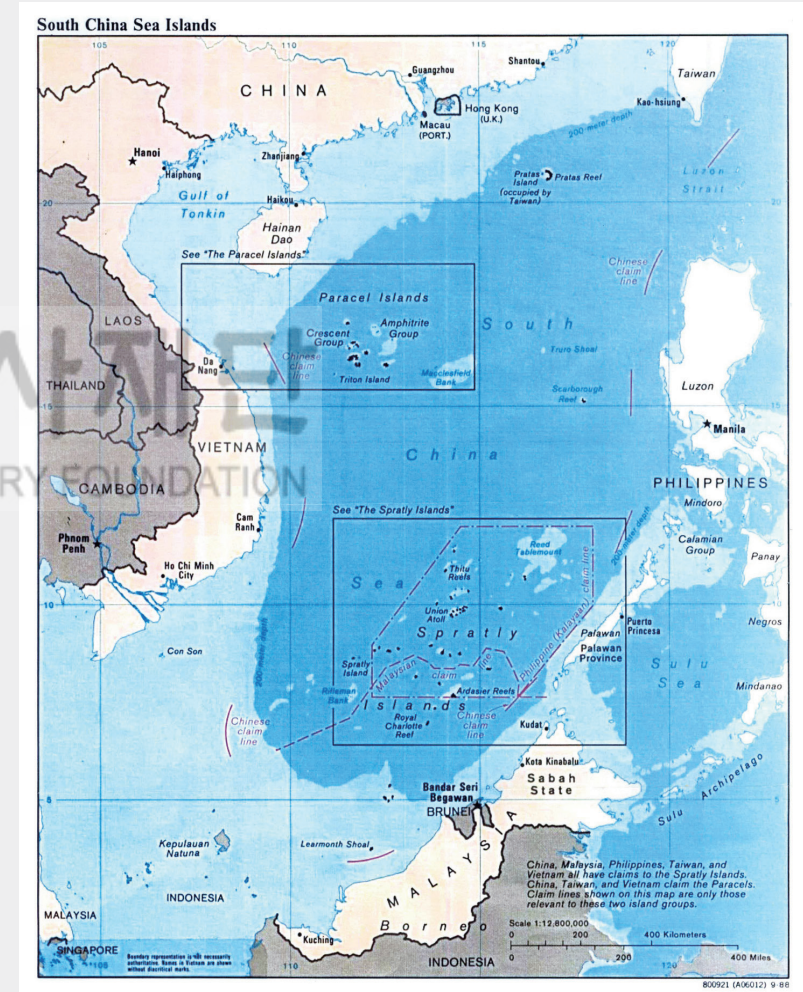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Biển Đông* 문제는 중국 측의 실제 행동들로 인해 매우 복잡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2012년 7월 중국은 ‘싼사시’를 푸럼도(호양사)에 설립했다. 2014년 5월에는 호양사군도의 지역에 속한 베트남의 영해에서 HD-981 광구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반대 물결이 확산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학자들

53 Frédéric Lasserre, 1996. *Le dragon et la mer: stratégies géopolitiques chinoises en mer de Chine du sud*, Harmattan, Montréal, pp. 220~229.

54 Eric Denécé, 1999, *op. cit.*, p. 197.

55 쓰영사군도는 역내 많은 국가의 선언 및 실제 행동에 따른 분쟁대상이다. 즉, 베트남(21개 섬에서 주권행사 중), 중국(9개 섬 점령), 필리핀(10개 섬), 말레이시아(7개 섬).

사이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중국이 1950년대부터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Biển Đông* 면적의 약 80%를 중국의 영해로 포함하는 ‘소 햇바닥 형태의 지도’ 또는 ‘U자형 지도’, ‘9단선 지도’, ‘9선 지도’로 불리는 자료는



〈그림 3〉 *Biển Đông*(South China Sea) 분쟁의 실상과 ‘U자 선’

출처: <http://www.utexas.edu/map/middle east and asia/schina sea 88.jpg>

Biển Đông에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소 헛바닥 형태의 선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은 ‘중국의 역사적인 수역권’이며 ‘논쟁이 필요 없는 영유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를 중국의 영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⁵⁶ 중국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관련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V. 맺음말

베트남과 중국 간 영토 주권과 국경선 확정 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문제로 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쟁 과정은 약 한 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모든 변화들과 역내 정세, 국제 정세에 따른 영향 요소들을 충분히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다. 양국의 육지와 해상의 국경선 문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 가지 문제 중 육지에서의 국경선과 북부만(통킹만)의 국경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그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호앙사와 썬잉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다. 이것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 안보, 안정에도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다.

56 2009년 5월 중국은 정식으로 소 헛바닥 형태의 지도를 UN에 제출하고 지도상에 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최초로 소 헛바닥 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은 9단선이 그어진 명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소 헛바닥 선은 역사적·법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국제 사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연속성을 갖는 주권행사, 거주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1982년도의 UN 해양법 협약은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수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해상분쟁에서 이와 같은 큰 면적의 ‘역사적 수역’을 인정한 전례가 없다.

국문 초록

중국과 베트남 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은 1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영토분쟁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는 단순한 경계에 관한 분쟁의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의 충돌과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분쟁상황은 육상에서는 1,400km에 이르며, 해상경계는 1887년과 1895년에 프랑스와 중국 간에 이미 협약이 체결된 상황임에도 통킹만, 파라셀군도 및 스프래틀리군도에서의 양국 간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은 조만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제어〉

베트남-중국 국경분쟁, 통킹만, 파라셀군도, 스프래틀리군도, 해양경계 확정

ABSTRACT

The Territorial Sino-Vietnamese Boundary Dispute, from 1885 to the Present

NGUYEN THI HANH

Professor,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Vietnam on their borders, both land and sea have been lasting for more than one century and remain still partly. Actually, the border issues exist in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But in the case of Vietnam and China, these boundary conflicts, particularly, numerous and complex, are both causes and effects of the conflicts and the tensions between both countries. These disputes encompass both land boundary which extends for 1,400km(more than 800 miles) and sea boundary settled once and for all by Conventions signed of long ago. Two Sino-French Conventions signed in 1887 and 1895. Concerning the maritime issues the gulf of Tonkin, the Paracels and Spratlys archipelagos, this question arose shortly after, complex, for which a solution hasn't been found yet. This study is devoted to the Sino-Vietnamese border disputes from 1885 to the present.

Keywords

Territorial boundary dispute, Gulf of Tonkin, Paracels and Spratlys archipelagos



동해상에서의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김수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의 영토였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서양인의 동해안 진출과 섬의 '발견', 잘못된 측량으로 '명칭 혼란'이 발생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옛 이름인 '다케시마[竹島]'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³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독도 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고래의 죽도(竹島), 송도(松島)에 관한 지식과 그 후에 구미에서 전해진 섬 이름이 혼재하여 있었습니다만, 그 외중에 송도를 멀리서 보았다고 하는 일본인이 그 섬의 개척을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섬 이름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1880년(메이지 13) 현지 조사를 하고 동 청원으로서 송도라고 칭해지는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했습니다.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인이 독도의 옛 이름인 송도(松島)라는 이름으로 '송도개척원'을 청원하자(1876), 일본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1880년 군함 아마기(天城)를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송도가 울릉도임을 확인했고 독도의 명칭은 1905년 편입 당시 울릉도의 옛 이름인 다케시마[竹島]를 전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⁵

이 주장을 얼핏 들으면 동해상에 수십 개의 도서들이 즐비하여 송도와 죽도(竹島)의 구별이 어려웠다는 견해로 들리지만, 동해상에서는 두 섬만 존재할 뿐이다. 죽도는 울창한 숲이 있고 자원이 풍부한 울릉도로 조선 측에 가깝고, 송도는 쓸모없는 바위섬으로 울릉도의 부속섬이다.⁶ 이 두 섬의 명칭과 관계는 태정관 지령문(1877)을 비롯한 문서에 죽도와 송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두 섬의 지리적 정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송도개척원'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척지의 구별은 간단하다. 개척지의 대상은 울릉도 즉 죽도뿐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880년 조사로 '송도'가 울릉도

1. 머리말

근대 일본은 무주지 선점 법리에 따라 일본 주변 도서인 오가사하라제도[小笠原諸島](1876), 센카쿠열도[尖閣列島](1895),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1898), 오키다이트우지마[沖大東島](1900), 나카노도리시마[中ノ鳥島](1908),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1931) 등을 선점하였다.¹ 이 선점의 법적 절차는 무주지 발견

→ 자국민의 이주와 경제 활동 → 해당 도서의 귀속에 대한 확인·영토 편입 및 대하(貸下) 청원 → 각의 결정 → 고시 → 대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 현 고시 40호에 따른 독도 불법편입도 절차상으로는 이 선점 법리에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²

그동안 한·일 양국 연구자들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는가'라는 연구에 관심을 두고 과거 독도 인지의 문제를 주로 명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본 연구자들은 독도가 자국

1 국제법에서 무주지 선점 요건은 ① 선점의 대상이 무주지일 것, ② 영유의를 가지고 있을 것, ③ 선점 대상 토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것 등의 조건이 있다.塚本孝, 2000,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 中野徹也, 2012, 『1906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法的性質—「無主地先占」説をめぐって—』,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第2期, 島根縣竹島問題研究.

2 허영란, 2014, 『1905년 '각의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 17, 126쪽.

3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73; 배성준, 2002,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강만길, 1985, 「외국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문광사; 堀和生, 2008,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川上健三, 199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4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5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일본에서의 울릉도 명칭을 竹島, 독도를 松島로 표기한다.

6 『竹島考』(1828), 『竹島圖說』(19세기 초반), 『多氣甚麼襍誌』(1854), 『竹島雜誌』(1871) 등이 있다.

임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러한 '명칭 혼란'으로 야기된 독도의 '명칭 변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전제 조건이 되었고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본 연구는 섬 '발견'과 '명칭 변경'을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를 불명확한 섬으로 둔갑시켜 불법적 침탈을 기도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 논리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은 '송도개척원'을 계기로 1878년 울릉도를 조사한 후 울릉도에 독도의 옛 명칭 송도를 붙이고, 독도를 서양식 명칭 리앙코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해 두 섬을 소속 불명확한 섬으로 둔갑시켰다.⁷ 그리고 대한제국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선포하여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라고 선언하자 일본 어민이 어로 활동 중 양코도(ヤンコ島)를 '발견'했다면서 이 섬은 소속 불명확한 섬이라고 유포하였다.

이렇게 근대 일본은 동해상의 섬들을 명칭 변경하고 소속 불명확한 섬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이용하여 불법 침탈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1878년 울릉도와 독도가 '발견'과 '명칭 변경'의 선점 대상이 되어 결국 러시아와의 결전을 배경으로 독도가 불법 침탈된 사실을 선점 법리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II. '송도개척원'과 일본 외무성의 송도 비정 논란

1840년경 시베리아로 진출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해상에 위치한 섬과 항구를 부동항 설치 지점으로 물색하였다. 러시아 군함 팔라호는 대마도에서 두만강 입구에 이르기까지 한국 동해안을 샅샅이 탐사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57)를 제작하였다. 러시아 해군성은 이 지도를 1862년, 1868년, 1882년 재차 증보 발행하면서 울릉도 독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다.⁸

7 이 당시 울릉도 침입이 성공하여 선점의 법리인 '실제 점유'에 따른 국가 행위인 '지속적인 소유의 의사'가 지속되었다면 울릉도는 일본 땅 松島가 되었을 것이다(박배근,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영토해양연구』 6, 55쪽).

8 심기재, 1998, 「근대 일본인의 조선인식」, 『일본학보』 40, 258쪽.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동해안 조사와 지도 발행은 러시아의 위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1869년 12월 사다 하쿠보(佐田白芽),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러시아의 동태를 파악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전말 등 총 13개의 항목을 조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⁹ 이 외무성 관리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이유 등을 조사하면서 동해안 중앙에 위치한 울릉도가 빈 섬이라고 보고하였다.¹⁰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를 탐지하였고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역사무소 설치건으로 파견된 영사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도 울릉도를 지나면서 러시아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자 동년 7월 일본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가 '송도개척지(松島開拓之議)'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였다.¹¹ 무토 헤이가쿠는¹²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고가면서 바라본 송도는 "작은 섬이긴 하나 장차 황국에 도움이 될 만한 섬으로서, 남쪽에 있는 오가사와라 섬보다는 한층 더 주의해야 할 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없고 한 필지의 경작지도 없습니다. 자연히 외국인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감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벌목하여 선박에 싣고 간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고 하며 이 섬을 러시아인들이 개척하고 있으며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송도개척원'을 제출한다고 설명하였다.¹³

그리고 송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일본)에 속한 섬

9 사다 하쿠보가 1870년 외무성을 통해 태정관에 보낸 建白書에서도 조선이 러시아 등에 정벌당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잃어서 우리의 이빨이 반드시 시러질 것"이라고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경계하고 있었다(김호동, 2011,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과 조선의 대응」, 『독도연구』 10, 123쪽).

10 「朝鮮國交濟始末內探書-竹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1870).

11 北澤正誠, 『竹島考證』(정명미 역, 2006, 『죽도고증』, 동북아역사재단). 이 연구에서는 정명미가 번역한 번역본을 사용하였고 각 주 인용은 번역본 인용이다.

12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가 1875년 시찰 가기 4~5년 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했던 자로 미치노쿠 시라카와(陸奥 白川) 출신이다. 그는 막부 측 아베 분고노가미(阿府豊後守)의 옛 신하로 명치유신 때 막부 편에 참여한다. 무진전쟁(戊辰戰爭: 1868~69)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양학에 뜻을 두고 북해도 하코다테[函館]에 갔다가 독일 포경선의 선원이 되어 북해도 근해를 왕래하였는데 일을 심하게 시키고 식사도 주지 않아 마침 배가 사할린에 정박하자 하선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조선어와 러시아어를 배웠고, 일본인 가사노래(笠野)라는 자가 러시아 선박을 3천 원에 빌려 운송도 하고 소규모의 일·러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되었다. 그는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 사무관 사와다 세와키(瀬脇壽人)와 함께 일본에 돌아와 외무성에 고용되었고 나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무역사무소에 전임이 되었다(구양근, 1997,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瀬脇壽人と 外國人顧問 金麟昇」, 『한일관계사연구』 7, 131~133쪽).

13 「竹島考證」, 325~340쪽.

으로서 일본 지도에는 일본 영역 안에 그려져 있는 일본 땅”¹⁴이라고 하면서 ‘일본 땅’ 송도를 러시아가 점령하기 전에 개척하자고 건의하였다. 그가 청원한 ‘송도개척원’은 ‘일본 땅’ 송도를 차용한 것으로 송도는 “일본 땅에 가깝고 예로부터 우리나라(일본)에 속한 섬으로서 일본 지도에도 일본 영역 안에 그려져 있는 일본 땅이다”, “조선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느 쪽에서 더 가깝고 어느 쪽에서 더 먼지를 논하여 일본의 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송도개척원’의 송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 하지만 개척 대상지는 울릉도였다.

무토 헤이가쿠가 차용한 ‘일본 땅’ 송도는 일본 산음(山陰) 지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구전이나 민간 서적에 기록된 것이다. 여기에는 죽도와 죽도에 서 40리 떨어진 울릉산, 그리고 ‘일본 땅’ 송도라는 3개의 섬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죽도는 조선에게 빼앗긴 섬으로 회복할 영토, 송도는 일본 땅,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었다. 그러나 1854년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는 『다케시마잡지(多氣甚麼襍誌)』에서 ‘오키국(隱岐國) 송도’의 설은 매우 의심스럽고 동해상에는 죽도와 송도뿐이라고 기술하였다. 이후 『다케시마잡지』가 1871년 동경 청산당(靑山堂)에서 『죽도잡지(竹島雜誌)』로 개정, 출판되면서 죽도와 송도 두 섬이 알려졌다.¹⁶

‘송도개척원’을 청원한 무토 헤이가쿠는 1870년경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한 일본인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였고 한국인과 의형제를 맺고 있었고 일본 영사관 설립에 관여할 정도로 정세에 밝았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그가 영사관 촉탁 직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1875년 10월 15일 나가사키(長崎) 경유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다시 Nikolisk(吹風)까지 시찰하는 96원 50전의 여행경비 중 무토 헤이가쿠의 2개월분의 봉급 4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⁷ 그리고 1877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세와키 히사토가 일본으로 잠시 귀국하자 사무를 위임받고 있었다.¹⁸

무토 헤이가쿠는 1876년 7월 외무성에 ‘송도개척

원’을 제출하였고 1877년 5월 6일 다시 ‘송도개척지건백(松島開拓之建白)’을 건의하였다. 여기서도 그는 러시아의 아시아 병탄 계획을 강조하면서 허가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섬을 개척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소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차하면 이 항구로 항해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섬에 대해 알고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따져보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4월 중에 러시아의 배가 그 섬의 둘레를 측량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 섬에 주목하고 제일 먼저 개척하고자 하는 뜻에서였을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가 나라를 넓히고 아시아를 병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시 그 섬을 개척하고 사람을 옮겨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섬을 개척하지 않고 그대로 대버려두면 개척에 착수할 기회를 잃어 아마도 외국인 소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¹⁹

무토 헤이가쿠는 러시아가 1876년 섬의 둘레를 측정했으며 개척하려고 한다는 위기설을 조장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개척에 착수하면 후회해도 소용 없고 섬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서둘러 개척할 것을 청원한 것이다. 영사관 직원으로 활동한 무토는 1876년과 1877년 두 번이나 ‘송도개척원’을 청원하면서 러시아가 울릉도를 점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개척건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울릉도 침탈을 숨기기 위해 지리적 정보에 무지한 상인 무토가 ‘송도개척원’을 청원했다고 주장했다. 가와카미는 무토가 송도라는 도명을 안 것은 “블라다보스토크의 재주 미국인 코펠 씨한테 얻은 지식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구미 지도에는 시볼트 이후 다줄렛을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으므로 송도는 울릉도이며 죽도는 구미 지도에 있던 아르고노트로 이해된다”고 서양 지도의 영향으로 ‘송도개척원’이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

14 『竹島考證』, 341쪽.

15 『竹島考證』, 342~343쪽.

16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4, 『독도 관계 일본 고문서 1』, 경상북도.

17 日本外交史料館, 『外務省外國人願入一件』附契約書, 當省雇 武藤平學.

18 加藤九祚, 1972, 『浦潮物語』, 瀨脇壽人とそのウラジボストク, 『ユーラシア』季刊 4, 63쪽.

19 『竹島考證』, 419~443쪽.

만 무토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영사관 촉탁직원이며 개척지 울릉도가 일본과 가까운 송도, '일본 땅' 송도라고 건의하고 있었으므로 가와카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섬은 리앙쿠르도가 된다. 그러나 그는 '일본 땅' 송도라고 하면서 '송도개척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무토 헤이가쿠가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을 차용해 '송도개척원'을 제출하자 외무성 내에서는 논의가 발생하였고 논의 내용은 『죽도고증(竹島考證)』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죽도고증』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송도개척원'을 심사 숙고하지는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2도2명(二島二名)을 거론하며 「송도개척원 안건 1, 2」를 개진했다. 「안건 1」은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며 다 줄렛이고 일본에서 칭하는 송도는 호르넷 섬, 즉 독도다. 호르넷 섬은 일본에 속하며 각국의 어떤 지도에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넷 섬은 일본 영토가 확실하다. 하지만 확증이 없으므로 시마네 현에 조회하고 배를 보내 조사한 후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²⁰ 「안건 2」는 송도와 죽도는 일도이명(一島二名)이다. 외국 지도를 보면 송도와 죽도는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송도가 일본 땅이므로 죽도도 일본 땅이다. 일본인들은 송도와 죽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고 있다.²¹ 「안건 1, 2」를 제시한 와타나베 히로모토는 송도가 일본 땅이지만 만일 "조선의 것이라고 해도 보호해야 한다", "조선에 귀속시켜버리면 또 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송도개척원'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척 대상자인 송도가 울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송도개척원'에 숨은 의미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1877년 4월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

20 「제11호 송도에 대한 안건 1」-죽도라는 것은 조선의 울릉도로서 막부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안일만을 도모하여 결국엔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송도라는 것이 죽도라면 저들에게 속하는 것이고 만일 죽도 외에 송도라는 섬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이 일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어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까지 가는 뱃길과 시모노세키에서 이와미, 아비나, 호키, 오키를 지나 저 중요한 원산항으로 가는 뱃길에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간주되어 이 근방에는 영국과 러시아 함선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라면 다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의 나라 것이라고 해도 역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竹島考證』, 355~361쪽).

21 「제12호 송도에 대한 안건 2」-우리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말해본다면 구 막부가 일이 시끄럽게 되는 것이 싫어서 단지 그 지리적 원근만을 따져서 그들의 지도에 있는 울릉도라 하여 죽도를 조선에 주었으나 송도와 죽도는 두 섬이며 송도는 죽도보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우므로 일본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 역시 조선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섬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선에 귀속시켜버리면 또 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竹島考證』, 363~377쪽).

치(田邊太一)는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 우리 영역에 속해 있지 않으니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²²고 기각하였고, 무토 헤이가쿠에게 통보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무토 헤이가쿠는 1877년 5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송도개척지건백」을 제출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사이토 시지로베(齊藤七郎兵衛) 등도 무토의 '송도개척원'을 지원할 요량으로 1878년 8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영사관을 경유해 외무성에 '송도개척원'을 제출하였다.²³ 이후 외무성 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 제21호 「송도 조사의 가부에 대한 건」, 「제22호 기록국장 渡邊洪基의 의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죽도고증』에 따르면 외무성 내의 개척 논의는 "갑·을·병·정의 논의가 분분하여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조사하지는 말도 그대로 중단"되었고 1880년 9월 13일 군함 아마기의 실지 조사로 송도가 울릉도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기각하였다고 하였다.²⁴

그러나 『죽도고증』의 내용과 달리 1878년 6월 군함 아마기는 울릉도로 파견되어 해안을 측량하고 있었다. 군함 아마기는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는 조일수호조규 제7항에 의거하여 송도를 정탐하였고²⁵ 이것을

『조선국동해안약기(朝鮮國東海岸略記)』에 기록하였다.²⁶ 이때 군함 아마기는 울릉도 조사 결과를 '松嶋'라는 표제로 보고하였다.²⁷ 이때부터 해군성은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명칭 변경하였다. '송도개척원' 논의 과정에서 해군성은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명칭 변경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松島

이 섬은 바다 가운데 하나의 고도(孤島)로써 우리 오키국(隱岐國) 오키시마(神島)에서 북동 2분의 1, 동 134리(里), 나가토국(長門國) 쓰노시마(角島)에서 북 2분의 1, 동 185리, 부산포에서 북서 4분의 3, 북 165리의 지점에 있다.

22 「공신국장 田邊太一籤紙」, 『竹島考證』, 397쪽.

23 『竹島考證』, 419~475쪽.

24 『竹島考證』, 501~513쪽.

25 조선국의 연해 도서 암초를 종전에 심사하지 않아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국의 항해자는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한다는 것에 준하여 그 위치 淺深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편제하여 양국 선객이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항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 제7관; 川上健三, 1996, 앞의 책, 41쪽).

26 신용하, 199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74~175쪽.

27 『水路雜誌』 제16호, 1878년 조사, 1879년 편집, 1883년 발간.

전도 암석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그리고 수목이 울창하여 주위는 절벽이 많고 다만 남동면에 약간의 평탄한 곳이 있다(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여 현지인이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어선을 만드는 것을 보았음). 다른 해안은 작은 배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 없는 것 같다. 동쪽에 하나의 작은 섬이 있고 한편 기암괴석이 섬을 둘러싸고 별처럼 섬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 함대가 향해 중에 이 섬 정상の高도(高度)를 재어보니 2,391척(尺)이었다.²⁸

1878년 군함 아마기는 송도가 '오키국에서 동으로 134리(1리=1.853Km), 나가토국 쓰노시마에서 동으로 185리, 부산포로부터 북으로 165리'라고 비정하였다. 송도가 울릉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죽도고증』을 편찬한 외무성은 1878년 군함 아마기의 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가와카미 겐조는 1878년 군함 아마기가 송도에 갔으나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으며 송도가 울릉도라는 중지부를 찍은 것은 1880년 9월이라고 하였다.²⁹ 이 사실은 뒤에 후술하겠지만 외무성이 '송도개척원'을 보류한 상황에서 일본 해군성은 울릉도를 송도로 명칭 변경하고 울릉도로 침입하였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궁지에 몰린 일본 외무성이 아마기의 조사로 1880년 9월에 알게 되었다고 변명했던 것이다.

III.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야키의 울릉도 선점 계획

1878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 세와키 히사토가 무토 헤이가쿠가 청원한 '송도개척원'을 허가해줄 것을 외무성에 청원했을 때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는 주러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시베리아 횡단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다. 이때 에노모토는 세와키로부터 '송도개척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듣게 된다. 1878년 세와키가 귀국 도중 배에서 사망하자 에노모토는 자신의 처남 지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를 울릉도로 보내 사업 준비를 시

28 『水路雜誌』 제16호, 1878년 조사, 1879년 편집, 1883년 발간.

29 川上健三, 1996, 앞의 책, 40쪽.

작하였고 무기 상인 오쿠라쿠미(大倉組)를 동원하여 울릉도 개척 명령을 내렸다.³⁰ 국가의 공식적인 개척이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한 소속 불명확한 섬의 개척이었다.³¹

1879년 아마구치 현(山口縣) 소속 별목 인부와 동현(同縣) 무카쓰쿠(向津具) 반도 오우라(大浦) 해녀들이 울릉도 개척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13년(1880) 도쿄의 오쿠라구미(大倉組)와 짜고 오쿠라도 많은 자금을 출자하여 군함 이와키(盤城)호에 인부나 직공 등을 태우고 도항했다. 군함을 차용하는 것은 에노모토가 다키노 함장에게 부탁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³²

30 에노모토의 처남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옛 육군 군의관 林紀의 동생), 도쿄부 평민 지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이와사키 [岩崎] 아무개 등이 발의하고 메이지 11년(1878)에 먼저 시험적으로 지카마쓰 마쓰지로가 기선 다카오마루(高尾丸)에 승선하여 울릉도로 건너갔다. 귀국한 뒤 다시 도항하여 벌목, 어렵에 종사한 것은 12년(1879)의 일이라고 한다(山本修身, 『復命書』, 『明治17年蔚陵島一件』).

31 1881년 일본인 울릉도 침입사건은 일본 외교문서와 아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 『復命書』, 『明治17年蔚陵島一件』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재일학자 박병섭 씨가 발굴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박병섭, 2010,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の始まり』,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0, 2009).

32 十三年二至り東京大倉組ト相謀リ, 同組ヨリモ多分ノ資本金ヲ出シ軍艦磐城号ヲ以テ人夫職工等ヲ渡島セシム 右軍艦之借用セシ事ニ付テハ榎本ヨリ瀧野艦長ヘ依托ヲナセシト云フ(山本修身, 『復命書』, 『明治17年蔚陵島一件』).

33 上野久, 1994, 『メキシコ榎本植民』, 中公新書, 23~24쪽.

에노모토는 1836년 에도(江戸) 오카치마치(御徒町)에서 태어나 나가사키(長崎) 해군연습소에서 네덜란드어와 해운술을 공부하고 후에 막부 유학생으로 네덜란드로 유학하였다. 여기서 영어, 독어를 시작으로 해운술, 화학, 국제법을 배워 귀국하였다. 특히 만국공법 학습에는 열의를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바다의 국제법과 외교』를 번역 주해하였고 『만국해율전서(萬國海律全書)』라는 책을 남겼다. 1874년 해군 중장 겸 특명전권공사로서 러시아에 부임, 다음해에는 가라프토, 지시마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는 여기서도 만국공법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1878년 시베리아를 마차로 횡단하고 외무성의 요직을 겸임하면서 지학협회를 설립하였다.³³

이렇게 만국공법의 제일인자로 알려진 에노모토는 무인도라고 여겨지는 울릉도에 민간인의 거주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인을 군함으로 실어 날라 선점 범리를 노렸다. 만국공법상 그곳이 무주지라면 3년이 상 그곳에 살고 그 거주자의 국가가 영유를 선언하면

그 국가의 영토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면 상대적 우월에 따라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에노모토는 '일본 땅' 송도라면 무주지 선점 법리 적용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국' 송도, '1869년 세움', '이와사키 다다이키[岩崎忠照] 세움'이라고 쓰인 '大日本國松島榎谷 岩崎忠照, 明治 2年(1869)'이라는 표목을 울릉도에 세웠다.³⁴

그러나 1881년 울릉도를 수토하던 수토사가 무단 벌목을 하던 일본인 7명을 발견하였다고 동년 5월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林翰洙)가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는 일본인의 불법적인 벌목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는 것으로 서계를 보내어 항의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울릉도를 더 이상 빈 섬으로 둘 수 없으므로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圭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건의는 동년 5월 23일 윤허되었고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은 서계를 보내 일본인 침입을 항의하였다.³⁵

1882년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한 이규원은 울릉도 벌목에 중사한 야마구치 현(山口縣) 아사히구미[旭組] 부대표(副頭取) 우치다 히사나가[内田尙長]를 심문하였는데 일본인들은 만국공법을 들어서 대응하였다.

조선 관원: 이 섬은 우리나라의 영지이므로 외국인 등은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륙하고 그 위에 수목 등을 벌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명령인가, 아니면 모르고 도항했는가?

일본인: 일본 정부의 명령은 아니지만 만국공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발견한 자가 3년간 그 땅에 주거하면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목을 벌채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인: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귀국 정부에 확인해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두 다 이 섬을 떠나고 장래 도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굳이 귀국 정부에 확인하는

34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 「복명서」에 따르면 이 표목은 1881년 10월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복명서」에 기록된 표목은 '大日本國松島榎谷 岩崎忠照, 기원 25년 명치 13년(1880)'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규원이 발견한 표목에는 1868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35 송병기, 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134~136쪽.

번거로움을 없앤다.³⁶

이규원 검찰사가 심문하자 일본인 우치다는 무인도 발견자가 3년간 그 땅에 산다면 만국공법으로 거주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만국공법의 이름조차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 우치다가 이러한 주장으로 되받아친 것은 놀랄 만하다. 이러한 지식을 우치다가 가진 것은 에노모토의 영향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이렇게 민간인을 앞세운 울릉도 '선점'에는 해군 군함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1881년 5월 조선 정부에 발각되고 외교문제로 확대되자 에노모토 개척단은 서둘러 후퇴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비공개적으로 처리하였다. 울릉도에 침입한 모든 일본인들은 무죄 석방되었으며 에노모토는 주청 특명전권공사, 체신대신, 농상공부대신, 문부대신, 추밀원 고문관 등을 역임하고 공작의 지위를 받았다.

우리 군함이 일본 국기를 달고 외국 영토의 산림에 침입해 목재를 벌채한 것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공판에 부쳐 모든 것이 알게 되면 조선 정부는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말로 조선 정부에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다.³⁸

공개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조선 정부의 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은 『죽도고증』을 편찬하여 개척원 보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명 혼란 때문에 민간인들이 침입한 것으로 덮었다. 그리고 도명이 혼란스러웠다는 『죽도고증』의 외무성 기록물은 현재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竹島]' 인지의 명칭 혼란의 근거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36 박병섭, 앞의 논문, 208~209쪽.

37 박병섭, 위의 논문, 209쪽.

38 外務省記録3824, 「日本國蔚陵島 犯禁渡航 日本人引戻處分一件」, 「蔚陵島出張復命書」.

IV. 소속 불명확한 '양코도' 발견과 독도 편입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선포되고 러시아가 울릉도를 점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흑룡회 『회보(會報)』(1901. 3)를 비롯한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창립한 『지학잡지(地學雜誌)』(1901. 5)에는 '영국 지도에도 없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섬 양코도' 발견 기사가 등장하였고 이 섬을 '한일 어민들은 양코도라고 부른다'는 기술이 나타났다. 이 섬은 일본 어민이 어로 활동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영국 지도에도 없고 한국인이 양코도라고 부르는 소속 불명확한 섬이었다. 그리고 '발견된 양코도'라고 쓰인 『지학잡지』 기사 옆에 미국 상선이 마닐라 향해 중 북위 2도 4분, 동경 135도 35분에 위치한 섬을 발견하였고 미국이 군함을 파견하여 국기를 세워 미국 영토로 삼았다는 기사도 함께 실고 있다. 섬 '발견'에 따른 영토 편입을 시사하고 있다.³⁹

이 기사를 누가 발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양코도' 발견은 선점의 논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독도를 소속 불명확한 양코도로 그 명칭을 조작한 것이다.

지난 4월 중순 도쿄 발행의 각 신문은 일본해 중에 한 도서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였다. 그 말에 따르면 한국 울릉도에서 동남 30리, 우리 일본국 오키에서 서북쪽으로 거의 같은 거리 떨어진 해상에 아직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의 도서를 발견하였다. 이 섬은 아직 우리나라의 해도에는 실리지 않고 영국의 해도에도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 섬의 존재는 확실하며 지금도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은 맑은 날 산의 높은 곳에서 동남을 바라보면 아득히 섬 윤곽을 확인한다고 한다.⁴⁰

1901년 발견된 '양코도'는 일본 잠수기 어선 어민이 울릉도 근해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영국 해도와 일본 해도에도 없지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

하고 있다. 또한 흑룡회 간부 구즈우 슈스케(藪生修亮)가 발신한 기록에 '일본해 중 미발견의 한 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조선 판도에 속하지 않는 미발견의 섬', '양코도'가 기술되었다.⁴¹

이러한 양코도 발견 기록을 근거로 울릉도인의 독도 인지(認知)를 연구한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1900년 전후 시기의 울릉도인들은 이 섬을 양코도라고 불렀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당시 한국인들의 독도 어업을 알려질 정도까지의 규모이지 않았던가 또는 어로 활동이 없었던가 둘 중 하나라고 하며 '이 섬의 활용에 먼저 착수한 것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무주지 선점을 노려 유포된 '양코도' 발견 기록은 지금도 일본인 학자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1900년대 새롭게 발견된 '양코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울릉도에서 30리(120Km, 1리=40Km) 그리고 일본 오키도에서 거의 같은 거리 30리 지점에 있다. 실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독도에서 오키도까지의 거리는 157.5km로 울릉도와 오키도까지의 총 거리는 247.4km다. 이 두 섬 사이의 중간 거리인 약 120km에 양코도가 있다고 위치를 조작했다. 둘째, 양코도는 "연안의 굴곡이 매우 심하고 어선이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 좋다"고 지형적 설명을 조작하였다. 실제 독도는 서도의 남동해안과 동도의 남측해안에 파식대가 발달하여 해안은 가파르고 육상부분은 급경사로 정박할 항구가 없다. 또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강수에 따른 토사 유출이 심하여 조급이라고 파랑이 일면 접안이 어렵고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어선 정박이 어려운 곳이다.⁴⁴ 하지만 양코도는 어선이 정박하고 풍랑을 피하기 좋은 항구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코도 발견 기록은 이와나가 시게카(岩永重華)의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1904),⁴⁵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41 『日本海中未発見の一島』, 『雜報』, 『會報』 제1집, 1901. 3. 10, 흑룡회(內田良平文書研究會, 1992, 『黑龍會關係資料集』 1, 柏書房, 107~108쪽).

42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57~258쪽.

43 김수희, 2013,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해양영토연구』 5.

44 현재 동도 남서측에 설치된 주접안 시설에는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곳도 조그만 파랑이 일면 하역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독도 접안은 위험하다(해양수산부, 2000,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 708쪽).

45 [...] (양코도는 울릉도 및 우리 오키도의 중간 30리의 해상에 있으며 전도에 사는 사람은 없으며 연안 정박에 편리하지만 [...] (岩永重華, 1904, 『最新韓國實業指針』, 實文館, 294쪽).

39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雜誌』, Vol. 13, No. 5, 『雜報』欄(1901. 5).

40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雜誌』, Vol. 13, No. 5, 『雜報』欄(1901. 5).

(1905)⁴⁶등 조선 정세나 조선 지리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자들이 서술한 지리책에서 소개되었다. 이 책 서문에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에게 영토편입원을 청원하도록 지시한 농상공부 장관 마키 나옴사(牧朴眞)와 외무성 정부국장 아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등의 추천사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05년 한국 정부 재정고문 본부가 발행한 『한국수산행정경제(韓國水産行政及經濟)』에서도 양코도를 일본인 어업근거지 건설지로 추천되고 있다.

울릉도 섬 중에 선박을 정박할 항만이 부족하다.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에 무인도가 있는데 '양코도'라고 한다. 연안의 굴곡이 많아 어선이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기에 좋다.⁴⁷

46 본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리에 우리 오키도와의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무인의 한 섬이 있다. 일반에서 이것을 양코도라고 칭한다. 길이는 거의 10정 남짓하고 연안의 굴곡이 대단히 많아서 어선을 정박시키기에 좋다(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3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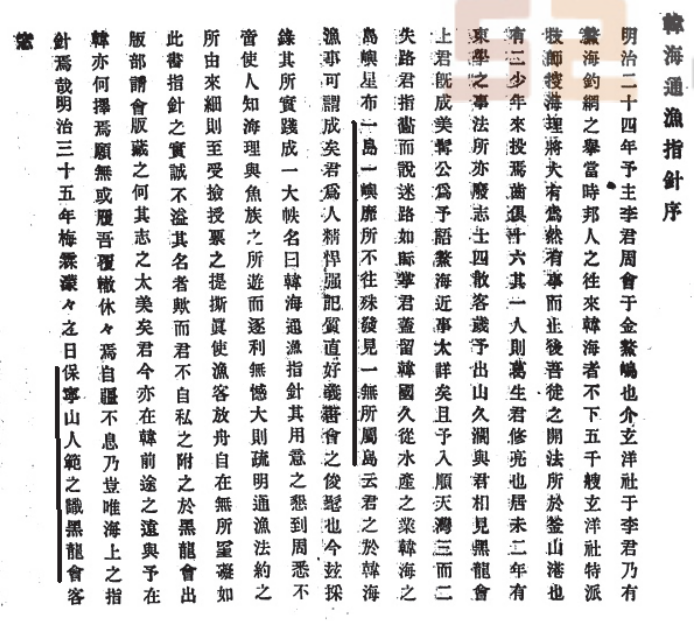
47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3, 『韓國水産行政及經濟』, 『財務週報』 25號 附錄, 80쪽.

한국 정부 재정고문 본부는 양코도가 어선 정박이 가능하고 풍랑을 피하기 좋은 근거지라고 소개하였다. 1900년 러시아의 울릉도 점거와 함께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른 울릉도 통치체제가 확립되자 흑룡회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독도 침탈을 도모하면서 소속이 불명확한 양코도 발견설을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양코도 발견설을 발신한 구즈우 슈스케가 쓴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서문에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소속이 없는 섬'을 발견한 구즈우 슈스케의 노련한 수법을 치하하였다.⁴⁸ 이 책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였고 독도 즉 양코도가 소속 불명확한 무주지라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1900년대 '양코도' 발견 기록물을 통해 독도는 소속 불명확한 섬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수산국장 마키 나옴사(牧朴眞)는 1899년 러시아 어업진출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일본인 어업단체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를 창설하면서 조선 어업에 많은 전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구즈우 슈스케를 만나게 되었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양코도

발견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⁴⁹ 이러한 인연으로 마키 나옴사 수산국장은 구즈우 슈스케의 저서 『한해통어지침』 서문을 써주었고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독도가 무주지라고 알려주며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를 소개하였다.⁵⁰

이와 같이 일본은 동해상에서 섬 '발견'과 '명칭 변경'을 이용하여 독도를 소속 불명확한 섬으로 둔갑시켜 무주지 선점 법리의 대상으로 바꾼 다음 민간인을 동원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다.



(사진 1) 다케다 한시(武田範之)가 쓴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 서문

48 客歲 予出山 久聞奧與君相見黑龍會上 君既成美髯公 爲予語鰲海 近事太詳矣 且予入順天灣 三而二失路 君指畫而說迷路如脈掌 君蓋留韓國 久從水産之業 韓海之島嶼星布 一島一嶼 靡所不往 殊發見一 無所屬島云 君之於韓海漁事 可謂成矣(萬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서문, 1쪽).

49 김수희, 2011, 『양코도'와 독도무주지설』, 『독도연구』 11, 111~114쪽.

50 기모쓰키 가네유키는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동도(독도-주)의 소속은 확고한 徵證은 없고 특히 한·일 양 본국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10리 가깝고 덧붙이면 일본인으로 하여 이 섬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일본령에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해군은 이 기회에 어민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하려고 한 것이다.

V. 맺음말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직후 일본은 '송도개척원' 청원을 계기로 울릉도를 '일본 땅' 송도로 명칭 변경하고 울릉도 침탈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901년 흑룡회를 비롯한 일본 극우단체들은 랑코도가 변형된 양코도를 등장시켜 소속 불명확한, 새로이 발견된 섬이라고 유포하였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가 울릉도의 이름이 되었고 울릉도의 옛 이름이 현재 '다케시마'로 불리게 된 경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행한 침탈 역사를 은폐하기 위해 서양인들의 잘못된 측량과 네덜란드 데지마 의사 시볼트가 만든 지도의 영향으로 울릉도가 송도로 기재되어 명칭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해군성은 1878년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코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점을 노려 군함으로 민간인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1881년 거주실적을 만들기 전에 수도사에게 발각되자 외무성 관리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분로쿠[文祿] 이래(1592~1614)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빈 땅[空地]에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⁵¹고 선점의 법리로 획득하지 못한 울릉도를 끝내 아쉬워하였다.

이후 일본은 동해상의 조선 영토를 지속적으로 넘보면서 또다시 '발견'과 '명칭 변경'을 시도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선포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하자 '리앙코르 록스'와 비슷한 이름인 '양코도'를 발견하였다고 유포하였다. 이 일급 정보는 정계와 학계, 언론에 유포되어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고 조선 진출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관료나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소속 불명확한 '양코도' 발견설을 수용하고 유포하였다.

그리고 일본 관료들은 소속 불분명한 섬으로 조작한 '랑코도'를 강제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를 이용해 비밀히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 각의 결정에서 독도는 울릉도의 옛 이

름인 '다케시마[竹島]'로 명명되었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1905. 2. 22)가 관내에 고시되었다. 이렇게 근대 일본은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명칭을 혼란시키거나 새로운 섬 발견을 이용하여 소속 불명확한 섬으로 조작하였다.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소속 불명확한 섬을 등장시켜 선점 법리를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51 『竹島考証』中卷.

국문 초록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松島)가 왜 울릉도의 옛 이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는 섬 '발견'과 '명칭 변경'이라는 무주지 선점 논리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으로 1876년 '송도개척원'이 제출되자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코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명칭을 변경한 후 군함을 동원해 일본인을 실어 날랐다. 소속 불명확한 송도의 선점을 도모하였지만 1881년 수토사에게 발각됨으로써 울릉도 선점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후 일본은 동해상의 조선 영토를 지속적으로 넘보면서 또다시 '발견'과 '명칭 변경'을 시도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0호가 반포되자 일본은 '양코도'를 발견했다고 유포하였다. 이 섬은 영국 지도나 일본 지도에도 없는 소속이 불명확한 섬으로 일본 어민이 어로 활동 중 발견한 섬이라는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서 일본은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독도를 소속 불명의 섬으로 단정하고 '다케시마'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렇게 동해상에 위치한 독도는 무주지 선점 법리의 침탈 대상이 되어 1905년 러일전쟁기 비밀리에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명칭 변경, 발견, 선점, 죽도(竹島), 송도(松島), 송도개척원, 양코도

ABSTRACT

Island 'Discovery' and 'Name Change' Adopted by 'Terra Nullius' Legal Principle in East Sea

Kim, Suhee
Yeungnam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Homepage of Japan MOFA explained in detail about the name change of Dokdo from Songdo(Matsushima: 松島) to Jukdo(竹島: Takeshima) which has been called as Uleungdo and the logic of name change include Terra Nullius rule of island 'discovery' and 'name change'. Japan changed name of Ulleungdo to Japanese Terra Songdo(Matsushima: 松島), and name of Dokdo to Liancourt Rocks) and excluded from Korean territory. Also Japan tried to occupy the Ulleungdo islands under the rule of Terra Nullius and planted her people by warship but failed by detection from Korean inspector in 1881.

After the events, Japan continuously attempted to occupy the Korean islands trying 'Discovery' and 'Name Change' in East Sea. When Korean Empire declared Law #40 concerning Dokdo island in 1900, Japan propagated she found Yangkodo islands but not Liancourt Rocks. Japan announced this indistinct island was not listed on England map or Japan map which was discovered by Japanese fishers during fishery work. On January 28, 1905, Japan cabinet decided 'this island has no proof of occupying by other countries' and changed name Dokdo to 'Takeshima' as prior occupation of Terra Nullius. Dokdo in East Sea has been annexed by Japan illegally and secretly by Terra Nullius rule in 1905 during the Russo-Japan War.

Keywords

name change, discovery, prior occupation, Jukdo(竹島), Songdo(松島), petition of Songdo Exploration, Yangkodo

참고문헌

[1차 자료]

『多氣甚麼襍誌』, 『水路雜誌』, 『竹島考』, 『竹島考證』, 『竹島圖說』, 『竹島雜誌』
日本外交史料館, 『外務省外國人顧入一件』附契約書, 當省雇 武藤平學.

[한국어 문헌]

신용하, 199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강만길, 1985, 「외국 문헌상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문광사.
김수희, 2011, 「'양코도'와 독도무주지설」, 『독도연구』 11.
김수희, 2014,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김영수, 2009,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73.
김호동, 2011,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과 조선의 대응」, 『독도연구』 10.
박배근,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영토해양연구』 6.
배성준, 2002, 「울릉도 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허영란, 2003,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 『서울국제법연구』 10-1.
허영란, 2014, 「1905년 '각의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 17.

[일본어 문헌]

加藤九祚, 1972, 『浦潮物語』, 瀬協壽人とそのウラジボストク, 『ユーラシア』季刊 4.
葛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上野久, 1994, 『メキシコ榎本植民』, 中公新書.
岩永重華, 1904, 『最新韓國實業指針』, 寶文館.

田淵友彦, 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1905.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川上健三, 199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3, 『韓國水産行政及經濟』, 『財務週報』 25號 附錄.
堀和生, 2008,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中野徹也, 2012, 「1906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法の性質-「無主地先占」説をめぐって-」,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第2期 島根縣竹島問題研究.
塚本孝, 2000,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3.
「日本海中の一島嶼(ヤンコ)」, 『地学雜誌』, Vol. 13, No. 5, 「雜報」欄, 1901. 5.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일 해양영토 문제

김자영 국방정보본부 분석관*

I. 머리말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아태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부상으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져 미·중관계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중국의 부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한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의 추진에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중심축이다. 당면한 북한 문제와 잠재적인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강화된 안보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최악의 한·

일관계가 3년 가깝게 이어졌다. 여기에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행보까지 더해져 양국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악순환의 과정을 밟던 중 최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의 경색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강화를 위해 양국에 관계개선 압박을 지속해온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독도 문제 등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중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삼국 간 강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일 간 해양영토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처리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에 뿌리를 두고 있다.¹ 60년 전 미국이 내린 결정은 한·일 간 분쟁의 씨앗을 남겼고, 미국이 추구하는 재균형 정책에 결국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지난 60여 년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해온 샌프란시스코 체제(San Francisco System)를 강화하여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²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성공여부는 한·일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 간 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학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취하고 있는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이 재균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등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1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성립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미·소 대결, 대중 봉쇄를 위해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공산주의 진영과의 대결 차원으로 동아시아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미청산과 재무장 경향을 인정해주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는 김명섭, 2007,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의 변동과 한반도 평화체제』, 『안보학술논집』, 제18집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01쪽.

2 이수형, 2015,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9쪽.

* 본 논문은 국방정보본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집필자 개인의 학술적 견해입니다.

위해 적극적이고 대담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³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 즉 중국의 부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 일본의 해양영토 문제 중 독도에 대한 상대적인 전략적 중요성의 하락,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필요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 등은 한국에게는 어려운 외교적 도전을 제기하는 한편 일본과의 분쟁해결의 역사적 기회일 수도 있다.

II.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미·일 관계

2011년 후반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 정책 혹은 아시아 회귀전략(pivot strategy to Asia)은 중국의 부상과 아태지역에서 격화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재균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한편, 둘째, 미국의 긴축 재정에 따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의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를 의미한다.⁵ 따라서 미국은 재균형 정책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 및 동반자 관계국들에 더 많은 책임을 공유하도록 방위비 분담과 군사활동에서의 책임과 역할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 Brad Glosserman & Scott A. Snyder, 2015,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71~180.

4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15, *Pride and Prejudice—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Issue Report No. 23, pp. 19~24.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은 한국과의 독도 문제 외에도 중국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문제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가 있다. 센카쿠열도 문제는 최근 중국의 해양 팽창·가속전 개발과 함께 중·일 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중국의 견제를 막으려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 중국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2010년 사태 이후에는 미·일 안보조약 제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95/05/10 Daily Press Briefing <http://dosfan.lib.uic.edu/ERC/briefing/daily_briefings/1995/9505/950510db.html>. 더욱이 2015년 4월 개정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발표 시 “미·일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러·일 간 북방영토/쿠릴열도는 지구온난화로 북극해항로(the Northern Sea Route)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더욱 부각되고 있다.

5 이수형, 2015,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KINU 통일+』, Vol. 1, No. 2, 통일연구원, 74쪽.

동맹국 및 동반자 관계국들 간의 안보유대가 심화되어야 한다.⁶

재균형 정책에서 미국의 핵심이익은 ① 중국의 장거리 핵능력과 북한 핵무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위, ②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성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일전쟁과 같은 강대국 전쟁방지, ③ 동맹국의 안보유지, ④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또는 봉쇄, ⑤ 개방적 자유무역체제 확보, ⑥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⁷ 이러한 핵심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양자동맹 강화·현대화, ② 전략적 동반자 관계국의 관여 확대, ③ 예측가능한 안정된 포괄적 미·중관계, ④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에 미국의 유의미한 참여 확보, ⑤ 미국의 무역·경제전략의 지속을 추구하고 있다.⁸ 구체적 추진방법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태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협정을 추진하며, 중국과는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안보·군사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의 개념을 개발하고, 아태지역 전력을 증강하면서 동맹 활성화를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6 고봉준, 2014,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와 미국」,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42쪽.

7 Richard Fortaine and Kristin M. Lord, 2012, "Introduction: Debating America's Future,"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Center for a New America Century), p. 8.

8 이수형, 2015, 앞의 글, 77쪽.

9 2012년 후반기에 취임한 아베 수상은 한국이나 중국에게는 역사왜곡과 도서영유권 문제에서 도발을 일삼는 문제인물로 비추어졌지만, 아태지역에 대한 인식과 대응정책 측면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영준, 2015,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EAI일본논평』, 2015년 5호, 동아시아연구원, 1쪽.

안보·동맹 활성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다.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일본이다. 또한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한 국가도 일본이었다.⁹ 일본의 이러한 반응은 동북아 세력전이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요구하는 바가 군사적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균형 정책의 핵심(lynchpin)으로 두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와 서태평양에서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체제를 구

축하려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은 적어도 미·일동맹과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¹⁰ 핵심국가인 일본이 아베 총리 집권 후 강한 국수주의적 성향과 역사수정주의로 중국과 한국을 자극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고조로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에 차질을 주는 등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¹¹

한국이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지역안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침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¹² 따라서 일본의 해결되지 않는 해양영토 문제는 결국 미·일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쟁이 무력충돌 상황까지 갈 경우 동맹국인 미국은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¹³ 갈등을 관리하고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III. 한·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의 한계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일본과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이 다투고 있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尖閣列島/釣魚島)에 대한 문제와 달리, 독도 문제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서 중요한 핵심 동맹국 간의 분쟁이다. 또한 독도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력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의 민주주의국가 간 분쟁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담보국(security guaran-

10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일본 이외에 제3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 지역 및 국제안보질서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위한 협력까지 상호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개정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정책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2015년 7월 미·호 정례 연합훈련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등 미·일·호는 중국의 동·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1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 내 소수의 우익들이 주기적으로 역사와 영토 문제를 도발하는 데 대해 한국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일본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한국의 국내정치가 한·일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Brad Glosserman & Scott A. Snyder, 2015 참조.

12 백창재, 2015, 「동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대담한” 제안?」, 『아시아리뷰』,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84쪽.

13 다만, 조약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제 조약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와는 달리,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자국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의 즉각적 무력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고사키 우케루 저·양기호 역·김충식 해제,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독도·센카쿠열도·북방영토』, 메디치미디어, 167~171쪽.

tor)인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영토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교섭을 통해 양국이 평화적으로 윈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미국이 취한 그동안의 접근방식을 감안할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중개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섭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세 가지 측면의 제약조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양자적 관계에서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측면은 분쟁당사국인 한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분쟁을 지속·강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 불과 5년 전 1905년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였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의 한국 병합과 독도의 편입, 두 역사적 사건을 연관 지어 인식한다. 반면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러시아와 2개의 도서에 대해 영유권 분쟁 중이며, 분쟁도서의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나 북방영토/쿠릴 열도에 비해 독도는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나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한국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된다.¹⁴ 그러나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일본 국내정치, 즉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와 보통국가화 전략 등의 우경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실질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할 경제적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분쟁을 해결

할 경제적 유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유권 문제를 보유하고 분쟁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이 어떠한 해양영토 분쟁에서도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14 Michael A. McDevitt & Catherine K. Lea, 2013, *Japan's Territorial Disputes*, CNA Maritime Asia Project, June 2013, p. 5.

독도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 대륙붕은 40여 년 전부터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광상 부존 유망지역으로 평가되어왔다. 한·일은 1974년 동중국해에서 최초로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JDZ)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JDZ의 대부분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이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1986년에 한·일 간 공동으로 시추한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공동개발협정이 채택된 1974년 당시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¹⁵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 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신규 제도가 도입되고, '1982년 리비아/튀니지 대륙붕사건'¹⁶ 이후로 다수의 국제 판례에서 인접국 또는 대항국 간 거리가 40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는 규칙으로 '자연적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본 내에서 1974년 협정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영해선 인근 오키나와 해구(Okinawa Trough)까지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공동개발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도 일대의 울릉분지에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6억 톤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의 부존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¹⁷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 확정의 문제를 별개로 하고 공동탐사·개발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여 분쟁을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 인근 대륙붕에서 경제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역사 갈등과 더불어 국민정서 차원에서도 공동개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 대륙붕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일방적 가스전 개발 문제와 비교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약하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한국과의 동중국해 공동개발에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공동개발을 일본이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붕 가스자원 외에 어업자원도 한·일 양국에 중요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도 문제에서 일본과의 분쟁을 악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¹⁸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 내에서도 독도의 12해리 영해 이원의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여 영유권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어민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협정을 통해 독도 주변수역에 한·일 양국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이 설정되었음에도 일본의 시마네 현 어민들은 중간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어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일본의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어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이익의 양국의 민족주의를 유발시키는 일련의 조치와 대응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간 해양영토 문제에서 자원을 탐사·개발·이용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 만약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도서에 대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국과 자원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다. 분쟁수역에서의 분쟁국 간의 자원의 공동개발은 분쟁으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탐사·개발의 시기를 앞당기고 자원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점유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의 이익이 적어진다. 물론 이 경우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18 독도 문제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독도 인근 어업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시마네 현 어민들은 독도 부근의 조업을 둘러싼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어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소관하는 전문기관 설치, 영토권 확립 등을 촉구해왔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편입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1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16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17 강동호 외, 2009,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형태」, 『지질학회지』, 제45권 제2호, 150~154쪽.

상대국과 해양경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제법상 해양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양국은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와 일방적 개발활동을 상호자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¹⁹ 하지만 분쟁수역에서 자원의 공유나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법적 의무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상대국의 기술공유 또는 이전, 자원개발에 따르는 갈등관리 비용의 측면을 감안하여, 공동개발협정에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 확정의 최종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리유보조항(without prejudice clause)을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이 영유권 문제에 민족주의적 인식이 투영될 경우 공동개발 자체를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분쟁수역의 자원이 그다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더더욱 공동개발을 통해 영유권 갈등을 감소시킬 유인이 약할 것이다.²⁰

세 번째 측면은 국제재판소를 통해 제3자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은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당사국이 주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²¹ 실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ICJ에 회부하려고 1954년, 1962년, 2012년 세 차례나 시도한 바 있다.²² 그러나 일본이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ICJ 강제관할을 수락하지 않고 있어,²³ 양국이 합의하에 ICJ에 독도 문제를 공동제소하거나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에 대해 한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확대 관할권(Forum Prorogatum)을 성립시키지 않는 한 ICJ에서 독도 문제를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국

19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 참조.

20 Michael A. McDewitt & Catherine K. Lea, 2013, p. 9.

21 Ben Dolven, Shirley A. Kan, and Mark E. Manyin, 2013,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p. 20.

22 일본은 1954년 9월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려 시도했으며, 1962년 3월에 두 번째 시도에 이어 2012년 8월 다시 한국에게 공동제소를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시도를 세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oposal of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ttp://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65.html>.

23 일본은 1958년 9월 15일 ICJ 강제관할권 수락을 선언하였으며, 2007년 7월 9일과 2015년 10월 6일 수락 선언을 두 차례 수정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CJ and Japan", <<http://www.mofa.go.jp/files/000104046.pdf>>; 일본은 2012년 ICJ에 독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새로 출범된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포기한 바 있다. "Japan Won't Bring Takeshima Dispute to the ICJ," *The Asahi Shimbun*, 9 January 2013, <http://ajw.asahi.com/article/asia/korean_peninsula/AJ201301090015>.

제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배제선언을 했음에도 혼합분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 문제와 중국과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문제의 국제재판소를 통한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매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쟁도서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분쟁당사국은 국제재판을 통해 승소한다 하더라도 더 얻을 것이 없지만 패소할 경우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ICJ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센카쿠열도

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해결을 꺼리며 현상유지를 원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은 독도 문제와 달리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ICJ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중국에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미국의 한·일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균형적 해법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동맹국과 동반자 관계국과의 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일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역사적 불신과 갈등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²⁶ 독도 영유권 등 해양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3국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한국과의 관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

2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상 관련국은 언제라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해결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집행 활동, 유엔안보리 권한 수행 관련 분쟁에 대해 협약상 강제적 해결을 배제하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일방 제소할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 중국은 한국과 유사한 배제선언을 한 바 있으나, 2013년 1월 필리핀의 일방제소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다.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pca-cpa.org/show-page65f2.html?pag_id=1529>.

25 Koichiro Gemba, Foreign Minister of Japan, "Japan-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s," 21 November 2012,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gaisho/gemba/pdfs/iht_121121_en.pdf>.

26 박창권, 2015,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국방연구원, 15쪽.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핵심국가이므로 미·일관계와 한·미관계의 중요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²⁷ 또한 일본의 단독적인 지역안보 역할의 강화는 침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균형 정책 추진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조는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60여 년 전 미국이 일본의 해양경계와 영토의 처리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지속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을수록 도와야 할 도의적 책임을 진다.²⁸ 물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관계된 역사적 갈등의 불씨를 이제 와서 없앨 수는 없지만, 미국이 이러한 분쟁들을 초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초한 분쟁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 독도 문제는 그 특성상 분쟁당사국 간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분쟁의 해결 또는 적어도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다만 자국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는 정책을 미국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일본의 해양영토 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일 간 독도 문제에서만은 미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한·일 양국 간 상호 자제와 대화를 통한 교섭만을 권고하는 불개입 정책의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는 일본의 다른 해양영토 분쟁과 달리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분쟁이며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인 오랜 동맹국 간의 분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1951년 일본과의 평화조약 문안 과정에서

영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분쟁을 야기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기존의 불개입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다 주도적으로 중개하려는 정책을 펼칠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재균형 정책의 미미한 성과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미국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일관계를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즉 한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재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개입이 없는 한 양국 간의 근본적인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일 간의 갈등의 원천에는 미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미국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영토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전후 처리의 잘못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일 간의 분쟁해결과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담한 제안을 한다. 우선 일본은 일제강점기 동안 벌인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공식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하고,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 성 노예와 징용으로 피해 입은 모든 한국인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과서 문제와 같이 한국인을 자극하는 역사수정주의를 폐기하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각부 장관과 정치인들의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경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들이고, 역사문제를 완전히 중식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일본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27 고봉준, 2014, 앞의 글, 58쪽.

28 Sheila A. Smith & Charles T. McClean, 2013, "Japan's Maritime Disputes: Implications for the U.S.-Japan Alliance," *CNA Maritime Asia Project*, p. 26.

29 Michael A. McDevitt & Catherine K. Lea, 2013, p. 12.

30 Brad Glosserman & Scott A. Snyder, 2015, pp. 171~180.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과연 미국이 재균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비대칭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 이러한 대담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또한 만약 미국이 이와 같이 대담한 접근을 일본에게 제시했을 때 과연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재균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일 양국 모두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킬 과제를 부담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은 재균형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론적인 주장보다는 명확한 단계별 정책목표와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한국은 우선 미국에게 한·일관계의 개선에서 독도 문제가 결정적임을 설득하고, 한국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또한 독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상 및 문안 과정에서 독도가 삭제된 배경에 대한 문서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요구사항이 일본에게나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결정임을 감안하여 일본과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활발한 공공외교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³¹

한편, 한·일 간 독도 문제와 역사적 갈등을 풀 수 있는 변수는 미국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합한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에 독도 문제의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미래지향

적인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31 일본 내각부 정보공보실 특별여론조사 (2013. 8. 1), <<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5/h25-takeshima.pdf>>.

V. 맺음말

한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향후 다양한 도전과 기회 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했을 때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며, 역사문제가 충돌할 때 최대 피해자 역시 한국이 될 수 있다.³²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향후 상당기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동맹국들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한국이 한·일관계 악화와 한·중관계 강화로 인해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외교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편향 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미국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즉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지지하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선결조건은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태도를 보여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한·일과의 신뢰구축의 선결과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공동개발 문제에서의 일본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32 천자현, 2014,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성과 미국-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11쪽.

국문 초록

일본의 인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은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분쟁도서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63년 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고, 중·일 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분쟁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독도 문제는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추진에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굳건한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한다. 그러나 한·일 간 독도 문제는 강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안보 담보국이므로 양국 간 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이 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로 엮힌 역사적 문제들을 원상 회복시키지도, 양국 간의 해양영토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한·일 간 해양영토분쟁은 그 특성상 분쟁당사국 간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또는 적어도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기인한 문제가 한·일 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분쟁들을 초래하게 만든 역사적 상황들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국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담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제어>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 전략적 한·일관계, 삼각안보체제, 해양영토 분쟁, 독도, 미국의 역할과 책임

ABSTRACT

The U.S.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and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Kim, Jayoung
Analyzer, Defense Intelligence Agency ROK

Japan'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its near neighbors all find their origins in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ended the U.S. occupation of Japan after World War II. The Treaty did not clearly establish Japan's maritime boundaries and was silent on the disposition of disputed territories. As a result, decisions reached by the United States 63 years ago have, in a sense, come back to haunt the United States in two of the three disputes: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because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China; and Dokdo issue because it contributes to continued enmity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are America's two Northeast Asian allies.

In the U. S. rebalancing policy to Asia,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 security issues is essential and would present a solid Northeast Asian democratic posture against North Korea, and potentially China. However, the dispute over the Dokdo island creates a major stumbling block in the Obama administration's desire to forge a closer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their stable management or their peaceful resolution, as both Korea and Japan's ultimate security guarantor. While the United States cannot undo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ending the World War II or cannot directly resolv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ts active efforts and bold move to address these disputes as part of the San Francisco Treaty might have kept from becoming flashpoints. The key factor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e United States'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it had a role historic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se disputes.

Keywords

U.S. Rebalancing Strategy, Korea-Japan Strategic Relation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Dokdo,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동호 외, 2009,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형태」, 『지질학 회지』, 제45권 제2호.

고봉준, 2014,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와 미국」,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김명섭, 2007,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의 변동과 한반도 평화체제」, 『안보학술논집』, 제18집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박영준, 2015,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EAI일본논평』, 2015년 5호, 동아시아연구원.

박창권, 2015,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국방연구원.

백창재, 2015, 「동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대담한” 제안?」, 『아시아리뷰』,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수형, 2015,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이수형, 2015,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KINU 통일+』, Vol. 1, No. 2, 통일연구원.

천자현, 2014,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성과 미국-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마고사키 우케루 저·양기호 역·김충식 해제, 2012, 『일본의 영토분쟁: 독도·센카쿠열도·북방영토』, 메디치미디어.

[국외 문헌]

Dolven, Ben, Kan, Shirley A. and Manyin, Mark E., 2013,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15, *Pride and Prejudice—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Issue Report No. 23.

Fortaine, Richard and Lord, Kristin M., 2012, “Introduction: Debating America’s Future,”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Center for a New America Century).

Glosserman, Brad & Snyder, Scott A., 2015,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McDevitt, Michael A. & Lea, Catherine K., 2013, *Japan’s Territorial Disputes*, CNA Maritime Asia Project, June 2013.

Smith, Sheila A. & McClean, Charles T., 2013, “Japan’s Maritime Disputes: Implications for the U.S.-Japan Alliance,” *CNA Maritime Asia Project*.

[기 타]

- 국제판례
 -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pca-cpa.org/showpage65f2.html?pag_id=1529>.
- 정부문건
 - Koichiro Gemba, Foreign Minister of Japan, “Japan-China Relations at a Crossroads”, 21 November 2012.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gaisho/gemba/pdfs/iht_121121_en.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oposal of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ttp://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65.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CJ and Japan”. <<http://www.mofa.go.jp/files/000104046.pdf>>.
 - U.S. Department of State, 95/05/10 Daily Press Briefing. <http://dosfan.lib.uic.edu/ERC/briefing/daily_briefings/1995/9505/950510db.html>.
- 신문기사
 - “Japan Won’t Bring Takeshima Dispute to the ICJ,” *The Asahi Shimbun*, 9 January 2013. <http://ajw.asahi.com/article/asia/korean_peninsula/AJ201301090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¹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

최운도 ·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아베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북방4도 문제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논의는 항상 영토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말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사태라는 일본 초유의 재해 상황에서도 예정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제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들 영토관련 이슈들이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 국가의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영토관련 갈등은 역사문제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²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한국전쟁은 20세기 후반 각각의 국가들이 처리하고 지나갔어야 할 전후처리와 역사청산, 국내통합의 문제와 정체성 확립 등의 과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 그러한 문제들이 탈냉전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각 국가의 과제로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공통분모가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영토이슈와 결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족주의와 영토이슈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영토분쟁이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민족주의적 요소의 유무가 영토분쟁의 심각성과 양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 뒤에는 심각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민족주의 강도의 변화가 분쟁 강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영토문제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1. 머리말

일본의 외교정책 관련 서적들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외교는 중국, 러시아, 한국 세 나라와 영토문제를 안고 있음을 빠짐없이 지적한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지형은 지난 수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2010년 9월에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의 충돌 사고와 그로 인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에 가까운 외교적 갈등은 센카쿠열도(다이오유다이)를 둘러싼 양국의 영유권 분쟁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일본의 센카쿠제도 국유화와 그에 대한 중국 내 반일시위는 센카쿠 문제가 중일관계의 핵심으로 다루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어선 충돌사건이 있었던 그해 11월, 러시아의 메드 베데프 대통령은 소위 일본인들이 북방영토라 부르는 남쿠릴열도를 방문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판 성명과 러시아 각료들의 연이은 방문은 이 지역의 영토분쟁이 센카쿠열도 문제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갖

1 이 논문은 2011년 4월 8일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함의의 전망' 주제로 개최된 한국학술연구원 제13차 코리아포럼의 발표논문을 수정·보완·업데이트한 것으로서 최운도, 2011,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동북아역사문제』 통권 49호(2011. 4), 2~9쪽에도 일부 소개된 바 있음.

2 Sheila A. Smith, 2012. 9, "Japan, China, and the Tide of Nationalism,"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asia-and-pacific/japan-china-tide-nationalism/p29080>.

II. 민족주의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민족주의의 개념과 원리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문제의 유발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민족주의라는 분석도구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잠재적으로든 남들과 같은 ‘민족’을 구성한다고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자치와 독립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념 운동”으로 정의된다.³ 민족주의는 국가의 등장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는 전통사회의 붕괴를 동반하는데 이는 특히 사회의 구조적 분화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는 근대화 과정으로 하여금 재통합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조합이라든가 정당, 그리고 복지기관과 같은 새로운 기관들이 전통적 사회조직의 해체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 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외와 사회적 이탈은 사회 내에 심각한 문제들과 갈등 양상을 낳게 되고, 급기야 사회적 공황상태나 반문화 등의 확산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들은 동일시의 대상을 찾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 상징물들을 대신하여 많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징물들을 요구하게 된다. 즉, 대중이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재통합은 근대화를 이끄는 국가가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연대를 상실한 개인과 대중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민족주의인 것이다.⁴

그런데 민족주의는 거꾸로 산업화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야말로 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전통적 가치의 상실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동기와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동원해야 하고 시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여 하나의 새로운 집합체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길이 험난할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민족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분화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산업화를 위한 단합을 촉구해온 민족주의는 근대화 과정이 성숙됨에 따라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분화는 사회의 세속화를 초래한다. 개인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지배해온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가치들이 의미를 잃어가고 합리성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민족주의가 요구해온 제도들과 기관들은 점점 합리성이 지배하는 자율적인 체제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낮은 산업화 단계에서 단합과 동원, 열의를 위해 필요했던 민족주의가 더 이상의 합리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개인과 개인, 사회조직과 조직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와 함께 절박함 속에서 진행된다. 합리성은 곧 사회의 이념과 조직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영토분쟁과 영유권

일반적으로 분쟁이란 개념은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종족·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등)과 다른 집단(들) 간의 상호 대립상태”⁵라고 정의된다. 이 개념 중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incompatible goals)’ 부분에 대해 코저(Coser)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 현상, 세력, 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⁶으로 규정하기도 한

³ Anthony D. Smith, 1983, *Theories of Nationalism*, New York: Holmes & Meier. p. 161.

⁴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Ernest Gellner, 2006,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E. J. Hobsbawm,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 Hutchinson and Montserrat Guibernau, eds., 2001, *Understanding Nationalism*, Cambridge: Polity Press.

⁵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 187.

⁶ Lewis A. Coser, 1956,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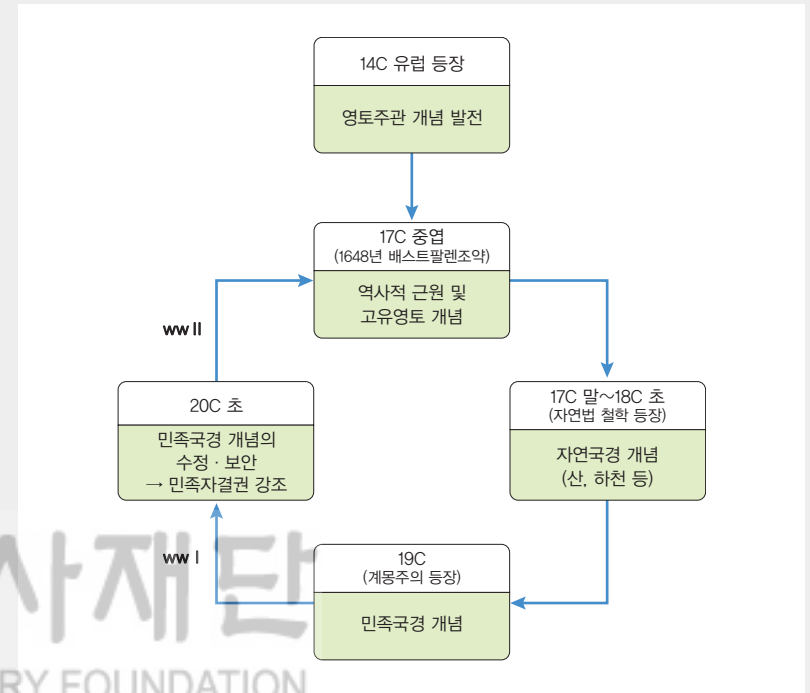
다. 이상 언급한 분쟁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두 가지 핵심사항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둘 이상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유한한 가치를 둘러싼 배분문제’에 관한 대립갈등이라는 점이다. 전자(둘 이상의 집단)의 경우, 근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집단이라 불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의 주체는 ‘민족국가(nation-state)’라 할 수 있다. 후자(유한한 가치의 배분문제)의 대표적 예로서 ‘영토(territory)’를 들 수 있다. 자원이나 전략적 거점과 같은 민족국가의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 또한 영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이처럼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개념은 국제분쟁의 일반적 개념체계 측면에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편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한 개념화는 위의 정의에 표현된 ‘상호 대립상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 특정 영토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에서의 어떠한 작은 차이라도 있다면 영토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⁷ 그러므로 이 개념화에 따르면 영토분쟁의 범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의 이견도 포함되는 것이다.

영유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은데, 이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개념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⁸ 영유권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가지만, 오늘날의 영토주권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4세기 유럽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였으며, 이어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래 영토주권의 개념은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유영토의 개념으로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1648년 이전의 영유권 개념은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고유영토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등장한 자연법 철학의 영향

⁷ Paul K. Huth, 1998, *Standing Your Ground: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ul K. Huth and Todd L. Allee, 2002, *The Domes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⁸ Nurit Kliot and Stanley Waterman eds., 1991, *The Political Geography of Conflict and Peace*, London: Belhaven Press, pp. 126~135 참고; 배진수, 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8~24쪽 및 배진수, 1998,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112쪽에서 재인용.



<그림 1> 영유권 개념의 변천과정과 민족주의 요소

을 받은 ‘자연국경’의 개념이었다. 이 자연국경의 개념으로 인해 산맥, 하천 등 자연적 지리여건이 영토주권으로 연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영유권 개념의 골간을 이루어온 역사적 권원 및 자연국경의 요소는 민족이라는 요소로 대체되기 시작하여 민족국경의 개념으로 일대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즉 영유권 및 영토주권은 민족 구성원에 기초하여 동일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같은 영토주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유럽 지역에서의 민족국경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주의는 서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중·동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유럽 지역의 민족주의는 ‘계몽주의 사상(enlightenment thinking)’에 영향을 받은 반면 중·동부 유럽지역

의 민족주의는 '낭만주의 철학(romantic philosophy)'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영토에 관한 주된 관심사도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유럽 지역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기존의 우주관이 지구 중심의 '천동설(geocentric)'에서 태양 중심의 '지동설(heliocentric)'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신권(神權, divine right) 위주에서 개개인(individual right) 중시로 변하게 되었고, 국가의 소속 구성원인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 국가는 영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소속 구성원이 민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충성심(loyalty)'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는 개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집단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의 경향이 있었으며 민족구분의 기준으로서 언어(language)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⁹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민족국가의 영토확장은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를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민족주의의 강화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맞물리면서 그 불일치는 더욱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력의 확대와 국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 논리를 배경으로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 공업국가들의 제국주의 성향을 낳았고 그 결과 제국주의 전쟁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후 민족주의에 기초한 영토확장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는 비판 속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소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는 곧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성향이 바람직한 민족주의의 형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진 공업국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성향은 파시즘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자결권을 빌미로 한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더니 마침내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민족국경의 개념 대신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 요소

⁹ 서유럽의 계몽주의 민족개념과 중·동유럽의 낭만주의 민족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George W. White, 2000, *Nationalism and Territory: Constructing Group Identity in Southeastern Europe*,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p. 52~53 참고.

를 보다 강조하는 영유권 개념으로 다시 환원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민족국경이 강조되던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영토를 침탈한 후 자국민을 새로운 영토에 이주시키는 작업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민족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다시 고유영토 개념이 강조되면서 '땅 따로 민족 따로' 현상이 보편화되었고 이때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영토분쟁이 바로 20세기에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는 '분리·독립 분쟁'인 셈이다.

3.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의 논리적 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민족주의의 개념 속에는 ① 민족감정이라는 측면(national sentiment)과 ② 강령이나 운동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nationalism)이 있다. 둘은 분석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민족감정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 공헌하고 싶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 하는 감정, 그리고 민족의 단결과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민족 특유의 표현이나 구호들이 민족감정을 형성하는 부분들이다. 반면, 강령이나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위의 열망들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형태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이나 독트린, 이념과 운동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심리적 '열망'과 구성원 다수가 참가하는 '사회운동'의 혼합물로서의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민족국가의 형성 단계에서 생겨난 민족주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차별성과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와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이 보는 객관적 요소로서의 차별성의 혼합에 따라 구성된다. '우리'와 '남'을 구별 짓기 위해 언어나 종교, 자연국경, 혹은 독자적인 정치사 등 외부와 구별하고 동시에 내부적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들을 모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내부적으로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주의

가 영토운동으로 발현될 경우 영토 내에서의 민족주의는 그 민족과 구별되는 그룹으로 하여금 분리주의 운동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근대 국가체제 형성 초기 모든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통해 추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요소라 할 수 있다.

독립성은 그에 비하면 근대 초기의 국가들보다 유럽 제국주의의 위협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주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위협 앞에서 민족주의 운동으로 국가의 '재생(renewal)'을 통해 독립성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국내 계급질서를 '유지(preservation)'함으로써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국의 신해혁명과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에티오피아나 아프간과 같은 중동국가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독립성과 관련된 민족주의 운동은 ①통합운동, ②보호주의 민족운동, ③확장주의 민족운동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신생 독립국들의 경우 문화적으로 상이한 그룹들과 통합하여 새로운 공통의 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 사회에서는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민족건설(nation-building)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는 국내의 문화적 상이성에도 어렵게 얻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경제적 침탈로부터 경제적 자급자족을 확보하려는 운동을 말한다. 셋째는 국력과 세력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을 자신들의 새로운 민족국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인종적 합병이나 범민족주의 운동이 여기에 속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영토침범이 이 범주에 속한다.

처음부터 독립적 민족국가의 형성에 성공을 한 경우나 식민지 통치를 겪고 나서 민족국가로 독립을 성취한 경우 모두에서 민족주의는 정체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차별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감과 사회운동의 양면 또한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

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민족주의는 그 구성원들과 그들의 국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성향을 띠게 한다.¹⁰

- ① 민족들과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동포애와 평등 의식을 확보할 것.
- ② 영토를 벗어난 동족들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할 것.
- ③ 민족들 사이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독자성을 확보할 것.
- ④ 경제적 자급자족과 자립성장의 가능성을 확보할 것.
- ⑤ 국가의 권위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국가의 영토적 확장 의지를 발현할 것.
- ⑥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통한 사회조직과 문화를 일신할 것.

이상에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영토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토분쟁 자체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에 더하여 민족주의가 개입할 경우 그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게 된다. 단순한 영토분쟁이라면 자원개발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민족주의는 이익의 문제를 원칙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원칙과 타협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협상을 통한 평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의 결말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평화나 번영,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낳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정치와 상관없는 많은 시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준다.¹¹

III. 경험적 분석

민족주의 개념이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인데, 이를테면 인종문제, 국제분쟁, 커뮤니케이션, 경제발전

¹⁰ Anthony D. Smith, 1983, p. 171.

¹¹ Anthony D. Smith, 1983, Chapter 1.

과 정치발전,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정치사상, 지정학, 사회혁명 등의 분야에서 민족주의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다양한 이론과 가설들이 검증되어 왔다.¹²

기존의 영토분쟁 관련 경험적 연구들에서 '민족주의'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스(Huth, 1996)의 연구에서는 영토 분쟁의 성격이 '인종·종족(ethnic)적'인지 아니면 '전략적(strategic)' 또는 '경제적(economic)'인지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¹³ 이 가운데 '인종·종족 영토분쟁' 유형이 바로 영토분쟁의 민족주의 요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헨슬(Hensel, 2001)의 연구에서는 영토분쟁의 속성으로서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등 일반적 요소에 추가하여 '식민지(colonial territory) 여부'라든지 '인종·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 등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¹⁴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토 분쟁은 자원과 관련된 경우보다 민족·종족과 관련될 때 그 정도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원문제는 민족·종족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물질과 관련된 구체성을 띠고 있어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민족·종족문제는 인간과 관련된 본질적인 것으로 타협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적기 때문이다.¹⁵ 또한 영토분쟁의 국가 간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바로 '국내의 반대'와 '국민적 감정' 등 민족주의 요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도출되었다.¹⁶ 특히 월터(Walter, 2003)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영토임에도 국가 간 고질적인 영토분쟁이 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민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국내의 강경파들은 종종 역사적 적대감(historic ani-

mosity)에서 비롯된 국민적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가 간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경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국가 간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에 나설 때 국내에서도 비교적 반대 여론에 덜 직면하게 되어 결국 평화적 분쟁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닉슨 미국 대통령의 미·중 관계개선 경우라든지 알제리에서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인종·종족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인종·종족에 따른 '분할 조정'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영토에서 서로의 문화를 포용해주는 방식의 접근법이 제시되기도 한다.¹⁸

1. 세계의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요소: 역사적 적대감(historic animosity)

세계 영토분쟁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의 IBRU(International Boundary Research Unit)의 1999~2000년도 발간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42개 영토분쟁을 대상으로 총 22개 국제정치적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각 '분쟁지역의 중요도(Prominence)'와 '미국의 이해관계 정도(US Interest)'를 비교 평가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들 22개의 측정지표 중에 '역사적 적대감' 항목이 바로 민족주의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적대감'이라는 측정지표는 '분쟁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분쟁의 심각성(intensity)·규모(magnitude)·속성(nature) 등 세 가지 요소 중 '분쟁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비슷한 여건의 영토분쟁의 경우 관련국 간의 역사적 적대감 또는 증오감이 크면 클수록 영토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¹⁹

다음 <표 1>은 '역사적 적대감' 항목에 대한 42개 분석대상 지역의 AHP 분석결과를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낮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의 영토갈등 지역들은 모두 역사적 적대감이 '매우 높음' 사례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Anthony D. Smith, 1983, *Theories of Nationalism*, New York: Holmes & Meier, p. 258.

13 Paul K. Huth, 1998 참조

14 Paul R. Hensel, 2001,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pp. 81~109.

15 영토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증적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Robert Mandel, 1980, "Roots of the Modern Interstate Border Dispu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3, September 1980, pp. 427~454 참조.

16 John A. Vasquez and Brandon Valeriano, 2009, "Territory as a Source of Conflict and a Road to Peace," pp. 203~205 in Jacob Bercovitch, Victor Kremenyuk, and William Zartman eds., *The Sag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LA: Sage 참조.

17 Babara F. Walter, 2003,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4, pp. 137~153.

18 John W. Burton, 1990,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참조.

19 22개 측정지표의 구체적 내용은 Daniel J. Dzurek, 1999~2000,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Winter, pp. 83~95 참조.

〈표 1〉 민족주의 요소로서의 역사적 적대감과 영토문제

역사적 적대감 (historic animosity)	사 례 (Cases): 총 42개 지역
매우 높음 (AHP Eigenvalue: 0.547)	Armenia-Azerbaijan (N-K) Bahrain-Qatar China-India China-Japan-Taiwan (Sankaku Islands/Diaoyudao) China-Korea (Sea) China-Vietnam (Tonkin Bay) El Salvador-Honduras-Nicaragua (Sea) India-Pakistan (Kashmir) Iran-Iraq-Turkey (Kurdistan) Iran-UAE (Island) Japan-Russia (Kurile Islands/Northern Territories) Korea-Japan (Dokdo) Myanmar-Thailand Spratly (Nansha) West Sahara
약간 높음 (AHP Eigenvalue: 0.241)	Bulgaria-Romania (Sea) Bulgaria-Turkey (Sea) Cambodia-Thailand (Sea) Malaysia-Thailand
보통 (AHP Eigenvalue: 0.162)	Belize-Guatemala Belize-Honduras Cameroon-Nigeria (Bakassi) Caspian Sea China-North Korea Columbia-Nicaragua (San Adreas Island) Columbia-Venezuela (Sea) Egypt-Sudan Georgia (Abkhazia) Iraq-Syria Moldova (The Dniester) Rumania-Turkey (Sea) Rumania-Ukraine (Sea) Russia-Ukraine (Territory & Sea) South Africa-Switzerland Syria-Turkey (Sea)
낮음 (AHP Eigenvalue: 0.050)	Botswana-Namibia (Kashikishi Island) Brazil-Columbia Equatorial Guinea-Nigeria India-Nepal Indonesia-Malaysia (Sipadan Island) Philippines-Taiwan (Sea) Zambia-Zimbabwe (Stream/Island)

출처: Daniel J. Dzurek, 1999-2000,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Winter 에서 발췌 재정리.

2. 세계의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요소: 독립 및 정권교체²⁰

세계의 도서분쟁 사례에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아 이러니하게도 어느 일방의 도서 점유가 일어난 직후에는 영유권 문제가 제 기되지 않다가 점유 이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길게는 수백 년) 지난 후에야 비 로소 상대국을 통해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원발견 시기 등 경제적 실리 때문이든지 아 니면 민족국가의 독립시기 및 정권교체에 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의식한 경우들이다.²¹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 제기국의 독립시기’에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도서분쟁 사례들로서는 Tromelin(프랑스-모리타우스) 도서분쟁에서 프랑스의 점유이래 200여 년이 지난 1968년의 모리타우스 독립과 영유권 제기, Falkland(영국-아르헨티나) 도서분쟁에서 영국의 점유이래 90년 지난 1920년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영유권 제기, Mayotte(프랑스-코모로스)에서 프 랑스의 점유이래 130년 지난 1975년 코모로스의 영유권 제기, Penones 외(스페인-모로코) 도서분쟁에서 스페인의 점유이래 300여 년 지난 1956년의 모로코의 독립과 영유권 제기, Hawar(바레인-카타르) 도서분쟁에서 1967년 카타르의 독립과 영유권 제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로부터 독립 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특히 ‘영토적 민족주의(territorial nationalism)’라고 분류하기도 한다.²²

20 배진수, 2009,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 적 접근과 분석: 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 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진수 외, 『독도문 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4~ 27쪽.

21 세계 도서영유권 분쟁 사례의 점유유형 및 이의제기별 구체적 분류와 현황에 대해 서는 배진수, 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 도 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39~ 40쪽 참고.

22 ‘영토적 민족주의(territorial nationalism)’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Anthony D. Smith, 1983, pp. 216~218 참고.

한편 정권교체를 계기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한 사례들로서는 Andres 외(콜롬비아-니카라과: 1979), Pen- guin(남아공-나미비아: 1980), New Moore(인도-방글라데시: 1978), Glorioso 외(프랑스-마다가스카르: 1973), Diego Garcia(영국-모리타우스: 1980), Navassa(미국-아이타: 1981)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정권이 약화된 틈을 타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있는데, Warba 외(쿠웨이트-이라크: 영국, 1961) 및 Aland(핀란드-스웨덴: 러시아, 1917)

〈표 2〉 독립 및 정권교체와 영토문제 제기

이의제기 시점	도서분쟁명 (점유국-반대국)	점유시기 ↔ 분쟁제기
독립시점	Tromelin (프랑스-모리타니)	1722 ↔ 1968
	Tunb (이란-UAE)	1971 ↔ 1971
	Falkland (영국-아르헨티나)	1833 ↔ 1920
	Mayotte (프랑스-코모로스)	1843 ↔ 1975
	Penones 외 (스페인-모로코)	1673 ↔ 1956
	Hawar (바레인-카타르: 영국)	1939 ↔ 1967
정권교체	Andres 외 (콜롬비아-니카라과: 美)	1928 ↔ 1979
	Penguin (남아공-나미비아: 영국)	1910 ↔ 1980
	New Moore (인도-방글라데시)	1970 ↔ 1978
	Glorioso 외 (프랑스-마다가스카르)	1896 ↔ 1973
	Diego Garcia (영국-모리타니)	1965 ↔ 1980
	Navassa (미국-아이티)	1860s ↔ 1981
제3자 약화	Warba 외 (쿠웨이트-이라크: 영국)	1932 ↔ 1961
	Aland (핀란드-스웨덴: 러시아)	1809 ↔ 1917

등이 해당된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 입장을 쿠데타의 명분으로 활용하여 집권에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로스몬세스 도서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쿠데타 집권에 성공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들 수 있다.²³

192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만(Gulf of Venezuela)의 영해 자원과 로스몬세스 섬 주변의 원유 자원 발견 등으로 인해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마침내 콜롬비아는 일방적으로 로스몬세스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게 되지만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1952년 2월 로스몬세스 섬을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1952년 11월 11일 콜롬비아의 외무장관인 후안 우리베 올겔(Juan Uribe Holgum)은 공식적으로 그 섬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1971년 콜롬비아는 1952년의 로스몬세스 섬에 대한 공식적 영토 포기 선언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

²³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로스몬세스 도서 영유권 분쟁의 배경 및 전개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배진수·윤지훈, 2008,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85~90쪽 참고.

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도서영유권에 정식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1978년에 양국 간 비공개 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분쟁에 대한 회담이 최초로 진행되면서 양국 간 조약의 초안을 만드는 데는 일단 합의하였는데, 당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로스몬세스 섬이 베네수엘라 영토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콜롬비아에게도 베네수엘라 만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매장된 원유에 대하여는 각 국가가 자기 영역 매장량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양국 국내적으로 일부 특정 그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군대의 반발은 매우 심했다. 마침내 1992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이끄는 부대가 카라카스(Caracas)에 있는 대통령 궁을 공격하는 등 베네수엘라 내부에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자신들을 군에 소속된 극우 민족주의자로 밝힌 쿠데타 리더들은 콜롬비아와의 기존 영토협상이 베네수엘라 영토주권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베네수엘라의 영토수호로 정당화하였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2000년 5월 4일 차베스는 콜롬비아의 안드레 파스트라나(Andres Pastrana) 대통령과 5시간에 걸친 면담 후 일련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위원회를 재구성하는데 합의하는 등 영토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으나 현재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IV. 동북아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요소

앞의 〈표 1〉을 통해서 많은 영토분쟁에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하지만 분쟁에 따라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다른 정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을 통해서 일부 분쟁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분출하는 민족주의적 요구가 영토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정권교체에 따른 지도자의 성향이

나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들은 개별 영토분쟁에서 민족주의가 주요 요소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민족주의 부침에 따른 영토분쟁의 심각성 변화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민족주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동아시아 영토분쟁 뒤에는 민족주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다.²⁴

1. 중국의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의 경우 근대로의 이행기에 외세로부터 중국의 독립을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손문을 중심으로 한 5·4운동도 재생 민족주의 형태를 띠기는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결국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과 그 이후의 냉전기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전과 중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건국이후 대부분의 사상교육은 사회주의 체제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결과 냉전기에는 민족주의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로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사회주의를 ‘생산력 발전’으로 정의함으로써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해야 했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중국 사회는 이념적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거기다 소련연방을 구성해온 다양한 민족들이 개별 국가로 분리되어가는 과정은 소련과 같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신생국들의 탄생은 신장과 위구르의 분리욕구를 자극하였으며, 1990년대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민주화 요구와

²⁴ 이하 내용은 최운도, 2011, 앞의 글, 6~8쪽에서 재인용.

함께 중국의 모든 국경지역에서 분리독립의 가능성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또한 탈냉전기의 산업화 과정은 도농 간의 격차, 내륙과 연안지방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낳았으며 거기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족들의 분리독립의 요구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중국은 내부통합을 유지할 필요가 생겨났으며 민족주의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우선 중국 교육부는 1993년부터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를 간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으로 발전시켰다. ‘국가주도의 애국주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공산당의 통치이념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이민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페이샤오통(費孝通)의 다원일체 중화민족론이다. 그는 “이 민족 실체에 귀속하는 각 민족은 모두 이미 고락, 존망, 영욕, 운명을 함께하는 감정과 도의로서 보다 높은 민족정체성을 지니고 있다”²⁵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제체제가 고도성장을 낳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민간에서도 경제적 자신감과 함께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어갔다.²⁶ 특히 중국 위협론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중국체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대중적 차원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중국 민족주의의 고양은 1995년 주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오폭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일

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일 데모 이외에 수차례 계속된 센카쿠열도 관련 분쟁에서의 대중 시위로도 나타난 바 있다.²⁷

이처럼 중국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경향의 민족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며 상승작용을 하면서 민족주의를 더욱 고양시켜나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대중적 민족주의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가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민족주의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²⁵ 이남주·배기찬, 2009,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418쪽에서 재인용.

²⁶ Peter Hays Gries, 2005,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²⁷ Grace Yen Shen, 2014, *Unearthing the Nation: Modern Geology and Nationalism in Republica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일본의 민족주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물고 일본 연안에 나타난 이후 일본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이 메이지유신이라는 ‘재생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확장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와 냉전의 국제질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데 우선권을 두도록 하였다. 패전으로 위축된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 기까지 그다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제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보수화 경향은 냉전의 국제질서가 사라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나카소네 수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역할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불침항모’론을 강조하였으며 1985년에는 전후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함으로써 일본 우익세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중국, 일본과 마찰을 겪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일본의 국수주의와 반미정서를 선동하였으며, 오자와 이치로는 1993년 『일본개조계획』을 출판하여 ‘보통국가론’을 제시하였다.²⁸ 1990년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본은 전후 일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온 일본의 시스템이 더 이상 국제질서에 맞지 않음을 통감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거기다 1990년대 초 정점에 이른 경기가 버블의 붕괴로 불황이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는 무라야마 수상의 내각이 끝나면서 사회당이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사관을 주장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출범이다.²⁹ 정치권에서는 자민당과 함께 55년체제를 이끌어온 사회당이 사라지

28 盛田昭夫·石原慎太郎, 1989, 『「NO(ノー)」と言える日本—新日米関係の方策』, 東京: 光文社; 小沢一郎, 1993, 『日本改造計画』, 東京: 講談社.

29 ‘새역모’의 주장과 일본 정치의 보수화, 그리고 안보정책에서의 보수화에 대해서는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공저, 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참조.

면서 보수세력에 대한 견제력이 급격히 소멸되어 갔다.

일본의 진보세력은 급격히 쇠퇴해갔으며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의 고양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관에 기초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시마네 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100년을 기념하면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60년 만에 개정된 2006년의 신교육기본법에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7월 발표된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영토이슈의 민족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는 동북아 지역의 최근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사관과(후소 사관의 뒤를 이은) 이쿠호사관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역사학자들로부터 자국중심의 역사관과 일본 민족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강조하는 초시대적·혈족주의적인 역사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³⁰ 그러므로 최근 일본의 민족주의 경향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의 주요인사들과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익

30 2009년 이후 최근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을 전후하여 일본역사학회의 우익교과서 비판은 다음을 참고, 『新しい歴史教科書』を引き継ぐ自由社版・育鵬社版歴史教科書の採択に反対する声明, 『日本史研究』 588, 2011. 8. 85~87쪽; 『緊急アピール: 育鵬社版 自由社版 教科書は子どもたちに渡せない』, 『日本史研究』 588, 2011. 8. 88~90쪽; 多和田雅保, 2011. 1, 『横浜市における歴史教科書問題: 普遍的にとらえるために』, 『歴史学研究』 875, 37~45쪽.

31 儀義文, 2011. 6, 『自由社版・育鵬社版教科書の採択をめざす右派勢力の動向』,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11~17쪽.

교과서 채택 노력 또한 문화인과 지식인, 학자 등이 주도하여 마치 시민운동인 양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교과서를 정치운동의 수단이자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³¹

일본의 경제는 후기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으로 일본 사회는 문화적 세속화 과정을 거친 만큼 민족주의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족자결주의가 국제사회에서 기본질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만주와 중국, 동남아 지역에 대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태평

양전쟁에서의 패전 후 청산했어야 할 전쟁의 과오를 정리하지 못한 채 냉전의 이념 대립기를 지나오게 되었다. 서구 사회의 영향력에서의 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삼은 전전세대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³² 우익 교과서 확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심지어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의 정신과 도덕을 선전하고 한테 뭉칠 것을 촉구함으로써 전통문화로의 회귀와 국가중심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³ 1980년대에 짝이 트기 시작한 보수주의 경향은 탈냉전을 기하여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꽃피기 시작했다.

3. 한국의 민족주의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국가주도의 성격이 강하다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간주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³⁴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는 순간 국가건설과 민족건설의 두 가지 주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는 하였지만 남한 내에서는 국가와 민족이 동일시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쉬운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민족주의는 민주화 세력의 운동수단이자 목표가 됨으로써 정부와는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탈냉전시기에도 민족주의 운동은 진보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정부와는 거리를 두어왔다. 이 시기 민족주의는 반미운동이나 통일운동, 그리고 반일운동 이외에 두 가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나는 바로 중국의 부상과 그 민족주의 성향에 대한 반감과 우려로 나타났으며, 또 하나는 경제성장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표출되었다. 이 두 가지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멸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민족주의가 강화되어왔다는 공통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형태로,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서로 다른 템포와 서로 다른 정도로 민족주의가 활용되고 강화되어왔다. 비록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분쟁들이 3국의 민족주의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냉전기부터 존재해온 동일한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가진 분쟁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는 이상 그 영토분쟁은 민감성과 폭발력에서 기존의 분쟁과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위협성을 줄이고 그 폭발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가?³⁵ 세 가지 이론적 접근법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는 세력균형이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며, 둘째는 분쟁 관련국들 사이의 공통의 동맹국의 존재가 분쟁의 폭발성을 조절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이 두 개의 요소들은 결국 미국의 존재를 의미한다. 국내 정치과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본 연구결과는 관련국들의 민주주의 수

준과 정치지도자의 정치력 역할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무력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치지도자만이 소수 시

32 이노구치 다카시. 1996.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계간사상』 29, 219~233쪽.

33 佐藤広美, 2011. 11, 「『つくる会』 承歴史教科書問題」, 『教育』, 75~81쪽; Dennis McCornac, 2014. 8, "‘New Nationalism’ in Japan: A turn toward military normalization threatens Japan position as a peaceful international leader,"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4/08/new-nationalism-in-japan/>.

34 이남주·배기찬, 2009, 앞의 글, 424쪽.

35 Woondo Choi, 2009, "Conditions for Peaceful Resolution in Territorial Disputes of Northeast Asi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9(6), pp. 35~54.

민이나 정치가들의 민족주의적인 선동과 무력동원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³⁶의 시각에서는 각국의 영유권 주장이 상대방에게 존재론적 차원의 도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많은 경우 존재론적 차원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그 대상이 되는 측도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은 평화적 해결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국문 초록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국제정치적인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영토관련 문제들을 이 지역의 민족주의 경향과 결부시켜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민족주의는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건설과 국민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수단이다. 그리고 그 속성상 민족주의는 영토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영토분쟁들에서 역사적 적대감이 높을수록 분쟁의 심각성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영토갈등 지역들은 모두 역사적 적대감이 ‘매우 높은’ 사례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냉전 상황에서의 안보위협은 동북아 지역의 민족주의 발흥을 억제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공통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은 냉전기부터 존재해온 동일한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가진 분쟁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는 이상 그 영토분쟁은 민감성과 폭발력에서 기존의 분쟁과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민족주의, 영토분쟁, 동북아 갈등, 동북공정, 자유주의 사관, 새역모

³⁶ Brent J. Steele, 2008,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Routledge.

ABSTRACT

Nationalism and Territorial Dispute: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is

Choi, Woondo
Research Fellow

Bae, Chinsoo
Senior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r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is work is an analysis to explicat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impact of nationalisms newly-born or resurrected in this region on the issue. Nationalism is one of the political means mobilized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and nation-building which are inevitable in the early-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this aspect, nationalism is closely related with territorial dispute. Among the territorial disputes which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historical antagonism is, the higher the intensity of the dispute is. Especially, the disputes in East Asia are categorized as the disputes of 'very high' antagonism. Security threat hovered over this area during the Cold War suppressed the rise of nationalism.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each of Korea, Japan and China is witnessing the rise and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ism in the other countries. Current territorial disputes of East Asia should be recognized as disputes with new dynamics but not as the extension of the antagonism which had been existing during the Cold War. As long as disputes are empowered by nationalism, they are the conflicts of magnitude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sensitivity and explosiveness.

Keywords

nationalism, territorial disputes, industrialization, historical antagonism, Cold War, Senkaku Islands, Dokdo

참고문헌

- 김호섭·이민우·한상일, 이원덕 공저, 2000, 『일본우익연구』, 중심.
- 배진수, 1997,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배진수·윤지훈, 2008,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 배진수, 1998,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 배진수, 2009,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배진수 외,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남주·배기찬, 2009,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 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최운도, 2011,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동북아역사문제』 통권 49호.
- 이노구치 다카시, 1996,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계간)사상』 29호.
- 盛田昭夫 石原慎太郎, 1989, 『「NO(ノー)」と言える日本-新日米関係の方策』, 東京: 光文社.
- 小沢一郎, 1993, 『日本改造計画』, 東京: 講談社.
- 多和田雅保, 2011. 1, 「横浜市における歴史教科書問題: 普遍的にとらえるために」, 『歴史学研究』 875.
- 佐藤広美, 2011. 11, 「“つくる会”系歴史教科書問題」, 『教育』.
- 依義文, 2011. 6, 「自由社版・育鵬社版教科書の採択をめざす右派勢力の動向」,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 「緊急アピール: 育鵬社版 自由社版 教科書は子どもたちに渡せない」, 『日本史研究』 588, 2011. 8.
- 「『新しい歴史教科書』を引き継ぐ自由社版・育鵬社版歴史教科書の採択に反対する声明」, 『日本史研究』 588, 2011. 8.
- Burton, John W., 1990,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Coser, Lewis A., 1956,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 Free Press.
- Dougherty, James E. and Robert L. Pfaltzgraff, 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 Gellner, Ernest, 2006,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Kliot, Nurit and Stanley Waterman eds., 1991, *The Political Geography of Conflict and Peace*, London: Belhaven Press.
- Hobsbawm, E.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tchinson, John and Montserrat Guibernau eds., 2001, *Understanding Nationalism*, Oxford: Polity Press.
- Huth, Paul K., 1998, *Standing Your Ground: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cVeigh, Brian J., 2003, *Nationalisms of Japan: Managing and Mystifying Ident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hen, Grace Yen, 2014, *Unearthing the Nation: Modern Geology and Nationalism in Republica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Anthony D., 1983, *Theories of Nationalism*, New York: Harper Torchbooks.
- Steele, Brent J., 2008,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f-Identity and the IR State*, New York: Routledge.
- White, George W., 2000, *Nationalism and Territory: Constructing Group Identity in Southeastern Europe*,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Choi, Woondo, 2009, "Conditions for Peaceful Resolution in Territorial Disputes of Northeast Asi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9, No. 6.
- Dzurek, Daniel J., 1999-2000, "What Makes Some Boundary Disputes Important?,"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7, Winter.
- He, Yinan, 2012, "East Asia's History Mirror: Myths, Nationalism,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Ruritan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thnicity and Nationalis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utumn,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 /yinan_he/13.
- Hensel, Paul R., 2001,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March.
- Mandel, Robert, 1980, "Roots of the Modern Interstate Border Dispu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3.
- Smith, Sheila A., 2012, 9, "Japan, China, and the Tide of Nationalism,"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asia-and-pacific/japan-china-tide-nationalism /p29080>
- Vasquez, John A. and Brandon Valeriano, 2009, "Territory as a Source of Conflict and a Road to Peace," In Jacob Bercovitch, Victor Kremenyuk, and William Zartman eds., *The Sag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LA: Sage.
- Walter, Babara F., 2003,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4.

프랑스 민간부문 대상 동해 표기 현황 및 동향 분석

민간 지도제작사, 방송사, 신문사를 대상으로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해외에서 제작되고 있는 지도를 보면, 한국의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동해(East Sea) 명칭이 일본해 명칭과 병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도제작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 중 하나인 프랑스를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간부문의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동해 표기명칭 정책수립 및 홍보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동해 표기 관련 연구는 각국의 정부 입장이 바로 반영되는 학교 교과서 및 정부산하 지도제작기관의 표기현황에 주된 관심을 가져온 반면, 자율적인 프로세스로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¹ 따라서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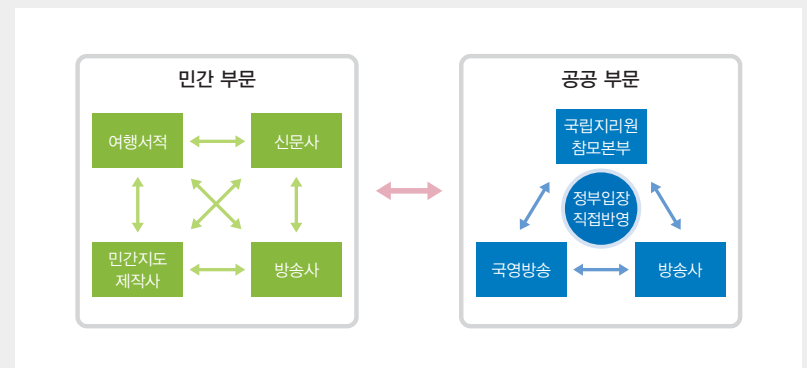
1 동해 표기 관련 연구는 주로 고지도와 고문헌, 지명연구, 교과서 연구 등의 범주로 대별된다. 먼저 고지도와 고문헌 관련 동해 표기 연구성과는 양보경(2004), 정인철(2010), 김종연(2012), 심정보(2013), 이상균(2014) 등의 것이 있고, 지명 관련 분야의 연구는 이기석(2004), 주성재(2005, 2010, 2012), 김신(2011), 심정보·정인철(2011), 김순배·이상균·김영훈(2015) 등이 있다. 또한 교과서 관련 연구는 손용택·한관중(2006), 심정보(2013) 등의 것이 있으며, 최근 국제지명전문가회의 등에서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토착지명 관련 연구는 주성재(2009)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 학자 황명철(2014)이 러시아 학술지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 및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알리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일본해 명칭의 부당성을 다루는 경향이 강했는데, 점차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는

고지도에 대한 분석에서 점차 교과서와 해저지명, 최근 학계 트렌드 등으로 연구의 관점과 주제가 전에 비해 훨씬 더 정교화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남한과 일본의 대립 양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동해 수역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추후 남북한이 협력하여 학술교류와 국제공동 등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훨씬 더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지도제작사 등 지도제작 주체들의 지명 표기(최종남·심정보·윤옥경, 2011) 및 동해 지명의 해외 홍보(윤옥경·최종남, 2011)와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영미권을 대상으로 한 지리교재 및 지도제작사의 지명표기 현황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불어권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는 프랑스 국내에서 3대 대형사이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매체이거나, 보수적 성향 또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매체 등 되도록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구는 기존의 공공부문 대상 연구와는 달리, 민간부문에 연구의 범위와 관점을 전환하고, 표기현황 위주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각각의 주체별로 그들의 표기 방침 및 그러한 방침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주체인 신문사, 방송사, 지도제작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도제작사는 국립지리원과 같이 정부의 입장이 바로 전달되는 공공부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방송사의 경우도 민영 방송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² 본 연구는 각각의 지도제작 주체의 표기원칙, 정부 입장의 수용 여부, 타사의 표기방침 참조 여부, 주된 표기의 원천 및 지원자료, 표기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상황, 향후 표기동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해당 기관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약속을 정한 후,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근거로 동해 표기 현황 및 그들의 의사결정 배경



(그림 1) 주요 지도제작 주체와 상호 영향관계

에 대해 상세히 인터뷰하였다.³

연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민간주체들(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은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참조는 할 수 있음), 개별 주체별로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일본해/동해 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보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해 단독표기, 일본해/동해 병기, 무표기, 기타 등 표기방식은 다양했다. 최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민감한 수역에 대한 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고 비워두는 것인데, 이러한 무표기 사례는 일본해 단독표기나 일본해/동해 병기 사례만큼 빈번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프랑스 1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향후 프랑스에서 지도제작에 관한 노하우 및 제도 일반을 수입해가는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서유럽 국가들, 동남아 불어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동해 표기 등에 관한 지리정보나 표기명칭 정책 등에 관하여 프랑스가 불어권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불어권 국가들은 프랑스에서 교과서나 아틀라스 등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II. 민간 지도제작사의 동해 표기 현황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민간 지도제작 3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명칭의 현황 및 그들의 표기명칭 방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블레이폴덱스(Blay-Foldex)사·인터카토(Intercarto)사, 에디테라(Editerra)사, 미슐랭(Michelin)사 등 3개 지도제작사다.

3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동해(일본해) 수역 명칭과 관련하여 한일 간의 갈등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뷰는 동해(일본해) 표기에 대한 당시의 원칙은?, 정부입장의 반영여부는?, 타사방침의 참조여부는?, 표기방침의 주된 원천은?, 표기방침에 시장상황이 고려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 블레이폴덱스사·인터카토사

블레이폴덱스사⁴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도제작 경험이 80년 이상 될 정도로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다.⁵ 이 기관은 미슐랭, IGN(국립지리원)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3대 지도제작사 중의 하나로 꼽히며, 이 회사에서 제작되는 도로지도, 관광지도는 프랑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세계지도, 각종 지형도와 주제도, 관광안내도 등 다양한 지도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제작되는 상품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불어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⁶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블레이폴덱스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수로기구(IHO)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블레이폴덱스사와 같은 계열사에 속해 있는 인터카토사 또한 국제수로기구의 방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동해 명칭은 이들 회사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표기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도에는 일본해 단일명칭만이 채택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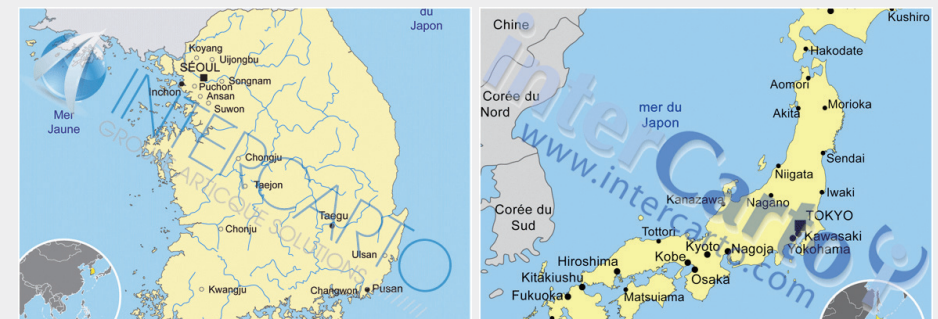
블레이폴덱스사·인터카토사는 프랑스 지도제작 부

4 홈페이지: <http://www.blayfoldex.com>.

5 이 회사는 2011년에 지리정보 분석에 관한 분야에서 전 유럽을 대표하는 Artique Solutions 그룹에 통합되었다.

6 동해 표기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는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불어권 국가로 수출되는 등선을 따라 지도의 유통과 동해 표기 명칭의 확산의 관계를 추적·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7 담당자: Madame Suzanne Nicey, 연락처: 01 49 88 92 10.



(그림 2) 인터카토사의 동해 표기 사례: 일본해

출처: <http://www.intercarto.com/cms/produits/hierarchy/188/131.html>

문에서 그 비중이 세 번째 안에 속하는 대형 기업인데, 이런 큰 회사가 한국의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해서는 국제수로기구의 결정을 존중함에 따라 프랑스의 다른 지도제작사들 또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들 회사는 일본해 명칭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바, 한국 측에서 이들 회사의 입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동해 명칭의 정당성에 대해 훨씬 더 섬세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에디테라사

에디테라사는 1992년에 설립된 지도제작사며, 이 회사에서는 도로지도, 항공지도, 지형도 등 다양한 지도를 아틀라스와 전자지도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이 회사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도제작부터 마케팅까지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도제작 회사라 할 수 있다.⁸

에디테라사는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엔, 국제수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별도로 정해놓은 원칙이 없으며, 단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지도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최근에 쿠오 바디스(Quo Vadis)라는 다이어리 제작사의 요청으로 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는데, 이 제작사의 경우 그들이 제작하는 다이어리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관계로 일본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은

⁸ 홈페이지: http://www.editera.fr/dossier.php?id_dossier=13.



<그림 3> 에디테라사의 로고

일본해로 표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⁹

에디테라사의 경영자인 오리안느 사코망(Auriane Sacoment)은 2012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간 경험이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실제 경영에서는 시장의 분위기나 고객의 요청으로 인하여 일본해 단일명칭이 표기된 지도를 주로 제작한다고 한다. 에디테라사의 사례를 보면, 일개 지도제작사의 경영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측에 비호의적인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수로기구와 같이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프랑스 정부나 프랑스 내에서 유력 기업들이 한국의 동해 명칭을 표기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제품에 한국의 동해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러한 흐름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미슐랭사

1889년에 설립된 미슐랭사의 창업자인 에두아르드 미슐랭(Édouard Michelin, 1859~1940), 앙드레 미슐랭(André Michelin, 1853~1931) 형제는 1900년에 세계여행 안내서인 『가이드 미슐랭(Guide Michelin)』을 창간하였으며, 1910년에는 유럽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고무원료의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지에 고무농원을 조성하였다. 창사 이래 100년이 넘도록 미슐랭사의 사명은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즐겁게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동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미슐랭사가 여행지도와 가이드북으로 관광과 여행에 기여

한 역사는 ‘이동성 향상’이라는 미슐랭 그룹의 사명으

⁹ 담당자: Ariane Sacoment, 연락처: 01 45 84 30 84.

로 표현되었다. 100년이 지난 후, 타이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술랭사는 90여 개국에서 가이드북(여행안내 책자)의 판매부수가 매년 1,700만 부에 달하고, 여행전문 웹사이트¹⁰도 보유한 유럽 최고의 여행정보 출판사로 운영되고 있다.

지도제작 및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미술랭사는 본래 국제수로기공에서 정하는 대로 일본해 단일명칭이 원칙이었으나, 2007년 무렵부터 동해(East Sea) 명칭의 불어 버전인 ‘Mer de l’Est’를 병기하고 있다.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2015년에 제작될 지도에도 당연히 동해 명칭이 일본해 명칭과 병기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 4>는 미술랭사에서 제작된 지도인데도 프랑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대다수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일본해 단일명칭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토착어 관련 최근 학계의 연구 동향이 반영된 것처럼, 동한만 명칭은 ‘Tongjосon Man(동조선만)’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명¹⁰ 홈페이지: www.viamichelin.com.



<그림 4> 미술랭사의 동해 표기 사례
출처: http://www.michelin.co.kr/group_04.html



<그림 5> 미술랭사의 동해 표기 사례: 한국 관련 여행책자
출처: <http://www.michelin-boutique.com/guide-vert-coree-p-1307.html>



<그림 6> 미술랭사의 동해 표기 사례: 동해-일본해 병기
출처: Le Monde edition Francaise, 2007, 동해수역 부분.

칭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명칭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미술랭사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여행책자의 표지다. 한국인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한일 간의 수역에는 일본해나 동해 명칭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남부지역만 보여주는 지도에는 동해(Mer de l'Est), 남해(Mer du Sud), 서해(Mer de l'Ouest)를 각각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는 황해도 없고, 일본해도 없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바다명칭만 표기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바다명칭으로서의 의미는 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6〉은 2007년에 미술랭사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의 동해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었다. 요컨대 프랑스에서 3대 지도제작사 중의 하나인 미술랭사에서 한국의 동해 명칭을 일본해(Mer du Japon) 명칭과 병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향후 프랑스 및 불어권의 지도제작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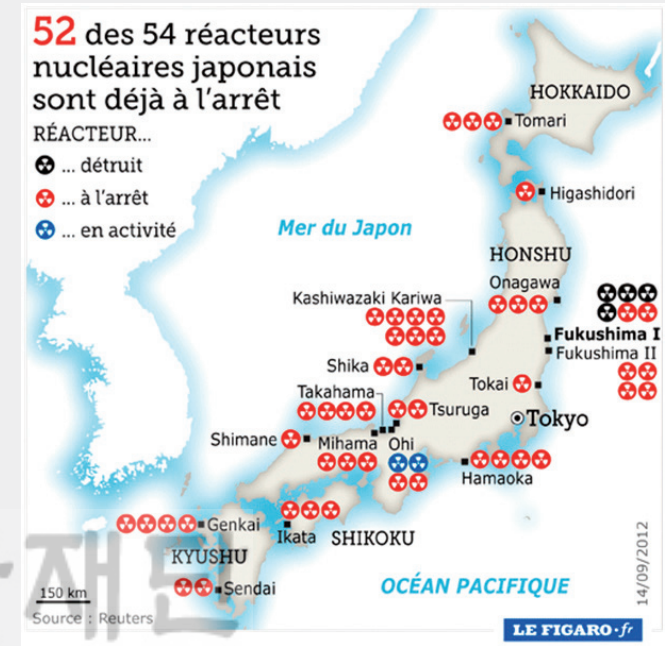
III. 신문사의 동해 표기 현황 및 프로세스

3장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명칭의 현황 및 표기명칭 방침에 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검토할 대상은 피가로(Figaro, Le)지, 르 몽드(Le Monde)지, 그리고 기타 신문사 등 총 5개 신문사다.

1. 피가로

피가로¹¹는 우파지로서 프랑스 신문사 중에서 가장

11 홈페이지: <http://www.lefigaro.fr/>.



〈그림 7〉 피가로의 동해 표기 사례(2012년 9월 14일자 기사)
출처: <http://fr.reuters.com/>

오래되었으며 르 몽드, 리베라송(Liberation, La)과 함께 프랑스 3대 신문사 중의 하나다. 피가로는 1826년에 창간되었으며, 1866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가 되었다.

피가로사와의 인터뷰 결과, 동해 표기 관련하여 이 신문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해진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해 단일명칭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방침에 따르면 일본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해로, 한국 관련 기사에서는 동해로 표기한다고 한다. 한국 관련 기사에서 동해 명칭을 병기하기로 한 이유는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¹²

하지만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반도와 일본

12 지도제작 담당자: Service infographie, 연락처: 01 70 37 31 70.

열도 사이의 수역명칭은 표기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일 양국 사이의 바다명칭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며, 인용되는 자료의 하단에는 출처가 명기된다. 예컨대 2012년 12월 7일자 지진에 관한 지도는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쓴 것이며, 2012년 9월 14일자 지도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자료는 로이터 통신에서 받아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지도자료마다 지도를 생산한 주체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기사를 내보낸 신문사는 한일 간의 민감한 바다명칭에 관한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듯한 의도 또한 감지된다.

2007년 3월 26일자, 북한의 금강산 관광에 관한 기사를 보면 또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면상에 제시된 지도에는 동해 명칭이 표기

되지 않았지만, 기사의 본문 내용에는 분명히 동해 명칭이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기사를 쓴 필자가 한국의 동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동해라는 명칭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만, 참고자료가 되는 지도에는 해당 명칭이 없는데, 이는 지도에 동해 명칭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다른 기관에서 지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동해 명칭을 미처 넣지 못한 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르 몽드

르 몽드는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1944년 12월 18일, 드골 장군이 이끄는 신정부의 명령에 따라 창간되었다. 르 몽드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세계'라는 뜻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일간지이며, 진보적인 언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 시기와 같은 민감한 국면에서는 좌파적 성향을 띠므로 보통은 중도좌파 신문으로 분류된다. 발행부수 면에서는 르 몽드와 피카로가 수위를 다투는데, 영향력 측면에서는 르 몽드가 앞선다. 르 몽드는 "진실을, 모든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라는 언론관으로도 유명하며, 르 몽드의 자매지이자 국제관계 전문지시사인 'le monde diplomatique(르 몽드 디플로마티크)'는 한국어판도 나오고 있다.¹³

르 몽드사와의 인터뷰 결과, 동해 표기 관련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해진 원칙과는 상관없이 보도대상 국가가 사용하는 표기명칭에 근거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본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해로, 한국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한다고 한다. 그리고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표기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르 몽드사에서는 철저하게 보도대상 국가가 사용하는 표기명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르 몽드에서 보도된 몇 가지 기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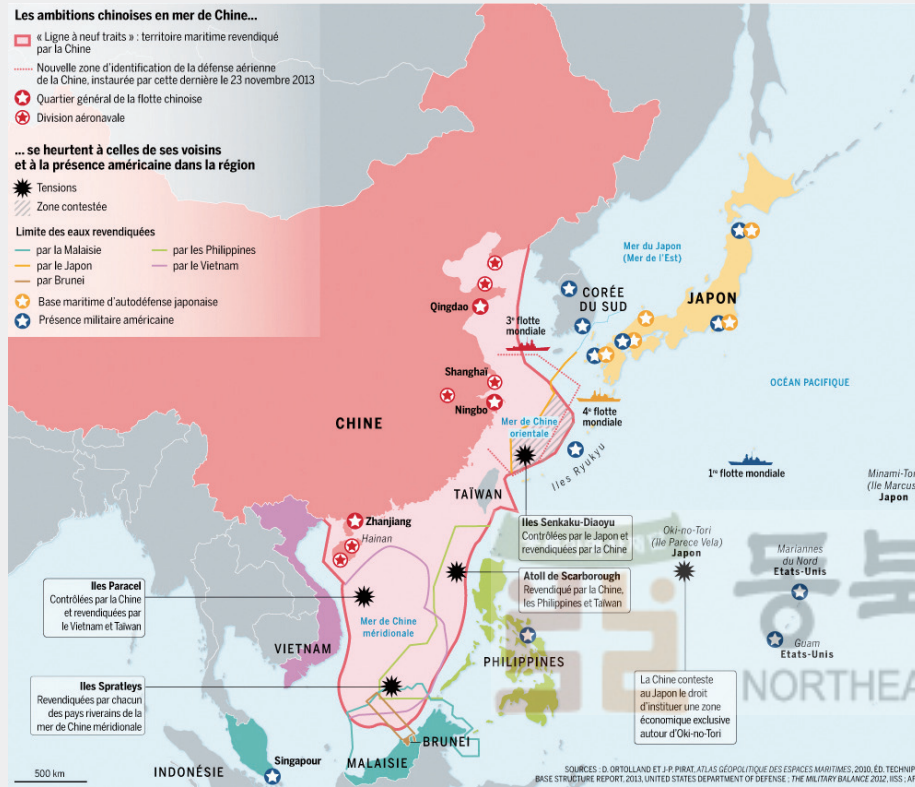
DANS LE BUS qui roule vers la Corée du Nord, une vidéo rappelle les consignes : « Ne posez pas des questions, ne discutez pas des comparaisons entre le Nord et le Sud, ne mentionnez ni Kim Il-sung ni Kim Jong-il, ne parlez pas des droits de l'homme... ». L'autoroute débouche sur la mer de l'Est, à 250 kilomètres de Séoul. On traverse des cités balnéaires figées dans la morte-saison avant d'arriver au poste de contrôle sud-coréen, un grand hall, moderne et propre qui ressemble à un aéroport. La ligne de démarcation divise la péninsule depuis l'armistice de 1953. Des

〈그림 8〉 피카로의 동해 표기 사례(2007년 3월 26일자 기사)

출처: http://www.lefigaro.fr/international/2007/03/26/01003-20070326ARTFIG90281-1_etrange_diplomatie_du_tourisme_en_coree.php

¹³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홈페이지: <http://www.ilemonde.co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사(2006. 10. 9)에서



〈그림 9〉 르 몽드의 동해 표기 사례(2014년 6월 23일자 기사)

출처: http://www.lemonde.fr/asi-pacifique/infographie/2014/06/23/pekin-impose-ses-conditions-en-mer-de-chine_4443432_3216.html

는 한반도와 관련된 기사인데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기사는 비교적 오래전에 보도된 것이며, 오늘날에 생산되는 기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2008년 9월 24일자 기사를 보면,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명칭은 황해(Mer Jaune)로 표시된 반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명칭은 표기하지 않았다. 황해는 표기했는데도 동해 명칭은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림 9〉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 6월 23일자 기사에 포함된 자료다. 이 기사는 ‘남중국해에서 표출되는 중국의 야망’에 관한 기사로서 사실상 중국에 관한 기사며, 지도상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부차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럼에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은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정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지도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항의가 예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동해 명칭을 관대하게 써줬을 수도 있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3대 대형 신문사 중의 하나인 르 몽드에 동해가 병기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사 중에 동해 병기에 관한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4년 11월 8일자 기사는 태풍 할롱이 일본을 강타하고 동해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는 지도자료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지만, 텍스트 상에서 일본해 명칭 뒤에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와 같이 동해를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 3대 신문사들 중에 하나인 르 몽드는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입장이 국제수교기구에서 정해진 원칙과는 상관없이 보도대상 국가가 사용하는 표기명칭에 근거하여 표기한다고 공표하였다. 실제로 수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06년에는 한반도를 다루는 기사였음에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명칭은 일본해로 표기되었지만 2008년 무렵 한반도를 다루는 기사에서 동해에 관한 표기명칭은 공백으로 비워두었는데, 이는 한일 간의 갈등상황을 의식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명칭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중국에 관한 기사였는데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하였으며,¹⁴

14 2006·2008·2014년에 각각 보도된 지도자료의 출처는 모두 달랐다. 해당 신문사는 모처로부터 지도자료를 받아오면서 필요한 명칭(예, 동해 명칭)은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일본을 다루는 다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해와 동해를 모두 표기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과거에 비해 한국의 입장이 서구의 언론사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의 신문사 사례

본 절에서는 그 밖의 신문사에서 다루지는 동해 표기 관련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1908년에 설립된 레제코¹⁵(Les Echos)¹⁶는 매일경제 및 금융정보 관련 일간지로서 경제부문 지식인들이 주된 독자층을 이루며, 이 신문은 자유주의 경제기조 성향을 띤다.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¹⁷ 유엔이나 국제수로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레제코사는 이와 상관없이 두 명칭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해나 동해나 표기문제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레제코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 14일자 기사는 NEC사(일본의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의 일본-러시아 간 해저 케이블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러시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을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였다. 반면 2014년 6월 29일자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흥미롭게도 동해를 'Mer de l'Est'로 표기하지 않고 '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동해를 지칭한다기보다는 18세기 전후의 시기에 서구세계에서 극동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가리키던 명칭이다. 이 기사에서 동양해(la mer Orientale)¹⁸ 명칭이 일본해 명칭과 병기되는 사실은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4년 7월 8일자 기사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 명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한 바와 같이, 레제코에 보도되는 신문기사나 지도 자료에서 한국의 동해수역 명칭은 일관되게 표기되지 않고 일본해, 일본해/동해, 동양해/일본해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신문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리베라송¹⁹은 프랑스에서 3대 전국 일간지이자 대표적인 좌파 신문이다. 이 신문은 1968년 5월, 68혁명

당시 운동권의 선전선동지로 출발하였다. 발행인은 장 폴 사르트르였으며, 편집장은 세흐쥬 쥘리였다. 또한 미셸 푸코, 모리스 클라벨, 클로드 모리악 등의 지식인들이 지원하였다. '모든 정보는 민중에게서 나와 민중에게 돌아간다'는 신념하에 광고나 외부자본 없이 가두모금이나 자비로 만들었다. 이 신문에서는 그동안 다른 언론에서 다루진 적이 없던 노동자, 동성연애자, 죄수 등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다. 또한 기사는 구어체로 작성되었으며, 독자를 위한 무료 광고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80년에 결국 휴간되었다. 하지만 1981년 외부자본을 영입하며 부활한 후, 좀 더 누그러진 논조를 보이며 르몽드, 피가로와 함께 3대 전국지로 자리 잡았다. 1981년 5월,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리베라송은 재정비 후 새롭게 출발하였다. 즉, 1982년에는 첫 번째 광고가 등장하고, 그 후 외부 주주 등 일반적인 언론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리베라송은 프랑스에서 3대 일간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이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된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

리베라송은 회사의 성향에서 드러나듯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얼마든지 합리적인 명칭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림 10>은 2011년 3월 13일자 기사에 포함된 자료다. 이 기사는 일본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지도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은 일본해와 한국해 명칭이 병기되어 있다. 한국해 명칭은 16~19세기 전반부까지 서구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서 널리 통용되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명칭이다. 한국 정부가 동해 명칭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신문사에서는 'Mer de l'Est' 명칭 대신에, 국가명이 포함된 한국해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사실, 서구의 불특정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명칭이 포함된 한국해 명칭이 한국의 동해를 더 명확하게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이라 사료된다. 반면, 이 신문사에서 보도된 2013년 11월 27일자 기사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을 다루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15 홈페이지: <http://www.lesechos.fr/>.

16 Les echos는 메아리라는 의미다.

17 담당자: Bruno Battail(컴퓨터 그래픽 부서), 연락처: 01 49 53 22 72.

18 오늘날 파리의 어느 서점에 둘러서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수역 명칭을 동양해(mer Orientale)로 표기하는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19 홈페이지: <http://www.liberation.fr/>.



〈그림 10〉 리베라송의 동해 표기 사례(2011년 3월 13일자 기사)

출처: http://www.liberation.fr/monde/2011/03/13/la-cote-nord-est-du-japon-est-devastee_721261?photo_id=258187

인하여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상은 기사내용과는 관련성이 떨어 지지만, 그림에도 일본해 단일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바이아르(Bayard) 그룹에 소속된 라 크르와(La Croix)²⁰는 1880년에 창간된 일간지다. 이 신문사는 성모승천수도협회에서 창립하였으며, 가톨릭 신자들이 주된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 라 크르와는 보수적 성향을 띠는 신문사로서 표기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해 단일명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거나, 동해만 단독 표기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의 경우는 한일 간의 갈등양상을 의식해서인지 바다명칭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14년 태풍 너구리를 다루는 한 기사를 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지도의 한가운

²⁰ 라 크르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홈페이지: <http://www.la-croix.com/>

데에 등장하고 있는데도 동해 또는 일본해 명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지도제작사나 신문사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한일 간의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듯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렇게 바다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11〉은 2013년도에 보도된 기사로서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기사에 포함된 지도에는 한반도 동쪽 해역의 명칭을 Mer de l'Est(동해)로 표기하였으며, 일본해 명칭은 병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특정 국가만을 다룰 경우에는 해당 국가 위주로 표기하는 경향이 다수의 매체에서 드러나고 있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신문사들은 대체로 지도제작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예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11〉 라 크르와의 동해 표기 사례(2013년 4월 28일자 기사)

출처: <http://www.la-croix.com/Actualite/Monde/Le-spectre-de-la-guerre-plane-sur-Yeonpyeong-en-Coree-du-Sud-2013-04-28-954045>

대 한일 간의 바다명칭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일본해 단일명칭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현재로서는 일본해 명칭이 대세지만, 프랑스의 신문사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동해 명칭을 써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도 않고, 최대한 그들의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V. 방송사의 동해 표기 현황 및 프로세스

4장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명칭의 현황 및 그들의 표기명칭 방침에 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검토할 대상은 TF1, 프랑스 24(France 24), 그리고 프랑스 텔레비중(France television) 등 총 3개 방송사다.

1. TF1

TF1²²은 TF1 그룹이 운영하는 프랑스 최대 민영 TV 채널이자 프랑스에 서 가장 오래된 방송 채널이다. 이 방송사는 세계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곳으로, 프랑스 방송 시장에서 24%의 시청률을 점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국제 뉴스 채널인 프랑스 24의 주주 중 하나다. 자매 채널로는 LCI, 유로스포트, TF6, TMC 등의 채널이 있다.

동해 표기 명칭과 관련하여 본 방송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²³ TF1사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칭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다만 TF1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Logiciel Curio'가 제공하는 대로 해당 표기명칭을 사용한다고

21 라 크르와사에서 보도된 기사와 지도를 보면, 한국의 동해 명칭은 가급적 한국의 입장에서 써주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이 신문은 가톨릭계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매체로서, 일제강점기 초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나타내는 가톨릭 교구 지도를 표현하면서 일본해 명칭 대신에 한국의 동해 명칭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22 홈페이지: <http://www.tf1.fr/>.

23 담당자: Philippe Pochelu(TF1 그룹의 지도 관련 총책임자), 인터뷰 날짜: 2014. 12. 3.



〈그림 12〉 TF1의 동해 표기 사례: 무표기

출처: TF1, 2011년 3월 15일자 일본 관련 뉴스 화면

한다. 한편, 특정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TF1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수역에 대한 명칭을 표기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TF1에서 보도된 2011년 3월 15일자 기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사에 포함된 지도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의 명칭이 표기되지 않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

사능 물질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예상되는 목적지의 국가명이나 지명만이 우선적으로 표기되었다(그림 12). 한편, 2013년 4월 9일자 기사를 보면, 북한이 한반도의 동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두 발 발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다뤄진 것은 아니며, 방송 내용에 기반하여 인터넷 버전으로 배포된 내용으로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 명칭은 일본해로 표기되었고, 괄호 안에 ‘한국인들은 동해(mer de l’Est)라 부른다’라고 추가적으로 진술되어 있다(그림 13).

이어서 같은 해 8월 21일자 기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인데, 이 뉴스 내용에 포함된 자료 화면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4). 2014년 4월 17일자 뉴스는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가는 세월호의 항로와 해난사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뉴스는 한국의 사정을 다루고 있는데도 한반도의 동해상의 명칭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사인 TF1은 일본해 명칭을 원칙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표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무표기로 하기도 하고, 일본해 단일명칭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터넷판 기사의 경우 일본해 명칭 뒤에 괄호로 ‘한국인들은 동해로 부른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그림 14〉 TF1의 동해 표기 사례: 일본해

출처: TF1, 2013년 8월 21일자 일본 후쿠시마 관련 뉴스 화면



〈그림 15〉 TF1의 동해 표기 사례: 일본해

출처: TF1, 2014년 4월 17일자 세월호 사고 관련 뉴스 화면

La Corée du Nord a lancé deux nouveaux missiles vers la mer

corée du nord, japon

Missiles Patriot et Destroyers

Les forces d'auto-défense (le nom de l'armée japonaise) ont été autorisées à détruire tout missile nord-coréen qui menacerait le territoire nippon, avait indiqué lundi un porte-paro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Outre les batteries de Patriot, Tokyo a déployé des destroyers équipés du système d'interception Aegis en mer du Japon (appelée mer de l'Est par les Coréens), avait précisé ce responsable.

〈그림 13〉 TF1의 동해 표기 사례: 일본해(동해 언급)

출처: 2013년 4월 9일자 인터넷 기사
<http://ici.tf1.fr/monde/asia/le-japon-deploie-des-missiles-patriot-au-coeur-de-tokyo-7917964.html?xtmc=mer%20de%20coree&xtcr=23>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프랑스 24

프랑스 24²⁴는 프랑스의 국제뉴스 전문 채널인데, 1987년 자크 시라크가 총리 시절부터 구상해왔던 것으로, 2003년 2월 무렵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6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²⁵ 개국 당시에는 프랑스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방송되었고, 이듬해부터는 아랍어 방송도 시작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스페인어 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24는 자체 제작 화면과 기사 외에 AFP 통신 및 라디오 프랑스 엔테흐나시오날 등에서 뉴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프랑스 24는 TF1사에서 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를 영상지도로 제작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관한 뉴스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은 가급적 표기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기사에서는 주로 일본해 명칭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동해에 관

24 2006년 7월 개국 당시에는 방송사명이 'Chaîne Française d'Information Internationale(CFI, 프랑스 국제 뉴스 채널)'이었으나, 방송사명이 너무 길다는 지적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 24'로 바뀌게 되었다. 홈페이지: <http://www.france24.com/fr/>.

25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도미니크 드 빌팽이 UN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을 때, CNN과 BBC 등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극을 받아 훗날 총리에 오르면서 미국과 영국의 시각에 맞서 프랑스의 시각을 전하는 국제 뉴스 채널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공영 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옹과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사인 TF1과의 공동 출자로 2006년 12월 6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림 17〉 France 24의 동해 표기 사례: 무표기

출처: 2013년 8월 1일 뉴스 방송 화면

해 언급하기도 한다. 2014년 4월 17일에 방영된 세월호 관련 뉴스 화면을 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칭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 방송사는 뉴스 화면에서 동해 해역에 대한 명칭을 대부분 표기하지 않고 있다(〈그림 16〉). 2013년 8월 1일에 방영된 뉴스 화면을 보면, 북한 미사일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한반도의 동쪽 바다명칭은 표기되지 않았다. 관련국가 명칭과 도시 이름 정도 기재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최소 지명만 쓰면서 해당 지역만 강조하는 것이 프랑스 텔레비전 뉴스 제작 방식의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그림 17〉).

앞에서는 프랑스 24 채널의 방송 자료를 사례로 한반도의 동쪽 해역 명칭의 표기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인터넷에 게재된 동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대부분 한국의 동해 명칭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던 반면,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에 동해에 관한 언급이나 표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은 2010년 11월 25일자 기사로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 주변의 해역명칭이 어



〈그림 16〉 프랑스 24의 동해 표기 사례: 무표기

출처: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관련 뉴스 방송 화면



La mer occidentale (mer Jaune) est devenue une poudrière où les risques de confrontations et d'affrontements entre le Nord et le Sud perdurent uniquement parce que les Etats-Unis ont de façon unilatérale tracé la ligne illégale de démarcation" entre les deux pays, a déclaré un haut responsable militaire nord-coréen, en faisant référence à la fin de la guerre de Corée (1950-1953).

Un exercice militaire en juillet dernier, qui était prévu en **mer Jaune (ouest de la péninsule coréenne)**, avait été déplacé en **mer du Japon (est)** apparemment à la suite de protestations de la Chine qui s'est élevée contre ces manoeuvres et la présence d'un porte-avions américain en mer Jaune, entre ses côtes et celles de Corée.

〈그림 18〉 프랑스 24의 동해 표기 사례: 동해(Mer de l'Est)

출처: <http://www.france24.com/fr/20101125-coree-nord-sud-tirs-etats-unis-pyongyang-renforts-militaires/2010년11월25일자인터넷판기사>

떻게 지칭되고 있는가다. 예컨대 한반도의 서쪽 해상은 서해(La mer occidentale)라 하고 괄호 안에 황해(mer jeune)를 병기하였다. 또한 황해를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한반도의 서쪽이라는 부연설명을 괄호 안에 넣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동쪽 해상에 대해서는 일본해로 먼저 표기하고, 동해 명칭은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 명칭 전체가 표기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바다명칭(mer du)은 공통으로 하고, 동쪽(est)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 하나만 별도로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3. 이텔레사

이텔레(iTÉLÉ²⁶(i)TÉlévision))사는 카날 플뤼스(Canal+) ²⁷의 자회사로서, 프랑스 디지털 뉴스 전문 채널 중의 하나다. 이텔레사는 프랑스 디지털 지상파 방송(TNT),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모바일방송으로도 접할 수 있으며 무료채널이다. 1999년 11월 4일 설립되었으며, TF1 그룹의 자회사인 LCI 및 BFM TV사와는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텔레사는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동해 명칭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한일 간의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하는 듯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동해 표기 관련, 이텔레사의 현황은 일본해 및 무표기 등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텔레사의 텔레비전 뉴스 및 인터넷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는 2014년 7월 13일자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보도자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칭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다른 텔

레비전 뉴스 인터넷판에서 일본해 명칭과 함께 동해 명칭을 언급했던 사례들과는 크게 대조된다.

〈그림 20〉은 2014년 4월 16일에 방영된 텔레비전 뉴스 화면이다. 이 뉴스는 한국의 세월호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 인천과 제주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시명과 국가명 정도만 표기하고, 주변 해역명칭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텔레사에서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이 방송사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훨씬 더 프랑스 정부 입장에 가까워 보이

²⁶ <http://www.itele.fr/>.

²⁷ 카날 플뤼스(Canal plus 또는 Canal+)는 프랑스 최초의 민영방송이자 네 번째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1984년 11월 4일에 개국하였다. 프랑스의 미디어 기업 중에 하나인 비벳디(Vivendi)에 속해 있다. 카날 플뤼스는 개국 이래 유료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일부 프로그램은 무료), 1999년에는 위성방송, 2006년에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서 HD 방송을 시작하였다. 프랑스 외에 유럽 몇몇 국가에도 Canal+ 브랜드의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림 19〉 이텔레사의 동해 표기 사례: 일본해

출처: 2014년 7월 13일자 인터넷판 기사
<http://www.itele.fr/monde/video/la-coree-du-nord-lance-deux-missiles-en-mer-du-japon-88327>



〈그림 20〉 이텔레사의 동해 표기 사례: 무표기

출처: 2014년 4월 16일자 뉴스 방송 화면
<http://www.itele.fr/monde/video/coree-du-sud-300-disparus-dans-le-naufage-dun-ferry-79480>

며, 한국 측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컨대 인터넷판 기사에서조차 일본해 단일명칭을 쓰고 있으며, 본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대부분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서는 동해 수역에 대해 아무런 명칭도 표기하지 않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지도제작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 중의 하나인 프랑스를 대상으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민간부문의 동해 표기현황과 표기명칭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동해 표기명칭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 및 홍보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크게 민간 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 3개 영역에 걸쳐 5개 지도제작사, 3개 신문사, 3개 방송사 등 총 11개사다. 각각의 영역별 동해 수역에 대한 표기명칭 현황 및 동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프랑스 민간 지도제작사들의 동해수역 명칭 관련 표기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프랑스 민간 지도제작사들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일본해 단일원칙을 따르고 있다.

둘째, 프랑스 민간 지도제작사들은 비록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나 국제수로기구의 입장이 일본해 단일명칭이라고는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특정한 명칭으로 표기된 지도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동일한 지도제작사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버전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많은 지도제작사들은 한·일 양국 간의 불편한 갈등관계를 의식하는 듯,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

하다.

넷째, 미술랭과 같은 대형 지도제작사에서는 2007년부터 동해 명칭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동해 명칭 병기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3대 대형 지도 제작사에서 그런 사례를 남김으로써 프랑스나 불어권, 유럽 등 전 세계로 동해 명칭이 전파되고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고, 병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프랑스 일간지를 통해 제작·보도되는 동해수역 관련 표기명칭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신문사들은 대체로 지도제작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일본해 단일명칭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현재로서는 일본해 명칭이 대세지만, 프랑스의 신문사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동해 명칭을 써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최대한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파적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신문인 피가로에서 보도되는 기사와 지도자료에는 일본해 단독표기 또는 무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극소수의 경우 인터넷판 기사에서 동해 명칭을 언급하기도 한다.

좌파적 성향을 대표하는 르 몽드의 경우,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적인 관례와 상관없이 보도대상 국가가 원하는 대로 표기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일본해 단일명칭을 가장 일반적으로 써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바다명칭을 쓰지 않고 비워두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지도가 포함

되지 않는 텍스트상에는 동해 명칭이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레제코는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정해진 틀이 전혀 없으며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2006년 무렵에는 일본과 러시아를 다루는 기사에서 해당 수역 명칭을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였다가, 2014년의 어느 기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 동해 명칭이 아닌 동양해(mer Orientale)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태풍 너구리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 사용된 지도에는 일본해 단일명칭으로 표기하였다. 레제코의 경우는 그야말로 해당 신문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기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좌파적인 신문인 리베라송은 자유롭게 표기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해 단일명칭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일본해와 또 다른 명칭을 병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해 명칭과 병기되는 또 다른 명칭이 현재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동해 명칭이 아닌 한국해 명칭이란 점이다. 이러한 표기방식의 기저에는 그들의 독자들이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기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계 보수 성향의 라 크르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도 하고, 동해만 단독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일본해나 동해 명칭을 모두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마지막으로 프랑스 방송사에서 제작·보도되는 동해수역 관련 표기명칭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사인 TF1에서는 일본해 단독표기, 일본해/동해 병기, 무표기 등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무표기'나 '일본해' 단일명칭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인터넷판 기사의 경우, 일본해 명칭 뒤에 괄호로 '한국인들은 동해로 부른다'와 같은 형식의 문구로 부연하기도 한다.

프랑스 24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든 일본 관련 내용이든 간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역명칭은 거의 표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지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사진과 텍스트 위주로 기사가 구성되는데, 텍스트에서 동해 명칭이 일본해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텔레사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훨씬 더 프랑스 정부 입장에 가까워 보이며, 한국 측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인터넷판 기사에서조차 일본해 단일명칭만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서는 아무런 명칭도 표기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동해 명칭(East Sea, Mer de l'Est)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우리의 입장만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시민들은 한국의 동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명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청취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국문 초록

프랑스 민간 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동해 표기 관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프랑스 언론매체들은 프랑스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각각의 주체별로 자유롭게 표기하고 있다. 둘째, 세 가지 민간부문(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 중에서 지도제작사가 가장 보수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사나 방송사에 비해 지도제작사는 정부의 입장을 많이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실제로 일본해 단독표기 명칭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3대 지도제작사 중의 하나인 미술랭사의 경우는 일찍부터 동해 명칭을 일본해 명칭과 병기하고 있다. 셋째, 지도제작사, 신문사, 방송사에서 제작·보도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통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한 해당 수역에 대한 명칭을 아예 비워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무표기나 일본해 단독표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일본해 명칭 뒤에 동해 명칭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동해 명칭이 아닌 제3의 명칭, 즉 동양해나 한국해 명칭이 표기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동해 명칭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 수립 차원에서도 현지인들의 선호도를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간 지도제작사, 프랑스 언론사, 동해 표기, 동해(Mer de l'Est), 한국해(Mer de Corée), 동양해(Mer Orientale)

ABSTRACT

Review and trends of the naming of the East Sea in French mess media
: Private map publishers, broadcasting and newspaper companies

Yi, Saangkyu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im, Younghoon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analytic results related with the name of the East Sea(Mer de l'Est) targeting French private map publisher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most French press media are writing the East Sea on their own freely,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French government's position. Second, the French map publishers were the most conservative and inflexible among the three private sectors(map publisher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he map publishers appeared to be the most conscious of the government's position, compared to the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y used the single name of the Sea of Japan the most. However, one of the top three map publishers, Michelin, simultaneously used the names of the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from the early stage. Third, the data produced and reported from the map publisher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end to commonly vacate the names of sensitive and disputable waters. Fourth, no writing of the name Sea of Japan was in the mainstream of the TV breasting.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name of the East Sea is mentioned after the name of the Sea of Japan on the Internet articles. Fifth,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name of Mer Orientale or Mer de Corée is used, instead of the name of Mer de l'Est(East Sea) dema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se cases should not be overlooked, and there is a need to find out an alternative of the name of the East Sea(Mer de l'Est), or local people's preference in depth at the countermeasure devising level.

Keywords

French private map publishers, French press media, East Sea naming, Mer de l'Est, Mer de Corée, Mer Orientale

참고문헌

- 김순배, 2012,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 서정철·김인환,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 김덕주, 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2).
- 김순배, 2013,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 김순배·김영훈·이상균, 2015, 「지명 표기에서 병기 논리의 접근과 시각: 동해 지명 병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5(1).
- 김신, 2001, 「동해표기의 역사적 과정」, 『경영사학』 16(3).
- 김신, 2010, 「해양환경 변화와 '동해'표기」, 『독도연구저널』 10.
- 김신, 2011, 「동해경계와 표기과정 재조명」, 『인터넷비즈니스연구』 12(1).
- 김종연, 2008, 「외국의 해외지명 결정 관련 조직 현황에 대한 연구: 영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 김종연, 2011, 「한국에 대한 '통상적 영어지명' 형성과정에서의 영국 지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1).
- 김종연, 2012, 「20세기 초반 영국 정부와 지도학자들이 수집한 한국 관련 지도 자료에 대한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12(1).
- 박영한, 1992, 「동해지명에 대한 지리학 세미나」, 『지리학』 27(3).
- 박찬호, 2012,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UNCISG와 IHO 결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3(3).
-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7(2).
- 심정보, 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5(2).
- 심정보·정인철, 2011,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48.
-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

지리학회지』 72.

이기석,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39(1).

이기석, 2008, 「'동해'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책」,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1).

이승수·오일환, 2010, 「조선시대의 동해에 대한 지리인식과 문학적 형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27(3).

정인철, 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0(2).

정인철, 2014, 「프랑스 왕실 과학원이 18세기 유럽의 중국지도제작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4).

주성재, 2007, 「동해 명칭 복원을 위한 최근 논의의 진전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도학회지』 7(1).

주성재, 2009, 「토착지명, 지리적 실체, 그리고 인식의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5).

주성재, 2010,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표기 문제」, 『한국지도학회지』 10(2).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최종남·심정보·윤옥경, 2011, 「영미권 지도 및 지리교재 제작사의 지명 표기 원칙에 따른 동해해역의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2).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27(3).

Klinghoffer, Arthur Jay, 2006, *The power of projections: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Praeger.

Hwang, Myong-Chol, 2014, "Historic Origin of East Sea of Korea and Criminal Character of Having Marked <Sea of Japan>,"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Education* 4(1), Bladivostok.

Kim, Shin, 2004, "East Sea and IHO: Focused on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 10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Neuyen, Thi Hanh, 2013, "Vietnam's Actions to Assert and Enforce its

Sovereignty over the East Sea during the period 1884-1954: An approach from France's archives,"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Tran, Khanh, 2013, "Current East Sea disputes: Possible solution,"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Yi, Saangkyun, 2014, "The Geopolitics of Seas and the Cartography of Naming Seas: The Name 'Sea of Japan' Reflecting an Imperialist Ideology,"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Education* 4(1), Bladivostok.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29,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First Supplementary International Conference, Monaco, April 1929.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한국인의 대응*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2015년 10월은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25일) 광무황제(고종)의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시한 지 꼭 115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달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칙령 41호’는 일본 시마네 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무려 4년 4개월이나 빠른 것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이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에 대해서는 신용하 교수(서울대학교)가 일찍이 매우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논문을 집필하여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독도 침략상을 폭로, 비판한 바 있다.¹ 그는 또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는 별도의 단행본을 발간하여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독도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논리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였다.²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0일(금) 서울역 사박물관에서 열린 독도학회와 (사)독도연구보존협회 주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1 신용하, 1989, 「조선왕조의 독도영유와 일본제국주의의 독도 침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독도학회 편,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독도연구총서 10), 독도연구보존협회, 2003 재수록); 신용하, 1997,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위 ‘영토편입’의 불법성과 不成立」,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존협회.

2 신용하, 2011, 『개정증보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한편, 일본의 양심적 학자 가운데서도 일본 관료나 정부 측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 비판한 연구도 나온 바 있다. 특히 교토대학 호리 가쓰오 교수는 1987년에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외무성 조사관의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 책이 별다른 근거 없는 허구”라고 반박하는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이라는 논문을 『조선사 연구회 논문집』에 게재하여 주목을 받았다.³ 그는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조선 정부는 15세기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⁴ 또한 그는 일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다케시마는 일본 판도 외(版圖外)’라고 단정했는데, 그 후 일본 정부가 러일전쟁 때 군사적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하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면서 일본 영토로 편입을 도모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였다.⁵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권침해, 침략으로 인식하고,⁶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시기 일본의 어업침투와 수탈에 관해서는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의 연구 등 일본인 연구자 가운데서도 일본인 어업자본가의 한국 어민 수탈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논문도 나왔다.⁷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은 좀 더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성과와 자료를 활용하여 간단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최근 연구동향 개관과 박병섭의 연구

최근 주목되는 세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다. 정영미의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섬의 명칭 혼란(島名の混亂)’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2013. 8), 정태만의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단국대학교, 2014. 8), 이동원의 『독도영유

3 堀和生, 1987. 3,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號, 東京: 綠蔭書房, 97~125쪽 참조.

4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21쪽.

5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21쪽.

6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20~121쪽.

7 藤永壯, 1987. 3, 「植民地下日本人漁業資本家の存在形態-李塲家漁場をめぐる朝鮮人漁民との葛藤」,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호.

권의 국제법적 논거로서 식민지 국가책임에 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2)가 그것이다. 정영미는 19세기 중엽 일본에서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섬 명칭의 혼란-마쓰시마(松島)로 호칭-을 일본인의 조선 및 울릉도 침탈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태만은 17세기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시기까지의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독도 관련 인식과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한편 이동원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의 식민지 국가책임과 관련해서 분석, 정리하여 매우 주목된다. 무려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나고야대학 교수의 최근 논문은 일본 내에서 일본 관변학자(가와가미 겐조의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등)와 한국 정부 견해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⁸ 이케우치의 이러한 시각은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2012년 12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이케우치의 『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12)와 함께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⁹

박병섭(朴炳涉)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1876~1910년까지의 일본의 울릉도·독도 어업 침략상을 모두 5기로 구분하여 그들의 침략상과 한국 정부, 한국인의 대응을 정리하였다.¹⁰ 그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어업은 제1-1기 일본 어민의 침어기(侵漁期, 1876~1883), 제1-2기 통상장정에 따른 어업기(1883~1894), 제2-1기 일본인의 불법 정주기(定住期, 1894~1899), 제2-2기 일본 정부의 정주(定住) 추진기(1899~1904), 제3기 일본제국의 침략 강화기(1904~1910)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¹¹ 한편 박병섭은 이 시기 일본인들의 독도에서의 어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즉 상어잡이와 전복 채취, 강치잡이가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8 池内敏, 2014. 6. 「竹島領有權の歴史的事實にかかわる政府見解について」, 『日本史研究』 622호, 日本史研究會, 69~82쪽 참조.

9 이 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김수희와 이성환의 다음의 비평논문을 참조. 김수희, 2013. 6.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방법과 그 문제점」, 『영도해양연구』 5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64~276쪽 및 이성환, 2013. 6.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영도해양연구』 5호, 284~297쪽 참조.

10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 박병섭, 2009. 「국문요약」, 위의 책, 6~8쪽.

다.¹² 이하 그의 논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 시기 일본(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침탈을 개관하고자 한다.

제1-1기에 일본 어민들은 조선 정부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울릉도에 침입하여 목재(느티나무) 도벌이나 밀어(密漁) 행위(전복 채취)를 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일본 해군의 공공연한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주로 조선 동남해안에서 가까운 아마구치 현(山口縣) 출신 어민들이었는데, 이들의 숫자는 무려 4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행위는 문제가 되어 조선 정부가 일본에 항의하였으므로, 일본 내무성은 1883년에 울릉도의 일본인을 전원 쇄환하였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인의 어업은 주로 봄에 전라도 어민들이 울릉도로 가서 미역을 채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³

제1-2기는 1888년 조선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통상장정에 따라 일본 어민이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 4개 도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서남부 규슈(九州) 오이타 현(大分縣)의 잠수기(潛水器) 어업자가 재빨리 울릉도에 진출하여 전복을 채취하였다. 이들은 울릉도에 축실(築室), 즉 임시 오두막집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1889년에도 울릉도에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조선 어민들이 반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에서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들의 어업은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¹⁴

제2-1기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였기 때문에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의 거주가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어업에 필요한 작업장을 거리낌 없이 설치하였는데, 다만 어획물을 일본에 수출할 때 수출세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 도감에게서 거주를 보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어업이 번창하였는데, 잠수기 어업자들이 전복이나 우뚝가사리를 대거 남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⁵

제2-2기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거주를 울릉도 도

12 박병섭, 2009. 위의 책, 8~9쪽.

13 박병섭, 2009. 위의 책, 6쪽.

14 박병섭, 2009. 위의 책, 7쪽.

15 박병섭, 2009. 위와 같음.

감(島監)이 허용하였다고 해도 대한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미 울릉도에 뿌리를 내린 일본인 가운데는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는 자들도 많았다. 한편 일본 정부 역시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영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에 안주하여 직업장을 설치하고 그들 의도대로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어업은 주로 전복이나 해조(海藻) 채취, 상어잡기 등이었다.¹⁶

제3기는 러일전쟁이 끝나자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어로활동 이외에 오징어잡이가 번성하였고, 1904년부터는 일본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인들 역시 1907년부터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⁷ 놀랍게도 1899년부터 일본 오이타 현의 어부들이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상어잡이를 하였다. 또 1899년 울릉도에서의 전복 채취가 별다른 수확이 없자 아미구치 현의 잠수기 업자가 독도로 진출하여 전복을 대거 채취하였다. 1902년에는 울릉도에서 출어하여 독도에서 전복을 따고 4~5일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

1903년에 일본 시마네 현 어민들이 독도에서 시범적으로 강치를 잡았는데, 1904년부터는 울릉도 및 오키도(隱岐島)를 기지로 하는 강치 포획이 이루어졌다. 1904~1905년에는 울릉도의 한국인도 일본인과 공동으로 강치잡이에 나섰다. 이듬해에는 오키의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가 독점적으로 강치를 잡았다고 한다.¹⁸ 울릉도의 원주민인 한국인을 배제한 채 독도의 강치 남획을 시작한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선포하였지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박병섭은 울릉도를 기지로 하는 독도에서의 전복

16 박병섭, 2009, 위의 책, 7~8쪽.

17 박병섭, 2009, 위의 책, 8쪽.

18 이상은·박병섭, 2009, 「국문요약」, 위의 책, 6~9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따기나 상어잡이를 통해 독도가 상세하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민 사이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보는 의식이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인식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반영되어 울도군 관할 지역에 석도(石島=독도)가 기재된 것이다. 다만 이 칙령 이전에 독도에서 어업을 한 어민은 일본인이며, 한국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이미 강원도나 울릉도의 조선인들이 강치를 포획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한국인들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한 사실은 울릉도에 이주한 지 60년 된 홍재현(洪在賢) 옹의 1947년 당시 증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당시 85세의 홍재현 옹은 1882년 울릉도 개척 당시부터 울릉도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미역 채취와 바다사자(강치) 포획을 위해 여러 번 출어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²¹

한국인들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한 사실은 울릉도에 이주한 지 60년 된 홍재현(洪在賢) 옹의 1947년 당시 증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당시 85세의 홍재현 옹은 1882년 울릉도 개척 당시부터 울릉도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미역 채취와 바다사자(강치) 포획을 위해 여러 번 출어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²¹

III. 개항 이후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투와 조선(한국)의 대응

1881년 울릉도를 시찰하던 조선의 수토관(搜討官)은 많은 일본인들이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원도관찰사 임한수(林翰洙)에게 보고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²² 이후 조선

19 박병섭, 2009, 「국문요약」, 위의 책, 9쪽.

20 堀和生, 1987, 3, 앞의 논문, 124쪽.

21 정태만, 2012, 「태정관 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조선뉴스프레스, 128쪽.

22 1881년 당시 울릉도 搜討官의 보고를 토대로 統理機務衙門에서 고종에게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방금 강원 감사 林翰洙의 장계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看窺할 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살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 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元山과 부산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搜討하는 것도 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書契로 작성하여 東萊府 倭館에 내려보내어 일본 외부성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要害地로서 어떠한지 防守를 빈틈 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副護軍 李奎遠을 울릉도 檢察使로 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해

정부는 같은 해 6월 일본 정부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였다.²³ 물론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범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정부의 항의도 반복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83년 3월 내무성(內務省) 관리와 기선을 직접 울릉도로 파견하여 주로 별목에 종사하던 일본인 254명 전원을 강제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²⁴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불법침입은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울릉도 개척정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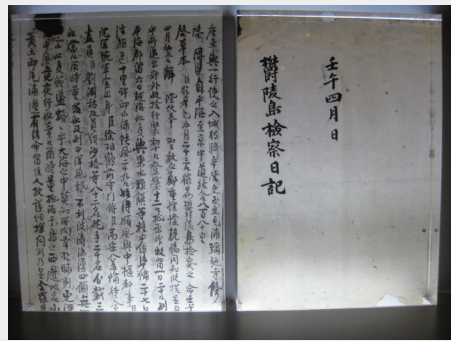
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修啓하여 아뢰고 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고종실록』 권18, 고종18년(1881) 5월 22일지[원본 22책 18권 22장 A면, 영인본 2책 11면],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3 울릉군, 2005,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박물관, 94쪽 및 堀和生, 1987, 3, 앞의 논문, 107쪽.

24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07쪽.

추진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울릉도 주변의 어장을 노리는 일본 어민들의 도항(渡航)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울릉도에 불법으로 거류하는 일본인도 늘어났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1888년, 1895년, 1898년, 1899년, 1900년 등 빈번하게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²⁵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조선 정부가 실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특히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정부 당국이 노골적 침략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어민들 역시 이에 편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규원(李奎遠)의 왕명(王命)에 따른 1882년 5월의 공식적인 울릉도 조사와 6월의 고종에 대한 복명 등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규원이 본격적으로 울릉도 검찰(檢察)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종이 이명우에게 밀지를 내려 그가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울릉도를 조사했음이 밝혀졌다.²⁶ 이러한 사실은 이명우(李明宇)의 문집 『묵오유고(默吾遺稿)』 안에 「울릉도기(鬱陵島記)」가 실려 있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²⁷ 고종이 이규원과 별도로 이명우에게 비밀리에 임무를 맡겨 울릉도를 탐사케 한 사실은 고종의 울릉도에 대한 큰 관심, 울릉도가 한일 간의 주요 현안 문제라는 인식, 그리고 일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의 모색, 또한 고종의 울릉도 개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



이규원 일행이 1882년 5월 체류한 울릉도 태하리 해변



이규원과 고종팔(高宗八) 등의 이름이 새겨진 바위(울릉도 태하리 壬午銘 刻石文)



'울릉도'라고 새겨진 바위(가운데 부분)

1. 일본의 어업 침투와 울릉도 침탈, 대한제국의 칙령 41호 공포

25 堀和生, 1987, 3, 위와 같음.

26 유미림, 2013, 12,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74~283쪽 참조.

27 유미림에 따르면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근대시기 일본인 어업자의 조선 연해 침입과 수탈은 일본 정부 당국의 조선 침략정책을 배경으로 이에 보조를 맞추어 차차 확대 심화되었다. 특히 서(西)일본의 영세 어민들은 자신들의 활로를 조선 연안에 진출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 어민들의 조선 연해 침투(일본에서는 이를 '朝鮮通漁'라는

용어로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했다)가 합법화한 계기는 1883년에 조인된 「조선국에 서의 일본인민 무역규칙」의 제41조였다. 다만 이들의 '통어(通漁)구역'은 전라·경상·강원·함경도에 한정되었다.²⁸ 그러나 1889년 11월에 체결된 「일본조선양국통어규칙(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에서 일인(日人) 불법행위자의 처벌은 일본 영사관에 맡겨지고(제41조),²⁹ 그 처벌도 경미한 것으로 억제되어 일본에 유리한 조건하에서 소위 일본 어민들의 '조선통어(朝鮮通漁)'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³⁰

예를 들면 1901년 말에서 1902년 초경 일본 어민들의 한국 근해(연해) 침투 상황을 보면 무려 어선 2,400여 척, 출어인원 1만 여명을 넘었는데, 매년 수익이 실로 2백만 엔(圓)에 달한다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선해'의 어권(漁權)이 이미 그들의 독점하는 바가 되었고, 조선에서의 출가(出稼)어업(다른 지방에 가서 하는 어업)이 매년 발달, 왕성을 극(極)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 무렵 이미 한국 근해가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주요 어자원이 초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890년 '제주도 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인들의 방약무인한 침탈행위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없드려 생각건대 일본 어민은 (제주)도민의 원수입니다. 본도 토착민들은 가난하여 겨우 미역·전복을 채집하여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니, 이는 모두 여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갑신년(1884) 이래 일본의 후루야(古屋利涉) 등이 전복을 캐러 잠수복과 기계 등 많은 선척을 끌고 포구에 들어와 부녀자들이 잡는 고기와 전복을 주머니 속 물건같이 잡아가니 매월 바쳐야 할 할당액을 어찌 상납할 것이며, 장차 어찌 생명을 보전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28 藤永壯, 1987. 3, 앞의 논문, 128쪽.

29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 이종학 편, 2000, 『韓日漁業關係 調査資料』, 울릉군 독도박물관, 11쪽; 「일본조선 양국 통어규칙」의 상세한 내용은 「韓日漁業關係 調査資料」, 10~12쪽 참조.

30 藤永壯, 1987. 3, 앞의 논문, 128쪽.

31 「朝鮮海 捕鯨業」, 『大日本水産會報』 제 234호(1902. 1. 30), 24면, 이종학 편, 2000, 앞의 책, 472쪽.

제주목사에게 호소하고 다시 목사가 정부에 자세히 보고하였다 하니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앞으로 6개월까지만 어채(漁採)를 허용하고 그 후로는 영영 허락하지 않도록 일본 영사관과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흉악한 일본인들은 해마다 몰래 어채를 계속해와 전복 종자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닭과 돼지도 강탈해가는 폐가 많아 이를 금지하려면 갑자기 칼을 빼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지난 정해년(1887)에는 후루야 등이 (제주도) 대정현(大靜縣) 모슬포에 사는 이만송(李晩松)을 찢러 죽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인 어채선주(漁採船主) 요시무라(吉村與三郎) 등이 본도 연변 백 리 안에는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선 백여 척을 끌고들어와 제멋대로 어채를 했습니다. [...] 제주도민들은 이미 일본인과 원수가 되었은즉 그들이 설치한 어막(漁幕) 역시 철거하게 하여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³²

이 사건은 일본에서는 속칭 '제주도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의 개요가 일본 수산업계에도 알려져 그들의 조선 연해에서의 어업적 이득을 위해 이 같은 일본 어민들의 '조폭(粗暴)한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³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입을 저지하고 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였는데, 독도(당시 지명

石島)를 울릉도(당시는 鬱島) 관할로 명시하고, 현임(現任) 도감 배계주(裴季周)를 초대 군수로 임명하였다.³⁴

러일전쟁 도발 이후 일본은 일본군의 북진에 따른 군용식품의 수요 급증을 이유로 황해도와 평안도, 충청도 등의 연안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1904년 6월 무능한 대한제국 정부는 이 요구를 결국 수용하여 한반도 연안의 모든 어장이 일본 어민에게 개방되었다.³⁵ 특히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의 늑결(勒結)로 위

32 「庚寅(1890) 6월 17일 제주 삼읍 民人等狀」,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 탐사』, 역사비평사, 1994, 47~48쪽.

33 「濟州島事件」, 이종학 편, 史芸연구소, 2000, 앞의 책, 20쪽.

34 울릉군, 2005, 앞의 책, 109쪽.

35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울릉군지』, 울릉군청, 212쪽 및 藤永壯, 1987. 3, 앞의 논문, 128쪽.

교권이 박탈되고 한국통감부가 설치되어 한국이 반식민지 상태가 된 이후 ‘한일어업협정’(1908. 10. 31, 내각고시 제23호, 1909. 4. 1부터 시행)이 체결되고, 동시에 ‘한국어업법’(1908. 11. 11)이 제정, 공포되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국 신민은 한국의 연해, 강만(江灣), 하천 및 호지(湖池)에서, 한국 신민은 일본국의 연해, 강만, 하천 및 호지에서 어업을 영위함을 득함”이라고 규정하여 일본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연해 등에서 어업권을 인정받게 되었다.³⁶

명목상으로는 한국인도 일본 연해 등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선과 장비, 어구 등이 크게 열악하고, 자본과 수산업 규모가 영세한 한국 어민들이 일본 연해로 건너가 조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이 협정 3항은 “한국에서의 어업에 관한 법규 중 사법재판소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은 일본 신민에 대해서는 당해(當該) 일본 관청이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도 없었다. 또 ‘한국어업법’과 ‘어업입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일본 어민은 한국 어업법상의 어업권 면허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어민의 주요 연안 어장을 합법적으로 침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일본 어선들의 한국 연해 침투 상황을 보면 1904년에 1,581척, 1906년 2,747척, 1908년 3,899척이었고, 1910년에는 3,960척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의 한국 내 이주 어촌 건설도 더욱 가속화하였다.³⁸ 결국 러일전쟁 직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은 ‘한일어업협정’과 ‘한국어업법’(1908)을 제정하고, 1911년 ‘조선어업령’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본 어민들이 조선 연안의 주요 어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당시 현지에서 만난 조선인이 141명인 데 비해 일본인이 7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³⁹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약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열강들의 이권침탈이 계속되던 19세기 말엽에 일본인들의 불법 침어(侵漁)와 수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목재 밀반출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1888년부터는 전복을 채취하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1899년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5백여 호(戶), 2천여 명에 달했는데,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지만, 선박을 제조하는 목수 등도 있었다고 한다.⁴⁰ 19세기 말에 약 2,500명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다.⁴¹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00년 전후 울릉도 재류(在留) 일본인이 약 200명 정도였는데, 계절에 따라 1천 명이 넘기도 했다고 한다.⁴² 이에 따라 서서히 울릉도에 정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침투와 이권침탈은 필연적으로 현지 한국인들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특히 잠수기와 동력선 등 근대적 어업수단으로 대량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경우가 많아 울릉도민들의 전복 채취와 어로행위 등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들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마다 울릉도에 와서 도검·총포를 휴대하고 섬 안을 횡행하면서 인민을 협박하고 부녀자를 쫓아다니며, 물품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매우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⁴³

특히 배계주는 1898년 7월 일본으로 건너가 시마네 현(島根縣)·돗토리 현(鳥取縣) 경찰에 일본인 폭행 단속을 요구하고, 또 시마네 현 중심지인 마쓰에(松江) 지방 재판소에 몇 명의 일본인을 목재 도벌과 절취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⁴⁴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행위와 행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⁴⁵

40 일본 외무성 書記生 高雄謙三의 보고 임(堀和生, 1987. 3, 앞의 논문, 112쪽).

41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23쪽.

42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外務省記録 3532) 수록 보고서에 의함,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08쪽에서 재인용.

43 『日本外交文書』 제32권, 287~288쪽;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09쪽에서 재인용.

44 堀和生, 1987. 3, 위의 논문, 109쪽.

45 울릉도에서의 한일 간의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朴九乘, 1972, 「19세기말 한·일간의 어업에 적용된 領海3海里 원칙에 관하여」, 『韓日研究』 제1호 참조.

36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위의 책, 212쪽; 「한국어업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종학 편, 2000, 앞의 책, 619~623쪽 참조.

37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앞의 책, 212쪽.

38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위와 같음.

39 울릉군, 2005, 앞의 책, 98쪽.

그럼에도 1904년에 일본 돗토리 현과 시마네 현 등지에서 다수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매년 어선의 출입이 증가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숫자를 보면 1906년 153호 541명, 1907년 175호 616명, 1908년 200호 710명, 1909년 223호 736명으로 늘어나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⁴⁶ 이 비율은 전 한국을 통틀어 일본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었다. 이 무렵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대부분 시마네 현 출신이었는데, 특히 오키도 출신이 많았다.⁴⁷ 따라서 이 시기 이미 울릉도가 일본제국주의 세력 침략의 첫 변경지, 변경도서, 희생물이 되어 일본의 어업 전진기지로 전략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 정부가 '리양꼬도(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승인함으로써 시마네 현은 1905년 4월 14일자 현령(縣令) 제18호로 '어업통제규칙'을 제정하여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에 대한 허가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4일 독도에서의 강치잡이에 대한 어업권을 나카이 요자부로(中井義三郎)에게 허가하였다. 이후 나카이 요자부로는 '죽도어렵합작회사(竹島漁獵合作會社)'를 세우고 마구잡이로 강치 사냥에 나섰다. 6년 동안의 1차 차용기간에 무려 1만 4천 마리가 넘는 강치를 무차별 살육했으며, 모두 22년에 걸쳐 독도에서 서

식하는 강치를 잡아 거의 멸종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나카이 요자부로의 뒤를 이어 어업권을 허가받은 하시오카라는 자는 한해 동안 불과 10마리 정도만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⁴⁸

2. 나카이 요자부로의 요청과 일본의 독도 침탈

일본 시마네 현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에서 해러(海驢, 강치)잡이 사업을 하고자 일본의 내무·외무·농상무성의 3대신에게 '리양꼬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 소위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키로 결정하고, 같은 해 2월 22일자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죽도(竹島)'라 칭하면서 시마네 현의 영토로 편입하였다.⁴⁹ 소위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간주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자신이 직접 대한제국 정부에 도서의 양도를 신청할 수

48 울릉군지편찬위원회, 2007, 앞의 책, 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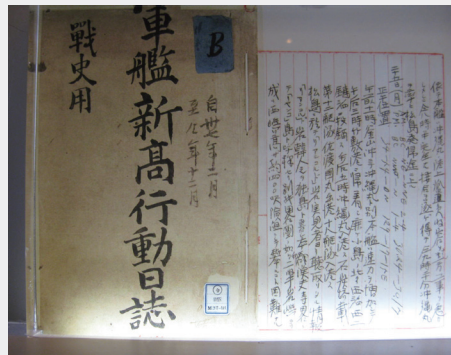
49 성낙현, 2005,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독도 방위」, 민족문화연구소 편,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29쪽.

46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앞의 책, 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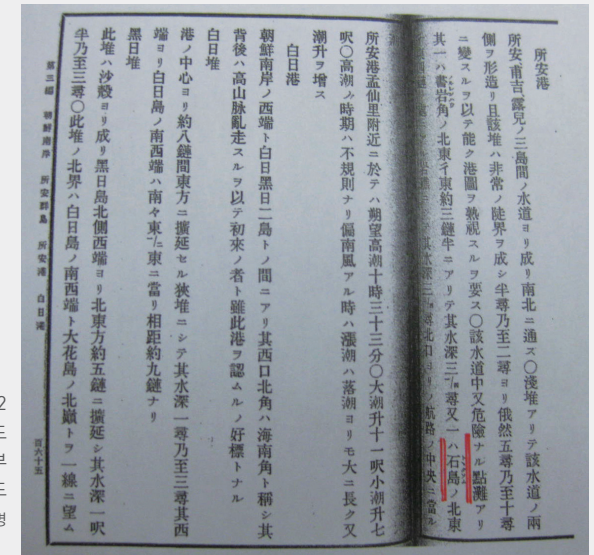
47堀和生, 1987, 3, 앞의 논문, 123쪽.



19세기 후반 울릉도 한인들이 탔던 배(전라도선을 토대로 추정·독도 박물관)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의 1904년 9월 25일 일지. "리양쿠르드봉을 한인들은 獨島라고 쓴다"는 내용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1899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朝鮮水路誌」 제2판에 실린 '소안항' 항목에서 전라남도 소안도 부근의 석도를 '도투쿠소무(독섬)'라고 표기한 부분(박병실, 앞의 책, 77쪽). 이 섬은 현재 전남 완도군 노화면 충도리에 있는 석도로 추정된다(박병실, 2009, 「국문요약」, 앞의 책, 11쪽).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위의 원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허가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04년 2월 6일 러일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이달 23일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토지를 마음대로 수용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 각부에 일본인 또는 일본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관을 배치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그들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⁵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 22일에 독도를 시마네 현에 부속시킨 후, 같은 해 5월 17일 독도를 토지대장에 기입하고, 나카이 요자부로 등 4명에게 어려포획권을 허가하였다. 이후 이듬해 4월 8일에 오키(隱岐) 도사(島司) 등 10여 명의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⁵¹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시마네 현 관할로 지정하고, 2월 22일에는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1905년 이전에 울릉도민이 독도를 조선(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한 사실은 일본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02년 10월 16일 발행한 일본 외무성의 『통상회찬(通商彙纂)』 제234호에는 울릉도민이 독도에 출어해서 전복을 채취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2년 10월 16일 일본 외무성 『통상회찬』 제234호 한국 울릉도 사정
 [...] 본도(울릉도)의 정동쪽 약 50해리에 3소도(小島)가 있다. 이를 리안코섬(독도를 지칭)이라 하며, 일본인은 송도라 칭한다. 그곳에서 다소의 전복을 산출하므로 본도(울릉도)에서 출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섬(독도)에 식수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출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5일간 지나 본도(울릉도)에 귀항한다.⁵²

50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5, 위의 책, 129~130쪽.

51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5, 위의 책, 130쪽.

52 정태만, 2012, 앞의 책, 126~127쪽.

또 1905년 7월 31일 『통상회찬』 제50호에는 1904년경부터 울릉도민이 바다사자(강치)를 잡기 시작했다는 귀중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잡지는 일본이 불법으로 독도를 편입한 이후에 발행한 것인데, 그 후에도 독도에서의 어로작업은 모두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⁵³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고, 조선(한국) 땅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인의 대응

1) 한국 정부의 대응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제국 정부가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1906년 3월 울도(鬱島)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 독도를 조사하고 돌아가던 시마네 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의 방문을 받고,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법적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 영지로 편입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곧바로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李明來)에게 보고하였다.⁵⁴

1904년부터 한국 어민이 일본인과 공동으로 독도로 나아가 강치를 잡았기 때문에 새로 군수로 부임한 심흥택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시마네 현의 이른바 ‘다케시마 시찰단’이 울릉도에 온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본군(本郡) 소속의 독도가 외양(外洋) 100여 리 밖에 있다”라고 보고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부속 섬이며, 자신의 관할하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관찰사(서리)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다시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군 소속 독도가 본부 바

53 정태만, 2012, 위의 책, 127쪽.

54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8쪽.



심흥택 군수(앞줄 가운데)와 일본 시마네 현 조사단 일행(1906. 3. 앞줄). 우측 건물 앞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15,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85쪽).

깎바다 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한 쌍이 우리 군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領地)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데,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 현 은기도사 이즈마 분포(東文輔)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이고(吉田平吾), (경찰)분서장 가게야마 이와하치로(影山巖八郎)와 경찰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 외 수행인원 10여 명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인원과 경비 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⁵⁵

위와 같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참정대신과 내부대신 명의로 지령을 하달했는데, 1906년 5월 20일자 참정대신 지령 제3호는 다음과 같다.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55 『보고서 호외』(규장각 소장);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51쪽에서 재인용.

조사해 보고하라.⁵⁶

위의 내부대신의 지령은 《대한매일신보》 5월 1일자에 “無變不有(변고없는 것이 없음)”라는 소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리고 《황성신문》에도 역시 5월 9일자에 “울쉬보고내부(鬱俸報告內部: 갑자기 울릉도에서 내부에 보고하다)”라는 소제목 하에 보도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내부(內部)에서 통감부로 항의를 한 것 같고, 이에 대해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公函)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에 “울도군의 배치 전말”이라는 제목의 보도기사를 알 수 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울도군의 배치 전말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하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 울릉도 소속 도서와 군청 설치(設始) 연일을 명시(示命)하라 한 고로 답함(答函)하되,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치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경유하여 군수를 배치하니, 군청은 무대동(霧台洞)에 재(在)하고 해군(海軍) 소관 도(島)는 죽도(竹島) 석도(石島)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 리라고 하였다더라.⁵⁷

위 신문 기사 내용은 대한제국 정부가 통감부에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항의하자,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을 보내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시기 등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내부에서는 1898년 5월 울릉도 감의 처음 설치시기, 1900년 10월의 군수 배치 사실, 그리고 군청의 소재지, 죽도와 석도 관할 사실 등의 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56 정태만, 2014, 앞의 책, 69쪽.

57 《황성신문》, 1906. 7. 13, 2면.

58 정태만, 2014, 앞의 책, 71쪽.

2) 한국인의 인식과 대응-언론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한국인들에게도 일관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구한말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저술가인 장지연이 1907년 6월 발간한 지리교과서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에 독도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경상북도편에 ‘울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끝에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⁵⁹ 이러한 서술은 역시 같은 해 9월에 발간된 안종화(安鍾和)의 『초등 대한지지』에서 ‘울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대한신지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한 것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⁶⁰ 또한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우산도(于山島)에 관한 서술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續今爲鬱島郡)”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⁶¹

이처럼 정부는 물론 민간인, 지식인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지리지나 교과서, 교재 서술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6월 24일 일방적으로 울릉도에 북망루(北望樓), 독도에 망루를 세우도록 명령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망루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였다. 울릉도의 북망루는 이해 7월 16일 준공되어 8월 16일부터 군사작전을 개시하였으며, 독도의 망루도 이해 7월 25일 착공하여 8월 19일에 준공되었는데, 즉시 군사업무를 개시하였다.⁶² 1905

년 10월 8일에 울릉도 북망루와 독도의 망루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이 부설된 결과 한국의 동해안(죽변)-울릉도-독도-일본 시마네 현(出雲지방) 마쓰에(松江)를 연결하는 해저통신망과 감시망루 설치가 완료되었다. 일본 해군은 이처럼 러일전쟁의 와중에 망루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여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해서 해군 통신시설 기지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본(해

59 홍정원, 2012,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독섬과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136~137쪽.

60 홍정원, 2012, 위의 책, 138쪽.

61 정태만, 2014, 위의 책, 71쪽.

62 신용하, 1989, 위의 논문, 105~106쪽.

군)은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조인, 10월 15일 러일전쟁의 종전(終戰, 승전)으로 이 망루가 필요없게 되자 10월 19일에 망루를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마침내 10월 24일 독도의 망루를 철거하였다.⁶³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 특히 독도는 러일전쟁 외중에 일본 정부와 해군의 전쟁목적 수행을 위한 한 수단과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등 어업자본가 등의 탐욕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에 탈취되었던 것이다.

IV. 일본의 울릉도·독도 및 어업 침탈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과 의병항쟁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정부와 어민)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각종 어업 이권 탈취, 수탈에 대해 대표적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 역사학자였던 박은식과 황현, 신채호, 그리고 항일세력인 의병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가?

1.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술과 울릉도

한국의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의 한 분인 박은식(朴殷植)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명저 『한국통사(韓國痛史)』에서 일본 정부와 어민들의 어업침략상을 매우 자세히 서술하며 그들의 침략상을 비판하는 한편, 당시 조선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였다.

특히 박은식은 이 책의 제3편 5장을 「일본인이 어업 및 포경권(捕鯨權)을 점령함」이라 정하고, 일본의 어업분야 침략상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는 “어채권(漁採權)을 인허한 후 일본 어선은 연해 각 포구로 왕래하며 한국인의 어업지를 빼앗고, 한국인의 어업을 금하는 자도 있고, 강제로 배상을 물게 하니 한국인은 이에 일본 어선에 옮겨(발표자-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인)

63 신용하, 1989, 위의 논문, 106쪽.

어호(漁戶)들은 조락하여 이산하였으며, 애소(哀訴)하는 일이 날마다 밀어닥 쳐도 정부는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였다”⁶⁴라고 당시 실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였다. 또 그는 일본 신문을 근거로 광무 8년(1904)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어한 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어업구역은 한국의 거의 모든 연해에 이르러 이제는 원산 방면까지 일본 어촌을 이루었다고 깊이 한탄하였다.⁶⁵

박은식은 또한 3편 제7장을 「울릉도·장고도·월미도·고하도·온양온천 등의 사건」으로 정하고 울릉도에서의 일본의 침략상과 한국인—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활약상을 상세히 서술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다소 장황하지만, 이하 이 책에 나오는 울릉도 침략상과 한국인들의 대응 관련 서술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울릉도는 강원도 삼척 바다 수백리에 떨어져 있으며, 가운데는 큰 산이 있는데 삼림 楓木(물푸레나무)·長竹이 많고 복숭아는 크기가 배만 하다. 우리 英祖 때부터 일본과 교섭하여 그 섬에 들어와서 벌목하는 것을 금지케 했다. 이에 이르러 일본 北海島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왕하며 (울릉도) 섬사람들(島民)의 목재를 절취해 갔다. 광무2년(1898-필자) 島監 裴季周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松江縣에까지 이르러 재판을 걸어 목재값 3백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來住者가 수백여구(口)의 촌락을 이루고, 삼림을 벌채하여 계속 배로 운반해가며 또한 곡물을 무역할 즈음에 왕왕 불법적인 행동을 범하여 (울릉도) 섬사람들이 항의했으나, 저들은 칼을 휘두르고 충질을 하였다. 광무3년(1899) 5월 우리 정부는 부산항 總稅務司에게 명하여 배계주와 함께 정형을 조사케 하였으며, 법에 의거하여 일본 公館에 照會를 보내 기한을 정하고 쇄환할 것을 청하였다. 林權助는 걸으로는 허락하면서도 좃지 않았고, 일본인들은 더욱 횡포하여 도리어 松江縣 재판에서 받아들인 돈을 강제로 배계주에게서 받아내어 수만원에 이르렀는데, 배계주는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왔으나, 그래도 부족하여 섬사람들이 의연금을 내어 도와주어 간신히 면하게 되었다.

⁶⁴ 박은식, 이장희 역, 1996, 『韓國痛史』 (하), 박영사, 19쪽.

⁶⁵ 박은식, 이장희 역, 1996, 위의 책, 19쪽.

우리 外部에서는 그 불법행위를 통박하여 일본 공관에 힐책하고 그 돈을 돌려주고 아울러 (일본인들을) 쇄환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못들은 척 하였다. [...] 매년 베어가는 楓木이 수천株나 되었으나, 島監이 능히 금지하지 못해서 우리 外部가 일본공사와 만나서 담판하니, 일본공사는 말이 궁하여 일본정부에 보고하여 회답을 기다려 실행하겠다고 답하였다. [...] 광무7년(1903) 8월 울릉도 군수 沈興澤의 보고에 본 섬 각 포구에 머물러있는 일본인은 무릇 63戶이며, 별목한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금지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하여 교섭 妥辦(필자-사리를 타당하게 관명함)할 것을 청하니, 외부가 누차 일본공관에 照會를 보내 힐책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⁶⁶

2. 신채호의 『이순신전』 연재

한편 이 시기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요 언론인, 애국계몽운동가였던 신채호(申采浩)는 일본과 일본 어민들의 한국 침략에 대응하여 한민족의 걸출한 바다의 영웅 이순신(李舜臣) 전기를 일간신문에 두 번이나 연재하여 한국인들의 각성과 일제 침략 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⁶⁷ 즉 그는 “20세기 태평양에 둘째 이순신을 기다리자”고 하며, 제국주의가 발호하는 해양시대(海洋時代)를 맞이하여 외경력(外競力)을 갖춘 새로운 민족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대망하였던 것이다.⁶⁸

3. 황현의 『매천야록』과 울릉도·독도

구한말의 저명한 재야(在野) 지식인 황현(黃玿)은 그의 야사(野史)인 『매천야록(梅泉野錄)』의 임인년(壬寅年, 光武 6년, 1902) 기록에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경찰서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인들이 울도군(鬱島郡)에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이 섬에 거주한 지는 이미 5·6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자기

⁶⁶ 박은식, 이장희 역, 1996, 22~23쪽.

⁶⁷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5월 2일~8월 18일까지 國漢文 混用으로, 1908년 6월 11일~10월 24일까지 한글 전용으로 각각 수십 차례를 연재하였다(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체 신채호전집』 제4권 전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참조).

⁶⁸ 최홍규, 2007, 『해제』, 『단체 신채호전집』 제4권 전기, 14쪽.

들이 삼림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서 채취하는 행위를 금하며 무력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항하지 못했다. 이 때에 이르러 순사를 파견하였으니, 자기 나라의 영토와 동일하게 본 것이다.”⁶⁹ 매우 날카롭게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지적,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황현은 같은 책 갑진년(甲辰年, 光武 8년, 1904) 기록에서 일본인들의 한국 근해 어업 침략을 지적하며 그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자국의 伯耆·因幡·但馬·丹後·九州 沿海를 교차의 방식으로 우리 漁民에게도 漁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해서 허락하였다. 일본인이 우리 沿海에서 고기잡이를 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동쪽으로는 동해와 울산, 서쪽으로는 대동강 입구와 義州에 이르기까지 어선이 바다를 덮어 우리 어민들은 생업을 잃어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하야시 곤스케는 이를 민망히 여기는 척하면서 우리 정부에 청하기를, 어민들로 하여금 自國(발표자-일본) 연해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20년으로 한정하였으니, 이는 서로 교역하는 것처럼 했을 뿐이었다. 조정에서 公告를 해 알렸으나, 어민들은 비웃기만 하며 응하는 자가 없었다. 단지 문서에 그쳤을 뿐이다.⁷⁰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상당수 한국인들은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패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말(韓末)의 우국지사 황현은 이미 러일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일본의 기만적 술책을 지적하였다.

모두들 일본이 이기고 俄國(발표자-러시아)이 패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일본군이) 파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運送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는 일본인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 (러시아에 대해)

69 黃玿, 임형택 외 옮김, 2005, 『梅泉野錄』, 문학과지성사, 114쪽.

70 黃玿, 임형택 외 옮김, 2005, 위의 책, 176쪽.

宣戰布告하던 날부터였던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⁷¹

그리고 병오년(丙午年, 光武 10년, 1906) 기록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 바다 동쪽으로 백리쯤 가서 하나의 섬이 있는데, ‘獨島’라고 한다. 예부터 이 섬은 울릉도에 속했는데, 일본인들이 역지를 부러 그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조사해 갔다.⁷²

이처럼 황현은 독도가 일찍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1906년 일본인들이 역지를 부러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 섬을 조사해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의 어업 침탈과 의병 항쟁

한국 정부는 1899년 10월 일본인들의 울릉도 등의 침탈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항의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일본측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주거권을 주장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⁷³ 또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1902년 3월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경찰관주재소를 신설하고 경찰을 상주시키자, 즉각 이 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다.⁷⁴

이 무렵(1899년 6월) 대한제국 정부의 요청으로 울릉도 등을 조사하였던 프랑스인 라포르트(E. Laporte)는 “울릉도의 지방관리가 그 섬 지역 주민들이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당하고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최근 서울에 불평을 호소해 왔습니다. [...] 이 나라의 외딴 지역이 일본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⁷⁵라고 영국정부에 보낸 보고서(7월 24일자)에서 울

71 黃玿, 임형택 외 옮김, 2005, 위의 책, 177쪽.

72 黃玿, 임형택 외 옮김, 2005, 위의 책, 310쪽.

73 울릉군지편찬위원회, 『울릉군지』, 202~206쪽.

74 위의 책, 207~208쪽.

75 홍성근, 2013, 「라포르트(E. Laporte)의 울

릉도의 피해상황을 보고하였다. 또 그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채류와 벌목, 선박 건조, 교역 등이 불법임에도 울릉도 한국인 주민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행태는 '적반하장'이고 '통제 불가능'인 상황이라고 보고서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일본인들의 침략상을 고발하였다.⁷⁶ 이처럼 19세기 말~20세기 초 울릉도 등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침탈은 제3국인 라포르트가 보고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침탈에 대하여 당시 의병들은 일본 어선을 습격하여 격침시키거나, 일본인들을 처단하는 등의 보복행위로 이들의 침략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강릉 등 관동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크게 활약하던 민용호(閔龍鎬) 의병부대는 강릉에 주둔 중인 1896년 4월 30일 일본 어선 3척이 풍랑을 만나 묵호항(현재 동해시)에 정박하고 있다는 연락을 참모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에 의병장 민용호와 선봉장 강우서(姜禹瑞), 수성장 민동식(閔東植), 우군장 전치운(全致雲), 좌군장 심홍택(沈鴻澤), 후군장 신무섭(申懋燮) 등과 함께 의병부대를 이끌고 즉각 출동하였다. 이들은 묵호항 포구 주변에 매복한 뒤 동이 틀 무렵 일시에 공격을 가해 일본 선박 3척을 모두 격침시키고 말았다.⁷⁷

1907년 8월 1일 일제의 압력으로 고종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해산 소식을 들은 민공호(閔靑鎬) 등 원주 진위대 장병들이 일제의 강압적 조치에 항거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되면서 의병대열에 합류한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가 관동지역으로 진출하여 삼척·울진 등 울릉도와 가까운 곳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들 해산군인 출신 등 의병들은 어선을 탈취하여 울릉도 등지로 도피하면서 의병항전을 지속하려는 동향을 보이기도 하였다.⁷⁸ 매우 주목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의 호남의병 탄압작전이 절정을 이루던

1909년 4월 7일 전남 돌산군(현재 여수시 돌산도) 삼산면 손죽도(현재 여수시)에서 일본인 어상(魚商) 와다(和田太市, 香天縣人) 외 2명이 의병부대 37명의 습격을 받아 와다는 총살되고 소지금(所持金) 150원, 선구(船具) 등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⁷⁹ 이 사건은 일본군의 잔인무도한 의병 탄압과 학살, 일제 침략에 대한 분노, 한국 연해의 수탈 등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을 상징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의병세력이 한국 근해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본군의 탄압을 회피하면서 한국에 침투하는 일본 상인을 처단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일제 당국이나 일본 어민들의 조선 연안 어업 수탈에 대한 저항은 남부 지방 연안의 도서지방 부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컨대 전라남도 소안도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던 일본인 구마시로(熊代伊代八)란 자는 1908년 12월에 상품을 배에 싣고 노화도 해협을 항해하던 중 한선(韓船) 2척에 탑승한 27명 의병들의 총격을 받고 상품과 총 2정, 50원가량의 현금을 빼앗겼다. 또 1909년 5월에는 일본인 4명과 한국인 1명을 태운 상선 수창호(水昌號)가 완도군 죽청리(竹靑里) 해안에 계류(繫留)하던 중 의병의 공격을 받아 일본인 1명이 총살되고, 한국인 1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도 일어났다.⁸⁰

특히 1908년 11월 '한국어업법'의 발효 이후 심화된 일본인 어로활동의 확대는 조선 연안지역 어민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906~1909년 동안 전남·전북지역에서 일어난 한국 의병들의 재류일본인 공격 76건 가운데 26건이 완도(莞島)와 무안(務安)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남서부 해안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 같은 지역에서 직업이 파악된

재류일본인 피격자 가운데 22명이 어업 종사자로 파악되었다. 또 일본인 소유 어선에 대한 공격만 11건에 달했다.⁸¹

일제 침략에 반발하여 봉기한 의병들이 일본인들의 어업 침탈에 대항하여 일으킨 대표적 투쟁사례로 황병학(黃丙學) 의병부대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76 등도 조사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도해양연구』 6호, 106~107쪽.

77 위의 논문, 123쪽. 라포르트는 위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의 한국인 여성에 대한 폭행과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한 총기 사용 등 행패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관리들이나 주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달갑지 않은 불청객(일본인-필자)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I am convinced that officials and people alike have only one wish, to get rid as soon as possible of the unwelcome visitors)."라고 끝맺고 있다(위의 논문, 124·126·133쪽).

78 민용호, 『關東倡義錄』, 36쪽;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 연구』, 한울아카데미, 134~135쪽.

79 金正明 編, 1967, 『朝鮮暴徒討伐誌』, 『朝鮮獨立運動』 1, 東京: 原書房, 161·189쪽.

79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警務課, 1913, 『全南暴徒史』, 光州(李一龍 譯,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영인본(간행년도 미상), 101~102쪽.

80 홍순권, 1994,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00쪽.

81 홍순권, 1994, 위의 책, 205~206쪽.

1908년 9월 전남 광양군 진하면(津下面) 외망리(外望里)에 돌입하여 일본인 3명을 총살하고, 해안의 어선에 방화하는 주목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의 여파로 다른 일본인 어부 1명이 도망 중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고, 같은 날 어업을 목적으로 부근의 전망리(前望里)에 상륙하고 있던 일본인 20여 명이 행방불명되고 말았다.⁸² 또한 1909년 6월에는 의병들이 강진군 백도면(白道面) 해안에 정박중인 일본인 어부 5명을 공격하여 2명을 죽이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의병들은 해상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과 일본 어민들을 공격하는 등 매우 다양한 해상·해변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⁸³

의병들의 이러한 일련의 해상활동은 일본 어민들의 한국 서남해 연안 침탈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어 대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하였다.

5. 강원도 춘천 의병 목형신과 「독도 아리랑」

목형신(睦衡信, 1877~1945, 호 乃玉)은 1896년 초 이소응(李昭應) 등의 춘천 의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07. 8. 2)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게 강제해산당할 때까지 군대생활을 하면서 조국의 무궁한 보전을 기원하는 애국충정을 「조국노래」라는 이름의 아리랑으로 읊었다고 한다.⁸⁴ 강원도에서 발간한 한 독립운동사 서적에는 매우 주목되는 노래 한 편이 실려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독도야 억만년이 지낼지라도 조국의 영토이거늘 굳게 지켜다오

(내마음은 독도에 두고 가노라)

獨山島 너은(넙은) 海(바다)/ 너 잘 이걸라(있어라)/ 이 身(몸)은 가도/ 나에(의) 心(마음)은/ 독도 너은(넙은) 海에 두고 가노라/ 선昌(窓)에 비친 月아/ 獨島 너은(넙은) 海 명랑하

82 홍순권, 1994, 위의 책, 206쪽.

83 홍순권, 1994, 위의 책, 206쪽.

84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1)』, 춘천: 광복회 강원도지부, 613쪽.

게 비추어다오/ 獨山島 너은(넙은) 海 잘 지켜다오/ 잇(잇)지마라 독도에 竹峰아/ 祖國에 先峯되라.

獨島야 億萬年 進낼지라도(지나더라도)/ 祖國에 영토여든(이거늘) 굳게(굳게) 지켜다오/ 天祖을(에) 빌면서 祖國萬歲을(를) 불어(불러)다오/

울릉도 聖人峰아/ 너도 祖國에(의) 영토여(게)든/ 獨島 너은(넙은) 바다을(를) 保祐하여다오/ 이 身(몸)은 松竹가치(같이) 되게(갠)노라/ 잇(잇)지마라 獨島야/ 너은(는) 祖國에(의) 防桃(神)되라!⁸⁵

이 노래에는 “甲辰年(1904) 四月 十八日에 독도를(를) 六명이 가(갠)다가 일년 八月만에 육지를(로) 올대(때)에 배에서 쓸푸게(슬프게) 오게되자 울고 슬피 불은(부른)노래다”라는⁸⁶ 자필 해설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이 노래가 정말 1904~1905년에 독도에 다녀오면서 지어서 불렀다면 대한제국 정부의(혹은 의병들의) 울릉도, 독도 방위와 운영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시기에 독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혹시 울릉도에 머물면서 독도를 잠시 왕래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07년 8월 이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뒤 육지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라면 작사가인 목형신의 연대 착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노래는 2005년 8월 춘천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에 “독도아리랑 필사본 첫 공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 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한제국 시기 목형신 등 강원도 관병 6명이 독도를 수호하며 불렀던 「독도아리랑」 필사본이 최초로 발견되어 계속되는 일본의 ‘다케시마’ 망언 주장이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입

증하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⁸⁷ 특히 이 기사에 따르면 춘천 출신 관병(官兵) 내옥(乃玉) 목형신이 일본인들의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분격한 춘천 유생들이 울미의병을 일으킨 189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이는 「내옥 목형신 관병 - 의병 생활비망

85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위의 책, 615쪽.

86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위의 책, 615쪽.

87 《강원일보》, 2005. 8. 23, 정명숙 기자 의 보도임.

록」에서 이 노래가 새롭게 밝혀졌다고 한다.

박민일(전 강원대학교 교수)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처음 공개한 이 책은 가로 16cm, 세로 25cm 크기의 종이에 목형신이 붓으로 기록한 개인 일지라고 한다. 이 일지(비망록)에 따르면 “내 몸은 썩어도 노래는 살기 바라 고한다”며 “을사보호 5조약이 10월 21일에 성립되고, 군인들을 해산하게 되자 을사 겨울(冬) 12월 5일에 목형신, 김정삼(金正三), 최천유(崔天有), 안상근, 김규철, 최대규 돌아오다”라고 적고 있다.⁸⁸ 물론 이 기록을 보면 을사조약 체결일은 양력 11월 17일이므로 정확하지만, 군대해산은 1907년 8월 1일이었으므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정말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목형신이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올 때는 1907년 12월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여섯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정밀한 검증을 거쳐서 사실로 파악된다면 울릉도, 독도 방어임무를 담당한 구 한국군(혹은 의병?)의 활약상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노래 가사에서 독도의 ‘죽봉’과 울릉도의 ‘성인봉’을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어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⁸⁹ 그러나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와 당국, 한국인들의 대응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일본 정부와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침탈은 오랜 시기에 걸쳐 끈질기기도 빈번하게, 때로는 매우 야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침탈과정에서 조선(대한제국) 정부와 당국, 한국인들이 취한 대응조치는 너무나 미약했고, 한계를

드러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미봉에 그쳤으며, 매우 미흡한 대응과 관련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및 일부 관료의 무능과 일부 친일세력의 발호와는 대조적으로 상당수 한국 어민들과 이규원(독도를 인식하거나 관찰·조사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배계주, 심흥택, 이명래 등 검찰사와 지방 수령 등은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침없이 몰려오는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일본 어민들 앞에서 한국 민중, 특히 어민들은 대부분 무기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의 어민들과 의병, 관료, 지식인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한계를 절감해야 했던 것이 그때의 객관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899년 울릉도를 조사한 프랑스인 라포르트(E. Laporte)의 보고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한국인들의 고뇌와 노력, 처절한 분투, 피눈물을 우리는 다시 치밀하게 재검토하고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다각적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100여 년 전, 일본 정부와 지방당국, 그리고 관료와 민간인, 어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을 침탈했던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필자는 참으로 무서운,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바로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 시대에 처참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편의 비극, 대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일본인과 공생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들과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의 침탈이 강화되면서 조선(한국) 정부와 한국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들에게 나가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에 맞서 조선(한국) 정부와 관료, 민간인,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물론 당시 한일 양국이 처한 상황과 객관적 역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는 해도 우리 자신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부분은 없었는가?

⁸⁸ 위와 같음.

⁸⁹ 박민일 강원도 문화재위원은 “이 책에 쓰여지고 불려진 노래는 독산도 아리랑, 즉 독도아리랑으로 볼 수 있다”며 “구한말 강원도와 독도의 관계 및 관병·의병사를 규명하고 독도아리랑을 발굴·보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의 기사). 한편 이 기사는 《동남일보》(2005. 8. 25)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김성권 기자의 보도). 한편 목형신의 이 비망록은 2010. 12. 21~2011. 2. 13 기간에 국립춘천박물관의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기념 특별전에 전시되기도 하였다(《강원도민일보》, 2010. 12. 22 보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울릉도·독도 및 어업 침탈 사실과 관련된 자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 등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인들은 물론 일본인과 세계 각국에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주변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련의 정책과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우익인사들에게 그들 선조들의 울릉도·독도 침탈 및 한국 근해에서의 불법적 어업 침탈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도록 이러한 사실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전파해야 한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제대로 방어하고 유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100~150여 년 전의 울릉도·독도·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아직도 우리에게 심각한 역사의 교훈과 반성,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정부와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독도 등 한국영토에 대한 침탈은 끈질기고도 빈번하게, 때로는 매우 아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침탈과정에서 조선(대한제국) 정부와 당국, 한국인들이 취한 대응조치는 너무나 미약했고, 한계를 드러냈다. 즉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미봉에 그쳤기 때문에, 매우 미흡한 대응과 그에 따른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및 일부 관료의 무능과 일부 친일세력의 발호와는 대조적으로 상당수 한국 근해 어민들과 이규원(李奎遠), 배계주(裴季周), 심흥택(沈興澤), 이명래(李明來) 등 검찰사(檢察使)와 지방 수령 등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의 울릉도 독도 침탈과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권침해, 침략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거침없이 몰려오는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일본 어민들 앞에서 한국 민중, 특히 동해안이나 울릉도 주민, 어민들은 대부분 무기력했다. 상당수의 어민들과 의병, 지식인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지만,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1899년 울릉도를 조사한 프랑스인 라포르트(E.Laporte)의 보고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한국인들의 울릉도·독도를 지키기 위한 고뇌와 노력, 처절한 분투를 다시 주목하고 더욱 치밀하게 재검토하고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100여년 전, 일본정부와 동해 연안의 일본 지방당국, 어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을 침탈했던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 시대에 처참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관철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조선(대한제국) 정부와 한국 어민들이 일본인들에게 한국 근해와 울릉도(독도)에서 나가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에게 그럴만한 힘이 없음을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래 일본의 일부 양심적 학자들도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나 관료 등 주

장의 허구성을 폭로, 비판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조선, 대한제국, 한국인, 일본정부, 일본인, 일본의 한국 침탈

ABSTRACT

Japan's violation of Ulleungdo and Dokdo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response of the Korean people

Chang, Seyu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apan and its fishermen violated the territories of the Daehan Empire, most notably Ulleungdo and Dokdo over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Such violation was persistent, frequent, and sometimes despicable. However, the Daehan Empire, the royal court, and its people responded too impotently and were faced with the limits of the action against the Japanese violation of the territories. In other words, the Daehan Empire failed to come up with fundamental measures and relied on makeshift action, thus producing no desired results.

The royal court and officials of the Daehan Empire were incompetent, and the political supremacy of pro-Japanese forces prevailed. However, a large number of fishermen, prosecution magistrates, and local govern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islands and islets near the East Sea, including Ulleungdo. The prosecution magistrates and local governors include Lee Kyu-won (李奎遠), Bae Kae-joo (裴季周), Shim Hong-taek (沈興澤), and Lee Myung-rae (李明來).

As Japan invaded Ulleungdo and Dokdo and illegally annexed the islets of Dokdo into its territory, Koreans accepted such invasion and annexation as infringement on the sovereignty and invasion of the Daehan Empire and

carried out activities of fiercely opposing the move. However, the Korean people and the residents and fishermen living off the East Sea and in Ulleungdo were helpless against the inexorable invasion of the forces and fishermen of Japanese imperialism.

A large number of fishermen, patriotic volunteers, and intellectuals persistently fought against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but keenly felt the limits of their resistance. This was recorded in detail in the report by E. Laporte, a Frenchman who inspected the problem of Japanese illegal squatters and smugglers trespassing on Ulleungdo in 1899. This situation increases the need for more in-depth survey and research on the unbearable anguish, determined struggles, and desperate fight that the Korean people went through at that time to protect the sovereignty of Ulleungdo and Dokdo.

Over a hundred years ago, Imperial Japan, its local governments off the East Sea, and its fishermen persistently invaded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at that past shows that the atrocious 'law of the jungle' prevailed in an era of imperialism when Japan used force to bring neighboring countries under its colonial rule.

The royal court and fishermen of the Daehan Empire forcefully urged the Japanese to leave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Ulleungdo, and Dokdo. However, Japan ignored the demand. Japan was well aware that the Daehan Empire and its people did not have enough power to drive it out of their l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officials claim that Dokdo belongs to Japan. However, Japanese conscientious scholars recently announced that the claim is a complete fabrication. Their research also criticizes that claim for not holding the truth at all. Japan will move more aggressively to annex Dokdo into its territory. The recent development raises the need for thorough preparations for Japan's move to usurp the sovereignty of the islets.

Keywords

Ulleungdo, Dokdo, Joseon, the Daehan Empire, Koreans,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Japan's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警務課, 1913, 『全南暴徒史』, 光州(李一龍 譯, 『秘錄 韓末 全南 義兵戰鬪史』, 영인본, 간행년도 미상).
- 金正明 編, 1967, 『朝鮮獨立運動』 1, 東京: 原書房.
-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1)』, 춘천: 광복회 강원도지부.
- 권태억 외 엮음,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 탐사』, 역사비평사, 1994.
- 박은식(이장희 譯), 『韓國痛史』(하), 박영사, 1996, 19쪽.
- 이종학 편, 『韓日漁業關係 調査資料』, 史芸연구소, 2000.
- 黃玟(임형택 외 옮김), 2005, 『梅泉野錄』, 문학과지성사.
-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號, 東京: 綠蔭書房.
- 藤永壯, 1987, 「植民地下日本人漁業資本家の存在形態 - 李瑯家漁場をめぐる朝鮮人漁民との葛藤」,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號, 東京: 朝鮮史研究會.
- 신용하, 1989, 「조선왕조의 독도영유와 일본제국주의의 독도 침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신용하, 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홍순권, 1994,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 연구』, 한울아카데미.
- 울릉군, 2005,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박물관.
- 성낙현, 2005,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독도 방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 울릉군지 편찬위원회, 2007, 『울릉군지』, 울릉군청.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 독도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 정태만, 2012, 『태정관 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조선뉴스프레스.
- 김수희, 2013, 「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5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이성환, 2013,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영토해양연구』 5호.

유미립, 2013,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 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호.

홍성근, 2013, 「라포르트(E.Laporte)의 울릉도 조사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호.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를 통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¹

김규현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과관계 대신에, 현재의 갈등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부각되는 측면을 강조하려 한다. 둘째, 과거사의 극복에는 인식의 공유, 특히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젊은 세대의 교류가 미래의 화해, 협력에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과거사 문제는 현재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관계는 과거관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다. 남한과 북한 간의 적대적 혹은 대립적 관계는 6·25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없었다면 극복하기 쉬웠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라는 역사가 오늘날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과거 → 현재의 인과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 과거의 인과관계도 있다. 과거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도 현재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사가 문제시되는 것은 현재관계가 좋지 않을 때다. 남북한관계도 그렇고, 한일관계 또 한중관계도 그렇다. 현재관계가 좋다면 굳이 과거문제에 대해 언급

3 2013년 6월 17~20일 전국 19세 이상 한국인 1,234명(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된 휴대전화 RDD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49994&plink=OLD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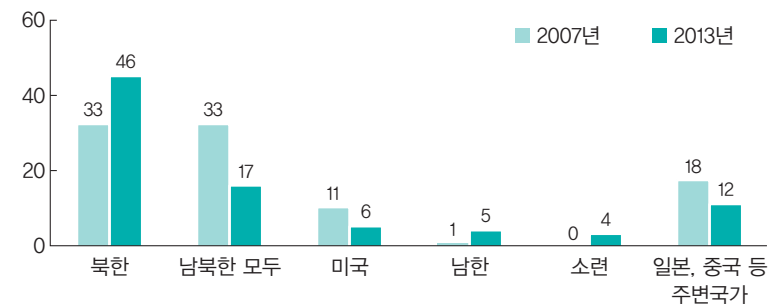
I. 아시아 패러독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오늘날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화해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반면에, 정치적 혹은 군사적 관계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²라 부른다. 정치군사 관계와 경제문화 관계는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아시아의 정치군사 관계는 이미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문화 교류와 달리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독스(모순)로 불리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해결과 협력 증진은 종전 후 70년 내내 논의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해결책은 기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과거사 문제로 현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인

1 이 글은 2015년 8월 연세대학교 및 아산 나눔재단 주최 제4회 한국청소년학술대회(The 4th Korea Scholar's Conference for Youth 2015)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Excellent Youth Scholars Award)을 수상한 연구논문임.

2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용어는 30~40년 전에 이미 등장했다. 물론 그 뜻은 오늘날과 좀 다르다. William Gleysteen, Jr. and Alan Romberg, 1987, "Korea: Asian Paradox," *Foreign Affairs*, Vol. 65, No. 5; Robert Manning, 1993,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3.



〈그림 1〉 과거사(6·25전쟁)의 책임국가에 대한 한국인 인식

출처: SBS 뉴스, 2013. 6. 25.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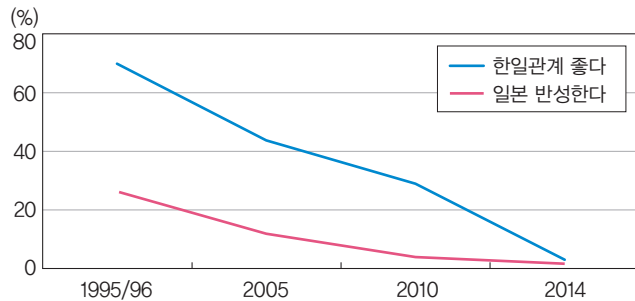
하여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즉 과거사는 말끔히 객관적으로 해결 되었다기보다 우호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다.

〈그림 1〉은 “6·25전쟁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 북한 책임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07년 33%에서 2013년 46%로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남북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북한과의 협력 모드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우호적이지 못했다. 2007년 조사에서 과거사인 6·25전쟁의 책임국가로 실제 도발국가 북한을 지목한 비율은 36%였고 참전국인 미국을 지목한 비율은 11%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전쟁책임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고 6%가 미국을 지목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한관계는 금강산 관광재 폐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은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연장선에 있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한미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우호적이었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북한 책임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에 더 높게 인지되고 있다는 점



〈그림 2〉 일본과의 과거사 및 현재관계에 대한 한국인 인식

출처: 한국갤럽(1995), KBS·연세대학교(1996), 서울신문·도쿄신문(2005), 동아일보·아사히신문(2010), 한국갤럽(2014)

이다. 즉 과거사의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현재관계에 따라 과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인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96년 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일본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대답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25.6%였고, 또 일본 정부가 보상해왔다고 대답한 비율은 16.8%였으며, 위안부나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상을 다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6.2%였다.⁴ 비슷한 시점인 1995년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비율은 70.1%였다.⁵

2005년 조사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다

고 대답한 비율은 12.4%였고, 일본이 과거 한국 식민 통치에 대해 사죄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8.5%였으며, 한일관계가 좋아졌다고 대답한 비율은 44.1%였다.⁶

2010년 조사에서는 한일 과거사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비율이 3.5%에 불과했고, 당시 한일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8.7%였다.⁷ 2014년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전쟁 중 침략행위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좋다는 대답은 3%에 불과했다.⁸

한국인들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일본 과거사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양국관계가 나쁘다고 인식될수록 양국의 과거사는 더 문제된다. 비슷한 예로 동북공정 문제도 한중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4 1996년 4월 서울 시민 1,000명, 베이징 시민 1,000명, 도쿄 시민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KBS와 연세대학교의 공동조사. <http://www.ksdccb.kr/survey.do>.

5 1995년 5월 16일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924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면접한 한국갤럽의 조사. <https://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7735&SearchGb=&SearchKey=&YyFr=&YyTo=&Type=051&Keyword=한일&PageID=F059&PGNO=2&date=Wed Jun 17 20:33:40 UTC+0900 2015>.

6 2005년 7월 22~23일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의 공동조사. <http://www.ksdccb.kr/survey.do>.

7 2010년 5~6월 한국인 1,000명을 전화 조사하고 및 일본인 2,347명을 우편조사한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의 공동조사. <http://news.donga.com/3/all/20100610/289924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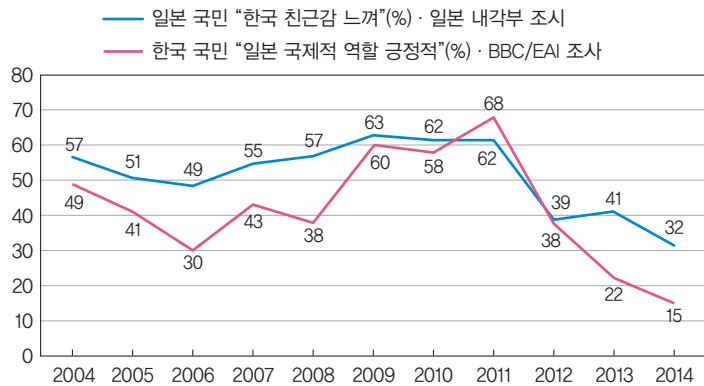
8 2014년 3월 10~13일 휴대전화 RDD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을 전화조사한 한국갤럽의 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 536>.

III. 대외인식은 상호적이다

대외관계 인식에서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상호성이다. <그림 3>은 한국의 대일(對日)감정이 나빠지면 동시에 일본의 대한(對韓)감정도 악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2004~2014년 기간 가운데 한국 국민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2009~2011년이었고,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해 가장 친근하게 느낀 시기 역시 2009~2011년이였다. 마찬가지로 2013~2014년은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 일본인 비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느낀 한국인 비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다. 즉 타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자국에 대한 타국의 호의에 비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당국에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해당국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생각하기보다는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다양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 많

⁹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ode=kor-report&idx=13765&page=1.



<그림 3> 한일 간 인식의 상호성

출처: 동아시아연구원⁹

은 접촉을 통해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안 가운데 하나가 과거 선입관에서 자유로운 미래 세대의 교류를 통해 인식 공유를 모색하는 것이다.

IV.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유럽 사례

작은 전쟁으로 점철된 독일과 프랑스 간의 갈등은 인식 공유가 있었기에 해소되었다. 두 나라 간의 역사교과서 협력은 인식 공유의 대표적 사업이다.¹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저자인 이삭(J. Isaac) 등이 자신의 교과서에 독일인의 입장을 병기하였다. 1935년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공동권고안이 작성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역사교과서연구소(Georg 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를 중심으로 자민족 중심의 역사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후 1951년과 1987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교과서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공동역사교과서는 젊은 학생들이 상대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간에도 역사교과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¹¹ 1972년 독일-폴란드 교과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76년 역사교과서 공동권고안을 발표했으며, 2008년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에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교과서 공유는 과거에 대한 인식 공유를 지향하는 것인데, 과거의 공유뿐 아니라 미래의 공유도 지향하는 사업은 바로 청소년 교류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청소년 교류는 단순한 국제교류 사업이 아니라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의 시작은 1963년 독일과 프랑스 간의 우호조약인 엘리제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의 지도자였던 아데나워와 드골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두

¹⁰ <http://www.nahf.or.kr/?sidx=122&styp=1>.

¹¹ <http://www.nahf.or.kr/?sidx=123&styp=1>.

나라 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하고 화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 프청소년교류원(Franco-German Youth Office, FGYO) 설립에 합의하였다. 1963년 엘리제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FGYO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700만 명의 양국 청소년 교류를 성공시키며 두 나라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¹² FGYO는 3세부터 30세까지의 독일 및 프랑스의 청소년을 초(超)국가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양국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학교교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도 화해 교육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¹³

독일은 폴란드와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독일과 폴란드 정부는 1991년 독폴청소년교류원(German-Polish Youth Office, GPYO) 설립에 합의하여 1993년에 GPYO를 출범시켰다. GPYO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교류를 성사시켰으며, 추모시설 방문을 포함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0년부터는 양국 대통령이 명예 후원자를 맡고 있다.¹⁴ 정부기관뿐 아니라 여러 민간 단체도 동유럽 국가 청소년과 독일 청소년 간의 교류를 추진하여왔다.

동아시아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가 추진되고는 있다. 하지만 교류의 질과 양은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일 간의 청소년 교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전후에 거의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특히 북한과의 청소년 교류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교류 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¹⁵ 청소년 교류 후 상대국 참가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 간 청소년 교류나 해외자원봉사가 상호이해 증진에 큰 효과가 있었다.¹⁶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는 많은 수의 청소년이 참가하였

12 황선혜, 2006,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제 19호, 73쪽.

13 <http://www.ofaj.org/english-version>.

14 <http://www.pnwm.org>.

15 윤철경 외, 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8~89쪽.

16 윤철경 외, 2011, 위의 책, 122쪽.

을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 청소년들의 교류가 시급한 실정이다.

V. 미래지향적 동북아관계를 위해

셰익스피어가 희곡 「템페스트(Tempest)」에서 말했듯이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고, 현재는 미래의 과거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과거에서 완전히 독립된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종속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현재와 미래는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문제의 해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현재나 미래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물론 과거 나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사과는 강요하면 그 효력이 제한적이다. 반성하지 않는 상대를 제재할 수 없을 때에는 교류를 증대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동북아관계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와 선입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년 교류를 통해 인식 공유가 이루어질 때 동북아시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국문 초록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경제 의존성은 커지는 반면 정치·군사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 패러독스’의 상황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등과 같은 여러 복잡한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현재관계가 과거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며, 현재의 상황이 과거사 인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사의 문제에 현재관계가 악화된다는 설명 대신에, 악화된 현재관계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부각되는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현재관계가 우호적이나 비우호적이나에 따라 과거사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미래 세대의 인식 공유를 위한 청소년 교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수백 년에 걸친 반목을 불과 수십 년 만에 불식시킨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는 청소년 교류의 역할이 컸다. 동아시아에서도 비교적 과거사와 선입관에서 자유로운 청소년 세대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과거사, 대외인식, 아시아 패러독스, 청소년 교류, 화해

ABSTRACT

Resolving the Asian Paradox through Perceptions Shared among Youth

Kim, Cuehyon Clara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Whereas mutual economic dependence is growing bigger day by day,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are worsening in East Asia. Such ‘Asian paradox’ is degenerated by unsettled disputes on East Asian history. It is commonly acknowledged that current relations between nations are affected by past relations. Yet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also dependent on situation and time. Inversely, the ‘present’ rather influences the viewpoint on the ‘past’; current situations and relationships influence perceptions on unsettled East Asian history issues. Instead of explaining how past conflicts affect current relations,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current worsening cross-border relations accentuate past disputes. Data from public opinion polls are used for analysis. Furthermore, the expansion of youth exchange is suggested as a solution for the ‘Asian paradox.’ Model examples are the youth exchange programs for reconciliation between France and Germany. Through shared and exchanged perceptions of the youth generation, who are relatively free from prejudices and historical issues, East Asia must promote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end.

Keywords

Asian paradox,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historical issues, historical reconciliation, youth exchange

참고문헌

윤철경 외, 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선혜, 2006,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제19호.

Gleysteen, William, and Alan Romberg, 1987, "Korea: Asian Paradox," *Foreign Affairs*, Vol. 65, No. 5.

Manning, Robert, 1993,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3.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http://www.nahf.or.kr>).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자료 (<http://www.eai.or.kr>).

동아일보, 2010년 6월 10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00610/28992453/1>).

한국갤럽 DB (<http://www.gallup.co.kr/gallupdb>).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DB (<http://www.ksdcdb.kr/survey.do>).

Franco-German Youth Office 홈페이지 (<http://www.pnwm.org>).

German-Polish Youth Office 홈페이지 (<http://www.ofaj.org/english-version>).

SBS 뉴스, 2013년 6월 25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49994&plink=OLDURL).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유미림, 지식산업사, 2015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

1.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연구는 해방과 동시에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7년에 방종현 교수의 「독도는 石島의 뜻에서 온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1947년에 신석호 교수가 울릉군청에서 심홍택 보고서를 발견하였으며, 1948년에 「독도 소속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史海』 창간호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대하여 1952년 1월 28일자로 일본 정부가 항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항의를 시작으로 1953년 7월 13일자부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술서를 총 4회에 걸쳐 보내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 형식의 구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까지 확보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877년의 태정관 지령 등 몇몇 사료가 새로이 발굴되어 획기적인 연구의 전환점을 이루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학

자들이 일본의 고문서를 연구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등에서 일본의 고문서를 선별하여 전문 해제한 후 일반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조만간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선은 해양국가가 아니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해양으로의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해금정책(海禁政策) 또는 주민쇄환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육지로 이주시킨 후 섬에 입도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이들 섬의 정확한 형태나 규모 등에 대한 지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독도는 울릉도보다 외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설사 태정관 지령에 따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반론이 연구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론이 정황적인 연구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기간의 해금정책으로 울릉도에 대한 자료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울릉도 외해의 고도(孤島)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가운데 유미림 박사가 집필한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는 기존의 빈약한 증거들을 체계적·논리적으로 매우 잘 구성한 수작(秀作)이

라고 생각된다.

유 박사는 2013년에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라는 책을 이미 펴낸 바 있다. 이 책에서 유 박사는 「수세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라는 항목 속에 독도에서 잡은 전복과 강치에 대하여 울도 군수가 수출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당시 울도 군수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유 박사가 근거로 삼은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은 1902년 4월에 작성되어 대한제국 내부(內部)가 울도군에 하달한 문서로 여기에는 울도군에서 반출되는 목재와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세를 납부하라는 규정은 실려 있었지만 “독도에서 잡은” 전복 혹은 강치에 대해 과세를 한다”라는 규정은 없었다. 그냥 수출화물에 과세를 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유 박사는 1900년 부산영사관의 이카스카 쇼스케가 작성한 ‘수출입 통계표’에서 울릉도 주요 수출품으로 규목과 해산물이 있는데, 1897년에 전복 6천 근, 우뭇가사리 8천 근, 1898년에 전복 6천 근, 우뭇가사리 8천 근, 1899년에 전복 800근, 우뭇가사리 2천 근을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 박사는 전복과 우뭇가사리는 모두 일본인들이 채취해서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어선들의 대부분이 독도에도 갔기 때문에 전복과 우뭇가사리 중 일부는 독도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와카미 겐조의 책과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들은 모두 정황적인 근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명시적인 근거를 대라며 비판할 것이 불문가지였다.

이에 유 박사는 끈질기게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 현 자료를 뒤져 일본인들이 1903년 이전에는 강치를 오키도에서 포획하다가 1903년경부터는 독도에서 본격적으로 강치를 포획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 대신 울도 군수에게 수출세라는 명목으로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까지도 규명해냈다.

이 경우 울도군에 수출세를 납부한 일본인들이 오키도나 시마네 현에 독도에서 잡은 강치세를 별도로 납부했다면 울도군에 납부한 수출세가 독도

에서 강치를 잡은 데 대한 세금이 아니고 울도군에서 가공한 데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 주장이 다시 빛을 잃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에 유 박사는 시마네 현립도서관을 뒤져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 강치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책의 225쪽부터 시작되는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속에 수록하였다.

다시 말해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이 1903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은 데 비해 조선에서는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문서의 ‘울릉도 수출품목’ 안에 ‘독도(원문은 리양고도) 강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울도군 절목」 속의 세금 규정이 「독도 강치」에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저자가 명확히 규명해낸 것이다. 그러자 “「울도군 절목」은 허위문서다”, “수출업자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인데 저자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학자들이 「울도군 절목」을 허위문서라고 하고, 또 수출업자가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실소(失笑)가 나온다. 물론 일본인들이 주장하듯이 당시 독도가 조선(대한제국)이나 일본에 속하지 않는 무주지였다면, 조선에서는 조선인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선에서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에게도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끈질긴 유 박사는 1899년에 라포르트(E. Laporte)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통해 당시 수출화물에 대한 납세자가 일본인임을 또다시 입증하였다.

4.

유 박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일본의 『초려잡담(草慮雜談)』 등 고서에 본래 일본의 영토였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에 주게 되었다 운운하면

서 나오는 '竹島'가 1693년 안용복의 도일로 조일 간에 영유권 시비가 붙었던 울릉도가 아님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유 박사에 따르면, 『초려잡담』에서 인용한 중국의 『북사(北史)』 「왜전(倭傳)」에 나오는 “竹斯國 竹島 阿蘇山”의 竹島는 중국의 배세청(裴世清)이 백제를 지나 이르게 된 곳이므로 전라도나 충청도 근처에 위치한 섬이지 동해상에 있는 울릉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竹島'라는 단어만 보면 울릉도에 갔다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당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빼앗긴 울릉도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유 박사는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다케시마 도설(竹島圖說)』에 '오키국 마쓰시마(松島)'라는 내용이 나와 마치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 보이지만, 이는 저자인 기타조노 쓰안(北園通菴)이 저본으로 삼았던 『竹嶋之書附』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기타조노 개인이 임의로 집어넣은 것임을 밝혔다.

유 박사는 이 외에도 『竹島考』 등에서 인용한 중국의 『등단필구(登壇必究)』와 『무비지(武備志)』 등 많은 고서들의 원문을 깊이 고찰하여 일본의 필자들이 자의적으로 중국의 고서들을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 박사는 책의 말미에서 일본 외무성 홍보자료의 변화 추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놓았다. 우리 외교부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서점에 나가 보면 독도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중적인 교양서라면 모르겠지만, 전문 연구서적을 표방하는 책이면서도 새로운 연구 결과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책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 박사의 책은 전문 연구서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책이다.

관련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일본인들은 참으로 교묘하게 사료를 해석한

다고 하면서 놀랐던 적이 많이 있다. 물론 이처럼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못지않다.

유 박사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나타내는 지도를 새로 발굴했다”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경우다. 지도 자체가 국제법상 가지는 증거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영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도를 새로 발견했다고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며, 이전까지는 독도 영유권이 확실치 않았지만 이 지도의 발견으로 독도 영유권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그 지도 자체가 이미 알려진 지도인 경우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보자 자신이 처음 보았다고 해서 그 문서나 지도를 ‘최초 발굴’이라고 대서특필하면 일본인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한겨울의 얼음을 의심하는 한여름 밤의 날벌레가 아닌가 항상 조심스럽다.

영토·해양 일지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5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일 : 국립생태원 '알면 사랑한다 우리 독도 생태전'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일 : 디플로매트지 "남중국해문제 등에서의 한국의 선택이 향후 역내질서 결정" 26일 : 필리핀 어민, 유엔에 남중국해 해역 조업활동 금하는 중국 고소 27일 : 중국 톈징만 부근에서 석유 굴착 개시, 베트남과의 대립 우려 28일 : 필리핀, 중국의 매립 견제 일환으로 활주로 보수를 당분간 동결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 해양조사원, 해양탐구학교 운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일본 정부, 센카쿠 경비전담부대 정비 발표 ;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활주로 거의 완성돼 2일 : 중국국가해양국 주최 다오위다오(釣魚島) 주권 홍보 행사 항저우에서 개막 8일 : 중국 제3회 중국변강연구 청년학자 포럼 개최 14일 : 중국외교부, 국제중재법원의 남중국해 중재안 심리 종결 논평 18일 : 러시아 보건 장관 북방영토 방문, 시코탄(色丹) 섬 병원 시찰 22일 : 러시아 보건 장관 북방영토 방문, 시코탄(色丹) 섬 병원 시찰 ; 중국, 압록강 유역을 '일대일로' 범주로 주장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중국과 ASEAN, 텐진과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중국해 문제 협의 2일 : ASEAN 외무 장관 회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 남중국해 문제가 중점

2015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일 : 한국산악회 독도 표석 복원 30일 : 홍콩인들, 외국인 단체여행객 첫 울릉도·독도 방문 31일 : 황우여 장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유감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 러시아, 북방영토 '쿠릴 발전 계획' 발표 현상 고착화 목적 22일 : 러시아 총리, 오늘 북방도서 에토로후(択捉) 방문 28일 : 일본 정부, 다케시마 자료 열람 포털사이트 개설 ;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왜곡 자료 202점 게재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 4일에 한번 끝...독도 인근에 일본 관공선 출몰, 2012년 이후 3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중국 관공선도 50여회 출몰 15일 : 한국 국방장관,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행동수칙 구체화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일 : 미국,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암초 매립 비판 17일 : 아베 총리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남중국해·경제 등 제휴 확인 19일 :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 방러, 북방영토 문제 교섭 재개 14일 :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해결 난항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일 : 최윤·이권수 '독도 물고기·울릉도 야생화 탐구' 책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일 :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땅' 주장 자료보전 추진 21일 : 영 전문가,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전개 비난 22일 : 러시아, 일본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쿠릴열도에 군사기지 보강 예정 27일 : 중국학자, 남중국해제도의 묘우(廟宇)사적(史迹) 전면적으로 고증 29일 : 중국, 일본의 '방해' 군사 비행 중단 촉구

2015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 독도 수호 상징 강치 동상 울릉도 통구미에 설치 • 30일 : 수협, VHF-DSC 교신 독도 중계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 대만 "남중국해 PCA 중재 인정 못해" • 16일 : 중국외교부, 12월 한중해역경계획정회담 개최 확인 • 22일 :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美에 반론, 남중국해 "필요한 군사시설 건설 중" • 30일 : 상설중재재판소(PCA),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 심리 결정 ; 중일, 동중국해 EEZ경계선 획정 못해 위반해도 강제력 없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 독도 방문객 17만8천여 전년 대비 27% 증가 • 14일 : 용인시·동북아역사재단, 김중만 작가의 '독도 사진전' 개막 ; 국립해양조사원, 종이해도에 QR코드 수록, 종합 해양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 필리핀, 남중국해 소송에 확신 갖고 있어 • 2일 : 중국, 필리핀 요구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절차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본, 필리핀·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연계강화 • 6일 :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은 올해 9월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해 국제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 10일 :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중국의 애매모호한 태도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지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투고 요령]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초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12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